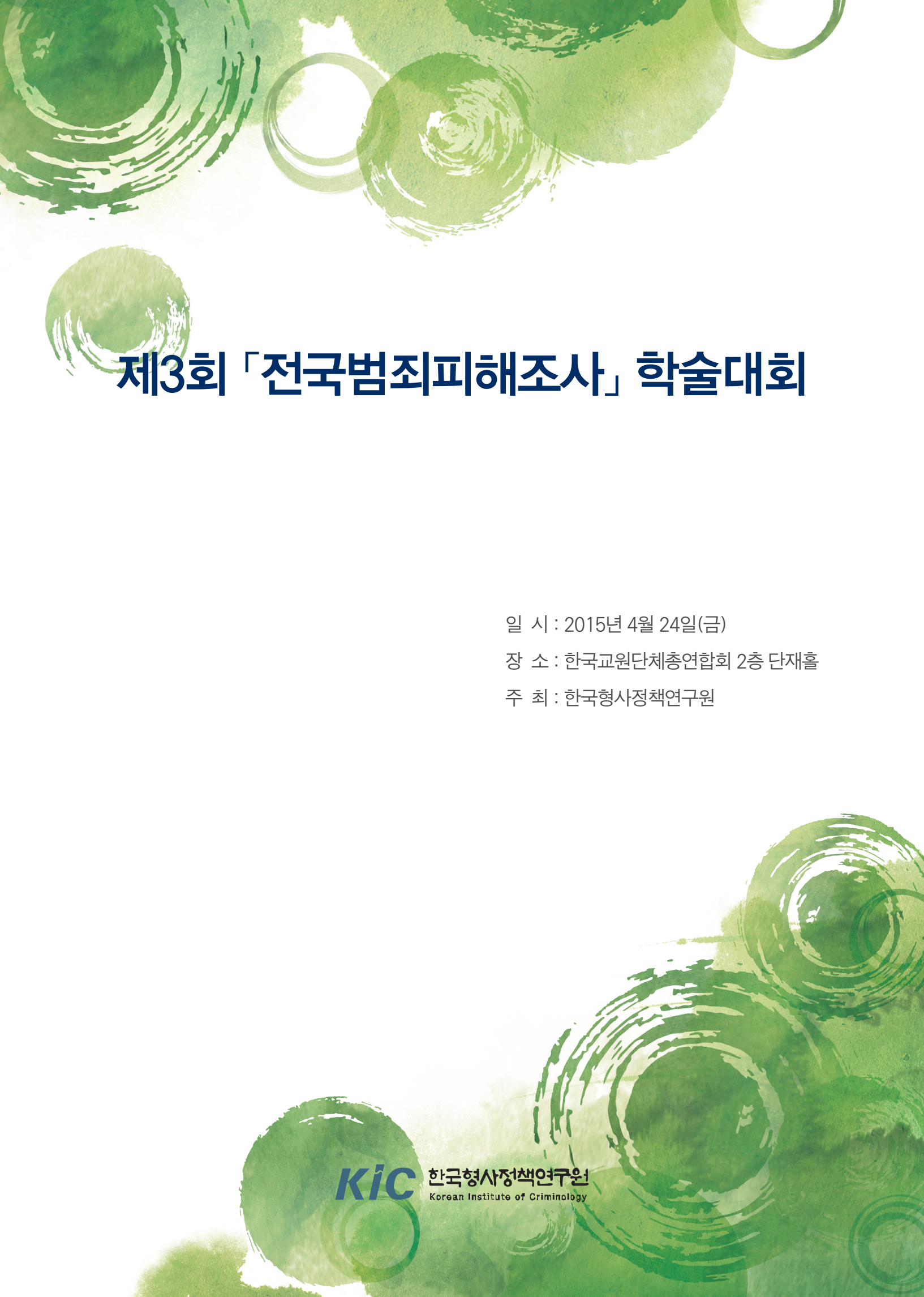




제3회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일 시 : 2015년 4월 24일(금)

장 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단재홀

주 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IC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범죄피해실태와 범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및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1994년부터 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해왔습니다. 2009년에는 범죄피해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내용과 방법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였고 재설계된 『전국범죄피해조사(KCVS)』가 통계청에 의해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의 정책적 학술적 유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본 연구원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공개하고 자료를 활용한 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 학술대회는 제3회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로서 2013년 전국 6,300가구, 13,317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의 자료를 활용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본 학술대회를 통해 한국사회의 범죄피해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으로 범죄피해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정책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심있는 여러분의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4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일 정

시간	내 용
12:30-13:00	• 등 록
13:00-13:10	• 개회사
13:10-14:50	제1부 사회 : 김지영 범죄통계조사센터장(한국형사정책연구원)
13:10-14:00	• 발표 1 : 성별에 따른 생활양식이 범죄피해에 주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곽대훈 교수(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과학수사학과) 박지혜(Univ. of Iowa)
	• 토 론 : 박미량 교수(한남대 경찰행정학과)
14:00-14:50	• 발표 2 : 가구범죄피해의 발생과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지선(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학박사) 주익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인턴연구원, 사회학박사수료)
	• 토 론 : 박정선 교수(경찰대 행정학과)
14:50-15:10	• 휴 식
15:10-16:50	제2부 사회 : 황지태(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통계조사센터)
15:10-16:00	• 발표 1 : 범죄두려움과 자기보호행동의 관계에 관한 위험해석모델의 재검토 김연수 교수(전주대 경찰행정학과)
	• 토 론 : 윤우석 교수(계명대 경찰행정학과)
16:00-16:50	• 발표 2 : 폭력과 절도의 경찰신고 결정요인 분석, KCVS 2008-2012 강지현 교수(울산대 경찰행정학과)
	• 토 론 : 노성훈 교수(경찰대 행정학과)
16:50-17:10	• 휴 식
17:10-18:00	제3부 사회 : 최수형(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통계조사센터)
	• 발 표 : 범죄에 대한 두려움 : 지역적 특성에 따른 다층모형 분석 장안식 교수(고려대 인문대학 사회학과)
	• 토 론 : 박현수 연구위원(경기개발연구원)

목 차

■ 모시는 글	1
---------------	---

발표자료

■ 제 1 부 ■ 사회 : 김지영 범죄통계조사센터장(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표 1] 성별에 따른 생활양식이 범죄피해에 주는 영향에 관한 연구	9
--	---

- 발표자 : 곽대훈 교수(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과학수사학과)
박지혜(University of Iowa)

[발표 2] 가구범죄피해의 발생과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5
---	----

- 발표자 : 김지선(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학박사)
주익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인턴연구원, 사회학박사수료)

■ 제 2 부 ■ 사회 : 황지태(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통계조사센터)

[발표 1] 범죄두려움과 자기보호행동의 관계에 관한 위험해석모델의 재검토	59
--	----

- 발표자 : 김연수 교수(전주대 경찰행정학과)

[발표 2] 폭력과 절도의 경찰신고 결정요인 분석, KCVS 2008-2012	83
---	----

- 발표자 : 강지현 교수(울산대 경찰행정학과)

■ 제 3 부 ■ 사회 : 최수형(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통계조사센터)

[발 표] 범죄에 대한 두려움: 지역적 특성에 따른 다층모형 분석	101
--	-----

- 발표자 : 장안식 교수(고려대 인문대학 사회학과)

1부 발표 1

성별에 따른 생활양식이 범죄피해에 주는 영향에 관한 연구

• • • 발표자(Vortrag)

곽 대 훈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과학수사학과

박 지 혜

University of Iowa

성별에 따른 생활양식이 범죄피해에 주는 영향에 관한 연구¹⁾

I 서론

전통적 범죄학은 가해자를 중심으로 범죄의 원인과 범죄자에 대한 처우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1960년대 이후 자유주의적 정치성향과 인권운동은 많은 범죄학자들로 하여금 범죄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었으며 특히, 1970년 이후 급증한 범죄율의 원인을 피해자의 '특성'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이운호, 2013). 범죄피해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Cohen과 Felson(1979)의 일상생활이론(Routine Activities Theory)과 생활양식-노출이론(Lifestyle-Exposure Theory)이 있다.

Cohen과 Felson에 따르면 범죄는 적절한 범행대상(Suitable target), 동기화된 범죄자(Motivated offender), 그리고 감시자의 부재(Absence of guardianship)라는 세 가지 요건이 성립하였을 때 발생한다고 설명한다(Cohen & Felson, 1979). 즉, 인간은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에 따라 범행으로 인한 비용과 혜택이라는 비용계산을 통해 범죄로 인한 혜택이 비용보다 클 경우 범죄행위를 실행하기 때문에 동기화된 범죄자는 항상 감시가 소홀하고 적절한 범행대상이 존재하는 곳에서 범죄를 주로 저지른다는 것이다. 생활양식-노출이론(이하 생활양식 이론)도 일상생활이론과 더불어 대표적인 피해자관련 이론으로 피해자의 인구학적 특성(Demographic characteristics)이나 특정한 생활 습관(Lifestyle)이 범죄를 유발 혹은 예방한다고 설명한다(Hindelang, Gottfredson, & Garofalo, 1978). 예를 들어, Like-Haislip & Warren(2011)은 표본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과 생활 습관이 범죄 피해와 연관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즉,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범죄 피해에 더 취약했으며, 잦은 야간 활동과 대중교통이용 또한 범죄 피해와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Henson, Wilcox, Reyn, & Cullen(2010) 또한 청소년들의 비행적 생활양식(delinquent lifestyle)이 그들의 폭력범죄 피해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폭력범죄 피해의 경우 남녀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비행적 생활양식에 의해 영향을

1) 이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자료(전국범죄피해조사 2012)제공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남학생의 경우, 폭력범죄 피해확률은 온라인 게임, 채팅, 웹서핑 등의 E-lifestyle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에는 인터넷·컴퓨터 사용시간과 폭력범죄 피해와 무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일상생활과 생활양식에 있어 ‘성별’의 영향을 입증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결과라 할 수 있다. Bunch(2008) 또한 Henson et al.(2010)과 유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는 야간활동과 직장·학교활동에서의 성별차이와 범죄 피해의 남녀차이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일상생활이론과 생활양식이론에 관한 국외 연구는 활발한데 반해, 국내 연구는 비교적 미흡한 편이다. 몇몇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이들은 청소년들의 비행적 생활양식과 학교 폭력 피해와의 관계(배정환, 2013)와 여자 청소년의 일탈적 생활양식과 성범죄피해의 관계(정병수, 2011)에 대하여 논의 하는데 그쳤다. 국외 논문에 비교하였을 때, 국내 연구들은 ‘비행 또는 일탈’과 연관된 생활양식에만 초점을 두는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인 일상생활과 행동이 범죄 피해에 영향을 준다는 위의 이론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존하는 국내 연구들은 포괄적이지 못하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현재 국내의 연구들은 남녀의 다른 일상생활이나 행동, 습관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남녀차이가 가져오는 상이한 범죄피해 과정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우리사회에서는 성에 따른 다른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남성과 여성은 자신들의 성별에 부합하는 성 역할을 배우고 행동하게 된다. 예를 들면, 여성에게는 여성스러움을 강요하며 가정적이고 내성적인 모습을 기대한다. 반면에, 남성에게는 남성적인 모습이 강요되는데, 이는 외향적이나 공격적인 성향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남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나 외향적인 생활양식들은 범죄 피해에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하며, 이는 결국 여성들보다 더 자주 또는 강도 높은 범죄피해에 노출시킨다(Hindelang et al., 1978).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존 연구들은 생활양식과 범죄피해에 있어 성별의 차이를 무시한 채, 성별을 단순히 통제 요인으로만 구분 짓는 경향을 보였다(Fisher, Sloan, Cullen & Lu, 1998; Mustaine & Tewsbury, 1998; Tewksbury & Mustaine, 2000; Van Dorn,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이론과 생활양식이론을 바탕으로 왜 특정한 행동과 생활양식이 범죄피해의 위험성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생활양식에 있어 남녀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생활양식에서의 성별차이와 재산, 폭력, 및 성범죄 피해의 연관성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일상생활이론은 1979년 Cohen과 Felson에 의해 범죄학계에 처음 소개되었다. 이들은 세계2차 대전 이후 급증한 미국의 범죄율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고 전쟁 후 자유로워진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변화된 미국인들의 생활 습관이 범죄를 야기하였다고 설명하였다(Cohen & Felson, 1979). 미국인들은 여가시간을 즐기기 위하여 야외 활동을 많이 하였으며,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과 재산을 장시간 동안 감시자의 부재에 놓여있게 함으로써 범죄 위험성을 증가시켰다(Cohen & Felson, 1979; McNeeley, 2015). Cohen과 Felson은 범죄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상황을 세 가지 요소(동기화된 가해자의 존재, 적당한 범행대상의 존재, 감시자의 부재)로 정리 하였다. Cohen과 Felson은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 되었을 때, 범죄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일상생활이론과 유사한 생활양식이론(Lifestyle-Exposure theory) 또한 개개인의 인구학적 요인(demographic characteristics), 그리고 그들의 생활양식(Lifestyle)과 범죄 피해의 연관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Hindelang et al., 1978). 여기서 인구학적 요인이란 개인의 성별, 인종, 결혼 유무, 직장 유무 등을 의미한다(노성호, 2007). 반면, 생활양식이란 “직장과 학교 등 직업적 활동과 여가활동 모두를 포함하는 일상적인 활동”을 지칭한다(Hindelang et al., 1978: 241). 인간은 자신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다른 사회적 기대감과 역할을 부여받게 되며, 이에 맞는 생활양식이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개개인의 생활방식은 범죄에 더욱 취약하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Hindelang et al., 1978; 정병수, 2011). 범죄의 취약한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미성년자, 남성, 실업자와 같은 요소들이 있으며, 음주와 마약사용 그리고 잦은 야간 활동은 범죄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생활양식으로 꼽힌다(Hindelang et al., 1978; 정병수, 2011). 요컨대, 생활양식이론은 이러한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패턴의 차이가 결국 상이한 범죄피해를 발생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생활 양식이론과 일상생활 이론은 모두 잠재적 피해자의 특성으로부터 범죄피해의 원인을 찾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Bunch, 2008).

Hindelang et al.(1978)의 연구에 의하면,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개개인 또는 개인이 속한 그룹은 그들만의 특정한 생활양식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특히, 남성과 여성은 서로 상이한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두 집단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에서 성별에 따라 다른 사회적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Dugan & Apel, 2003). 때문에, 기존 연구들은 성별이 범죄피해의 유형(예: 폭력, 재산 또는 성범죄피해)을 결정지을 뿐 아니라, 범죄 피해를 결정짓는 위험요소라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Jesen & Brownfield, 1986).

美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Bureau of Justice Statistics [BJS], 1993-2005), 일반적으로 폭력관련 범죄에서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게 집계되었다. 즉, 평균적으로 인구 1,000명당 25.2명의 남성이 폭력범죄피해를 당하는 반면, 여성 피해자는 평균 17.6명(인구 1,000명당)에 불과하였다. 성범죄의

경우, 여성 피해자가 남성 피해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Catalano, 2006). 일상생활이론과 생활양식이론에 따르면,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외부활동과 신체적/육체적 활동, 그리고 위험한 장소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Cohen & Felson, 1979; Hindelang et al., 1978). 이러한 남성화된 생활양식은 결국 남성들이 여성보다 더 많은 범죄 피해에 노출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일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자료 및 표집

범죄피해조사의 조사표는 크게 [기초조사표]와 [사건조사표]로 구성되며, [기초조사표]는 기본적으로 범죄피해여부 및 피해횟수를 선별하는 반면, [사건조사표]는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기술하도록 개발되었다(김은경, 황지태, 황의갑, 노성훈, 2013).

본 연구에 사용된 전국범죄피해조사(2012) 자료는 2013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및 만 14세 이상의 가구원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고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일반조사구 중 보통조사구와 아파트 조사구를 표본추출틀로 활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김은경 외, 2013: pp. 66-67). 총 306,433개 조사구를 최종 표본 추출틀로 사용하여 표본규모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098 조사구를 선정하였으나 예산상의 제약으로 그 대상을 630개 조사구로 한정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즉, 표본추출을 위해 630개 조사구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조사구당 10가구를 뽑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조사원이 조사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s)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자기기입식 조사(self-reported survey)를 원하는 경우 자기기입식 조사를 병행하였다(김은경 외, 2013). 끝으로, 범죄피해조사를 통해 총 13,317건의 기초조사표가 수집되었다.

2.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범죄피해 경험 여부를 나타내는 이진변수(예, 아니오)이며 그 피해유형에 따라 재산범죄피해, 폭력범죄피해, 성폭력피해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재산범죄의 경우, “작년(2012년) 한 해 동안, 귀하는 속임(사기)으로 재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 귀하는 물건을 도둑맞거나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까?” 등의 4개의 재산범죄피해 관련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폭력범죄피해는 “작년 한 해 동안, 귀하는 폭행이나 위협(협박)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라는 문항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성폭력 피해도 폭력 범죄 피해와 마찬가지로 “강제로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문항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 일상생활·생활양식 변수

생활양식(Lifestyle) 변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기초조사표]의 문항 중 대중교통 이용 빈도(b10), 저녁 10시 이후 귀가 빈도(b11), 만취 후 귀가 빈도(b12), 집이 비어있는 시간(b13)을 생활양식을 대변하는 대리변수(proxy variables)로 사용하였다. 즉, 일주일 혹은 한 달 평균 대중교통 이용 빈도, 늦은 귀가 빈도, 만취귀가 빈도를 범주형 변수로 측정하였다(예: 거의 매일, 일주일에 2~3일, 일주일에 하루 등).

생활양식변수와 더불어 일상활동(routine activity)을 대표할 수 있는 공통된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일상생활(b15-1~b15-4)과 범죄예방 활동(b16-1~b16-8)에 관한 12개 하위문항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외출할 때 고급스런 옷차림/엑세사리와 유명 브랜드 제품 선호가 하나의 잠재변인(latent variable)으로 추출되었고 요인적재량은 각각 .72, .74였으며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83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b15-1 외출할 때 고급스런 옷차림이나 엑세사리를 하는 편이다.
- b15-2 평소 유명 브랜드 제품을 즐겨 사용하는 편이다.

회피행동(avoidance behavior)의 잠재변인은 아래와 같이 4개의 하위항목으로 구성되며 요인적재량은 최소 .66에서 최대 .76으로 조사되었고 신뢰도계수 또한 .81로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 b16-3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워 누군가와 같이 다닌다.
- b16-4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피해 다닌다.
- b16-5 밤에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서 그 일을 미룬다.
- b16-6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

끝으로, 도출된 두 잠재변인의 전체 설명력은 76.24%로 높은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인구·사회학적 변수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성별은 이진변수로 측정되었다(0=여자, 1=남자). 성별 이외에 인구·사회학적 변수로는 연령(1=10대, 2=20대, 3=30대, 4=40대, 5=50대, 6=60대, 7=70대 이상), 혼인상태(0=미혼/이혼/사별, 1=기혼), 직업여부(0=무급가족종사자, 전업주부, 학생, 무직 등, 1=임금근로자 혹은 자영업자), 학력(0=무학력, 1=초등학교, 2=중학교, 3=고등학교, 4=전문대학, 5=4년제 대학, 6=대학원 이상)이 포함되었다.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경제적 수준과 거주지 안정성을 나타내는 월평균소득과 이사경험 등의 변수는 결측값(missing value)이 50%로 이상으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3. 분석방법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 및 일변량(univariate) 분석에는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이 이변량(bivariate)분석에는 카이제곱검증(chi-square test)과 독립표본 T-검증을 사용했다. 성별에 따른 일상생활 및 생활양식과 범죄피해간의 상관관계는 일반적 다변량(multivariate) 분석방법인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종속변수가 범죄피해의 경험을 묻는 이진변수(예, 아니오)이기 때문에 로지스틱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로지스틱회귀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problems)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와 공차(Tolerance)를 계산하였고 그 결과에 따르면 독립변수와 통제변수간의 공선성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VIF < 1.91$; $Tolerance > .52$).

IV 분석결과

1. 기술통계분석 결과

아래의 <표 1>은 주요 변수들의 기술 통계치를 나타내고 있다. 종속변수인 범죄피해여부는 재산범죄피해의 경우 2012년 한 해 전체 응답자의 약 4%에 해당하는 531명이 속임(사기), 도난, 절도 등으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해 폭력범죄와 성범죄 피해는 상대적으로 작은 54건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일상활동·생활양식 변수를 살펴보면, 평균 응답자는 일주일에 3~4일은 버스, 지하철, 기차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약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저녁 10시 이후에 귀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술에 만취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한 달의 한번 정도이며 집이 비어있는 시간은

평균 4~8시간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가 브랜드 옷/액세서리와 회피행동은 EFA를 통해 도출된 잠재변인으로 그 값을 나타내기 위해 Bartlett 요인점수를 사용하였다. Bartlett 요인점수는 정규화된 요인점수로 평균값은 0, 표준편차는 1에 가깝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50% 이상이 여성(52%), 기혼자(63%), 근로자·자영업(52%)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평균연령은 40대 학력은 고졸이상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 주요변수별 기술통계치 (N=13,399)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범죄피해여부					
재산범죄피해 (1=있음)	531	4.00			0-1
폭력범죄피해 (1=있음)	27	0.20			0-1
성범죄피해 (1=있음)	27	0.20			0-1
일상활동·생활양식 변수					
대중교통			2.06	1.19	1-4
늦은 귀가 (10PM 이후)			2.97	1.92	1-6
만취 귀가			1.56	1.14	1-6
집이 비어있는 시간			3.24	1.21	1-5
고가 브랜드 옷/액세서리*			0	1.07	-1.5-3.07
회피행동*			0	1.10	-1.44-3.91
인구·사회적 변수					
성별 (1=남성)	6,428	48.00			0-1
혼인상태 (1=기혼)	8,379	62.53			0-1
직업여부 (1=근로자, 자영업)	6,988	52.15			0-1
연령			4.09	1.78	1-7
학력			3.17	1.49	0-6

* Bartlett 요인점수

2. 일상활동, 생활양식, 범죄피해의 성별차 검증

먼저 범죄피해경험의 남녀차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자승검정(X² test)이 실시되었다(<표 2> 참조). 카이자승검정과 독립표본 T-검증 결과에 따르면 범죄피해경험에서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남녀차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일상활동·생활양식에는 유의미한 남녀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예를 들면, 여자가 남자의 비해 버스, 지하철, 기차 등의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반면, 남자는 여자보다 저녁 10시 이후 귀가가 잦은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술에 만취되어 귀가하는 횟수도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남녀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2> 범죄피해 및 일상활동·생활양식 성별차 검증

	남자	여자	$\chi^2(df)$	t
범죄피해여부				
재산범죄피해	246	285	.44(1)	
폭력범죄피해	10	17	1.30(1)	
성범죄피해	10	17	1.30(1)	
일상활동·생활양식 변수				
대중교통	1.96	2.16		9.95**
늦은 귀가 (10PM 이후)	3.44	2.53		-28.21**
만취 귀가	1.91	1.23		-36.08**
집이 비어있는 시간	3.15	3.30		5.10**
고가 브랜드 옷/액세서리	-.51	.47		58.90**
회피행동	-.08	.07		7.62**

** p <.01, * p <.05

3.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일상활동 및 생활양식 변수가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의 남녀차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 자료를 성별에 따라 남성표본(N=6,428)과 여성표본(N=6,971)으로 나눠 각각 표본을 바탕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은 남성표본을 사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일상활동·생활양식 변수 중 저녁 10시 이후 늦은 귀가만이 재산범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집에 늦게 귀가할수록 재산범죄 피해를 당할 확률이 약 1.15배 증가한다는 것이다(Odd ratios=1.15).

<표 3>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남성표본

	범죄피해여부 (1=있음)					
	재산범죄		폭력범죄		성범죄	
	b	Exp(b)	b	Exp(b)	b	Exp(b)
일상활동·생활양식 변수						
대중교통	.04	1.04	1.05	2.84	1.05	2.84
늦은 귀가 (10PM 이후)	.14*	1.15	.19	1.20	.19	1.20
만취 귀가	-.07	.93	-.53	.59	-.53	.59
집이 비어있는 시간	.02	.98	.24	.79	.24	.79
고가 브랜드 옷/액세서리	.00	1.00	-.30	.74	-.30	.74
회피행동	.08	1.08	-.78	.46	-.78	.46
인구·사회적 변수						
혼인상태 (1=기혼)	.01	1.01	13.35		13.35	
직업여부 (1=근로자, 자영업)	.22	1.25	14.84		14.84	
연령	-.02	.98	1.04	2.83	1.04	2.83
학력	.05	1.05	.94	2.56	.94	2.56
-2 Log likelihood	1,097.86		28.87		28.87	
Nagelkerke R2	.02		.39		.39	
N	6,428		6,428		6,428	

** p <.01, * p <.05

폭력범죄피해와 성폭력피해는 일상활동 및 생활양식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폭력범죄피해와 성범죄피해 경험을 상호 교차 분석한 결과 동일한 응답자가 폭력범죄와 성범죄 피해를 동시에 당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폭력범죄와 성범죄의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가 동일하다.

<표 4>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여성표본

	범죄피해여부 (1=있음)					
	재산범죄		폭력범죄		성범죄	
	b	Exp(b)	b	Exp(b)	b	Exp(b)
일상활동·생활양식 변수						
대중교통	.04	1.04	.69*	2.00	.69*	2.00
늦은 귀가 (10PM 이후)	.11*	1.11	.08	1.08	.08	1.08
만취 귀가	.18*	1.20	-.19	.83	-.19	.83
집이 비어있는 시간	.14*	1.15	.59	1.80	.59	1.80
고가 브랜드 옷/액세서리	.11	2.12	-1.03**	.36	-1.03**	.36
회피행동	-.19**	.83	.21	1.24	.21	1.24
인구·사회적 변수						
혼인상태 (1=기혼)	.21	1.23	-1.58	.20	-1.58	.20
직업여부 (1=근로자, 자영업)	-.17	.84	-1.43*	.24	-1.43*	.24
연령	-.12	.89	-.42	.66	-.42	.66
학력	.00	1.00	.98**	2.66	.98**	2.66
-2 Log likelihood	1,617.72		94.16		94.16	
Nagelkerke R2	.04		.42		.42	
N	6,971		6,971		6,971	

** p <.01, * p <.05

<표 4>는 여성표본을 이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표이다. 남성표본 결과와 상이하게 대중교통, 늦은 귀가, 만취 귀가, 집이 비어있는 시간, 고가 브랜드 옷/액세서리, 회피행동 등이 범죄피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회피행동을 많이 하는 여성일수록 재산범죄피해를 당할 확률이 다른 여성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Odd ratios=.83). 반면, 늦은 귀가 빈도, 만취 귀가 빈도, 집이 비어있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재산범죄 피해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Odd ratios=1.11, 1.20, 1.15, respectively).

폭력범죄와 성폭력피해 경험을 교차 분석한 결과, 동일한 응답자가 두 가지의 피해를 동시에 경험하였다고 대답하였다. 따라서 남자표본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폭력범죄피해와 성범죄피해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가 동일하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여성이 자주 이용하지 않는 여성에 비해 폭력범죄 또는 성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약 2배 높다고 조사되었다 (Odd ratio=2.00). 반면 고가브랜드 옷과 액세서리의 경우에는 폭력범죄 및 성범죄피해에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가브랜드 옷이나 액세서리를 한 여성일수록 폭력범죄와 성범죄피해 확률이 다른 여성보다 낮다는 것이다(Odd ratio=.36).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일상생활이론과 생활양식이론을 통해 왜 특정한 행동과 생활습관이 범죄피해의 위험성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지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검증 하였다. 또한, 생활양식에 있어 남녀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고, 이러한 생활양식에서의 성별차이와 재산, 폭력, 및 성범죄 피해의 연관성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녀간의 일상생활 및 생활양식에 실증적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변수들이 남자와 여자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회피행동을 많이 하는 여성일 수록 재산범죄피해를 당할 확률이 다른 여성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된 반면, 늦은 귀가 빈도, 만취 귀가 빈도, 집이 비어있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재산범죄 피해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여성이 자주 이용하지 않는 여성에 비해 폭력범죄 또는 성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약 2배 높다고 조사되었다. 이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 전략 수립에 시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회피행동(범죄예방행동)을 생활화하고 밤늦은 시간엔 대중교통을 피하고 외부활동을 자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범죄피해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발표된 전국범죄피해조사(2012)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범죄피해에 관한 실증연구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2차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라는 태생적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결측치로 인해 많은 변수를 사용할 수 없었고 성범죄 및 폭력범죄 피해사례가 매우 작아 통계분석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변수의 조작화 과정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양적 연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범죄피해자조사 자료 구축 사업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국내자료〉

- 김은경, 황지태, 황의갑, 노성훈. (2013).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3-B-12.
- 이운호. (2015). 범죄학 (2판). 박영사.
- 정병수. (2011). “청소년의 일탈적 생활양식과 범죄피해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배정환. (2013). 청소년의 비행적 생활양식과 학교폭력 피해와의 관계. *경찰학연구*, 13 (4), 27-51.

〈국외자료〉

- Bunch, J. (2008). Gender, Lifestyle, and Violent Victimization. Conference Paper at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 Catalano, S. (2006). “Crime Victimization, 2005.”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Bulletin*.
- Cohen, L., & Felson, M.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588-608
- Dugan, L., & Apel, R. (2003). An Exploratory Study of the Violent Victimization of Women: Race/Ethnicity and Situational Context. *Criminology*, 41, 959-979.
- Fisher, B. S., Sloan, J. J., Cullen, F. T., & Lu, C. (1998). Crime in the Ivory Tower: The Level and Source of Student Victimization. *Criminology*, 36, 671-710.
- Henson, B., Wilcox, P., Reyns, W. B., & Cullen, T. F. (2010). Gender, Adolescent Lifestyles, and Violent Victimization: Implications for Routine Activity Theory. *Victims and Offenders*, 5, 303-328.
- Hindelang, M., Gottfredson, M., & Garofalo, J. (1978). *Victims of Personal Crime: An Empirical Foundation for a Theory of Personal Victimization*. Cambridge, MA: Ballinger.
- Jesen, G. F., & Brownfield, D. (1986). Gender, Lifestyles, and Victimization: Beyond Routine Activity. *Violence and Victims*, 1, 85-99.
- Kim, E., Kwak, D., & Yun, M. (2010).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Peer Association and Parental Influence on Adolescent Substance Use: A Study of Adolescents in South Korea,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8, 17-24.
- Lee, R. D., & Hilinski-Rosick, M. C. (2012). The Role of Lifestyle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n Fear of Victimiz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7, 647-668.
- Like-Haislip, Z. T., & Warren, Y. P. (2011). Routine Inequality: Violent Victimization at the Intersection of Race and Ethnicity among Females. *Violence and Victims*, 26, 88-102.

Mustaine, E. E., & Tewksbury, R. (1998). *Criminology*, 36, 829-857.

Tewksbury, R., & Mustaine, E. E. (2000). Routine Activities and Vandalism: A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y. *Journal of Crime and Justice*, 23, 81-110.

Van Dorn, R. A. (2004). Correlates of Violent and Nonviolent Victimization in a Sample of Public High School Students. *Violence and Victims*, 19, 303-320.

1부 발표 2

가구범죄피해의 발생과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 발표자(Vortrag)

김 지 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학박사

주 익 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인턴연구원, 사회학박사수료



가구범죄피해의 발생과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I 서론

범죄피해조사의 주요 목적은 공식통계를 통해서 잘 드러나지 않는 범죄피해의 정도를 파악하고,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범죄피해의 실태를 보고할 때는 보통 두 가지를 고려한다. 하나는 피해자의 수이며, 다른 하나는 피해건수이다. 피해자의 수를 기초로 해서 피해 발생율(prevalence rate)이 산출되며, 특정 개인이나 가구가 경험한 피해건수를 기초로 해서 범죄피해율(victimization rate)이 산출된다. 그런데 보통 피해율은 피해 발생율보다 높게 나타는데 이는 반복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반복피해의 정도와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피해 집중률(concentration rate)도 보고한다. 피해율과 발생률은 모두 피해(범죄)의 수준과 심각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표이므로 같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범죄피해의 실태가 여러 가지 차원을 갖는다면, 범죄피해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규명 또한 각각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범죄피해자가 될 확률은 누구에나 동일한가? 그렇지 않다면 어떤 특성을 갖는 사람이나 가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은가? 범죄피해의 빈도 즉 피해의 심각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주어진 기간 동안 여러 번의 범죄피해를 반복적으로 당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무엇인가? 그들이 원래 위험한 생활양식과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던 범죄자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인가 등의 문제가 규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초부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범죄피해조사가 실시되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자료가 공개된 이후 범죄피해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과의 차이와 그 차이를 낳는 원인 즉 범죄피해발생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범죄피해가 두 가지 구성요소를 갖고 있음에도 범죄피해발생위험에만 초점을 맞추므로써 범죄피해현상에 대해 완전하게 이해하는데 실패하게 되고, 특히 반복피해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다.

본 연구는 범죄피해현상에 대한 보다 완전한 이해를 얻기 위해서 범죄피해의 발생위험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가구가 주어진 기간 동안 경험하는 범죄피해빈도를 분석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반복피해 및 피해의 심각성의 문제도 함께 다루고자 한다. 국내에서 범죄피해빈도를 분석대상으로 반복피해의 문제를 다룬 연구는 Park(2013)²⁾과 장안식(2014)의 연구 두 편뿐이다³⁾. Park(2013)과 장안식(2014)의 연구는 종속변인을 범죄피해빈도로 설정한 후 관찰된 자료의 성격을 가장 잘 반영하는 모형인 영과잉 음이항 회귀분석(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을 사용하여 범죄피해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구하였다⁴⁾. 두 연구 모두 새로운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범죄피해의 심각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범죄피해현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 주었으나 몇 가지 아쉬움이 있으며, 본 연구는 동일한 분석방법을 사용하되 몇 가지 변화를 통해 이들 연구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첫째, Park(2013)과 장안식(2014)의 연구는 가구(혹은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에서 제시되었던 요인들만을 범죄피해발생 및 심각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범죄피해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노출, 매력성, 보호 등과 같은 개인적인 수준의 요인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이 권고되며 일반적인 연구경향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해체론적 관점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변수들의 효과를 추가로 살펴보고자 하며, 더 나아가 범죄피해조사 자료가 다수준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수준 분석(multi-level analysis)을 활용하고자 한다.

둘째, 장안식(2014)의 연구에서는 전체범죄피해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가구범죄피해만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장안식(2014)의 연구에서는 전체 범죄피해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가구단위 수준에서 측정된 가구범죄피해와 개인단위 수준에서 측정된 개인범죄피해를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가구범죄피해를 그 가구에 속한 모든 가구구성원이 같은 범죄피해를 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자료를 수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료의 수정과정을 거쳐 개인을 분석단위로 한 전체범죄피해빈도를 분석할 경우 개인의 범죄피해경험이 과장될 위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수준에서 측정된 개인범죄피해와 가구범죄피해를 통합하여 전체범죄피해를 다루는 것보다는 각각 분리해서 다루는 것이 훨씬 더 엄밀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구범죄피해만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것은 사회해체론에서 제시하는 지역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해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지역적 특성들이 개인범죄

2) Park(2013)은 영어논문이지만, 전국 범죄피해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고, 한국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자료집을 출간하였기 때문에 국내연구로 분류하였다.

3) 노성호(2011)의 연구는 다중범죄피해에 대한 연구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범죄피해빈도분포에 대한 이해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피해1회 집단과 다중피해집단간의 차이를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4) 미국 대학에 재직중인 박승민교수가 2010년 전국범죄피해조사자료를 대상으로 가구범죄피해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를 탐구하였으나 분석방법은 달랐다.

피해보다는 가구범죄피해와 더 유관적합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경우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을 위해 이동하기 때문에, 개인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뿐 아니라 거주지역 이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개인의 범죄피해를 설명하기 위해서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구의 경우 개인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구의 피해발생과 반복피해에 대한 연구는 사회해체론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의 효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II 배경적 논의

1. 범죄피해분포의 특성과 분석모형의 선택

범죄피해는 두 가지 구성요소를 갖는다. 하나는 피해율(victimization rate)로 주어진 기간 동안 사람들에 의해서 경험한 피해건수를 기초로 하여 산출된다⁵⁾. 다른 하나는 발생율(prevalence rate)로 주어진 기간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의 수에 기초하여 산출된 것이며⁶⁾, 보통 피해자가 될 위험 혹은 가능성을 의미한다. 보통 피해율은 발생율보다 높는데, 이는 특정 사람들이 주어진 기간 동안 한번 이상의 범죄피해 즉 반복피해를 당하기 때문이며, 반복피해가 발생하는 정도는 피해건수를 피해자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이는 집중율(concentration ratio)⁷⁾이라고 한다(Lauristen and Rezey, 2013). 피해율은 각 피해자가 경험한 피해의 수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피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피해율과 더불어 발생율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체 범죄의 수준과 위험은 피해자의 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지만 더 많은 피해건수 혹은 양자의 결합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범죄피해율은 두 가지 구성요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가산자료인 범죄피해 빈도자료를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이분화하여 범죄피해 위험 혹은 발생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데 집중하였다. 이와 같이 범죄피해 빈도자료를 이분형 자료로 축약하는 것은 다양한 빈도발생에 대한 많은 정보를 손실할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 빈도분포의 다른 경향인 소수의 피해자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현상을 간과함으로써 전체적인 범죄피해 분포의 이해와 이에 대한 원인을

5) 피해율=(사람들이 경험한 피해건수/인구수)*1,000

6) 발생율=(피해자수/인구수)*1,000

7) 집중=피해건수/피해자수

규명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비판받아 왔다(Osborn and Tseloni, 1998; Hope and Norris, 2013).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 일군의 학자들이(Farrell, 1995; Pease, 1998; Farrell and Pease, 1993) 희소한 형사정책적인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무적인 관심의 일환으로 반복피해(repeat victimization)의 실태와 원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경험적인 분석에서 반복피해를 고려할 수 있는 범죄피해건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고, 과산포(over-dispersion)된 범죄피해건수와 관련된 자료의 특성을 잘 반영해줄 수 있는 적절한 모형의 선택이 주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⁸⁾.

범죄피해에 관한 자료는 사건의 발생횟수에 관한 정보로 0,1,2,3... 등과 같은 정수값을 갖는 가산자료(count data)이며, 평균보다 분산이 큰 과산포(over-dispersion)의 문제를 갖고 있다. 과산포에 대한 두 가지 가능한 원인 중의 하나는 범죄피해 빈도분포의 왼쪽 끝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과도하게 영의 비율이 높기 때문(즉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어진 기간 동안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소수의 피해자가 보고된 범죄피해건수(incidents)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Hope and Norris, 2013)⁹⁾.

범죄피해 빈도자료와 같은 가산자료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주로 사용되는 분석모형은 포아송 모형(Poisson Model)이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범죄피해빈도분포는 평균보다 분산이 큰 과산포(over-dispersion)를 나타내고 있으며¹⁰⁾, 따라서 종속변수의 평균과 분산이 동일하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는 포아송 모형은 범죄피해분포를 다루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Sparks et al., 1977; Hindelang et al, 1978; Nelson, 1980; Sparks, 1981; Lauristen and Davis-Quinet, 1995). 이에 따라 반복피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건의 분포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위험성을 갖고 있는 집단(위험 이질성: risk heterogeneity)이나 이전에 일어난 사건에 의해서 다음의 사건이 영향을 받는(event dependency) 범죄피해 빈도분포를 분석하기 위해서 최근까지 음이항 회귀분석모형(negative binominal regression)을 사용하여왔다(Nelson, 1980; Tseloni, 1995; Osborn and Tseloni, 1998; Tseloni and Pease, 2003, 2004)¹¹⁾.

8) 1990년대 반복피해에 관심을 갖기 훨씬 이전에 초기의 범죄피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범죄피해의 분포에서 나타나는 과산포의 문제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 예를 들어, Sparks와 그의 동료들(1977)은 미국의 8개지역을 대상으로 범죄피해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집합적인 수준에서 범죄피해의 분포는 포아송 분포가 가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과산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Hindelang과 그의 동료들(1978)은 런던의 세 개 지역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범죄피해분포는 포아송 분포와 같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9) 실제 범죄피해조사자료에 대한 분석결과의 예를 살펴보면, Gottfredson(1984)은 14%의 성인이 자기보고범죄피해의 70%가량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며, Weisel(2005)은 폭력피해자의 11%가 25년 동안 전체 폭력피해의 25%를 당하였고, 모든 주거침입강도의 40%가 19%의 반복피해자에 의해서 경험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범죄유형, 지역에 관계없이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밝혀지고 있다.

10) 범죄피해빈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산자료에서 포아송 가정이 현실적으로 충족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며, 과산포가 일반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McCullagh and Nelder, 1989; Osborn and Tseloni, 1998에서 재인용)

11) Nelson(1980)은 설명변수를 투입하지 않고 범죄피해 빈도분포를 음이항 모형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으며, Tseloni(1998)는 음이항 모형에 미시적 수준의 자료를 투입하여 반복피해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반면에, Osborn and Tseloni(1998), Tseloni and Pease(2003, 2004), Tseloni(2006)은 다변인(multi-variate) 다수준(multi-level) 음이항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이 모델이 영국의 범죄피해조사자료와 미국의 범죄피해조사에 잘 적용 BCS와 NCVS 자료에 잘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범죄피해 빈도분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음이항 회귀분석모형보다는 영과잉 음이항 회귀분석모형(zero-inflated negative binominal regression)이 더 유용하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관찰된 자료에서 과산포가 종전에 지적되었던 것처럼 사람들 간의 이질적인 위험가능성과 사건 의존성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많은 0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Lambert, 1992; Park, 2013:29에서 재인용). 이는 표본의 대부분은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0인 경우 나머지 집단들이 그러한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특정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집단을 면역집단(immune group)이라고 부르고, 이들이 갖는 효과를 면역효과(immunity)라고 부른다(Hope and Norris, 2013)¹²⁾.

이와 같이 과도한 0을 가진 자료에서는 음이항 분포가 가정하는 위험 이질성이나 사건종속성이외에 사건의 발생가능성이 전혀 없는 다수의 개인들이 전체 분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영과잉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과잉 음이항 모델(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의 사용이 권장되고 있다(Park, 2013; 장안식, 2014; Carvalho and Lavor, 2008; Uldag, Colvin, Hussey and Eng, 2009).

영과잉 음이항 모델은 극단적으로 위험이 낮거나 전혀 없는 개인들과 위험이 매우 높거나 사건종속적인 특성을 가진 개인의 특성을 규명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로 전체 연구대상을 두 개의 잠재집단으로 나누어 추정을 하게 되는데, 한 집단은 항상 0이 아닌 집단(not always zero group)에 대한 위험요인을 분석하는 카운트 모형(count equation)과 다른 한 집단은 항상 0인 집단(always zero group)에 대한 위험요인을 분석하는 로짓 모형(logit equation)을 통합적으로 동시에 분석하는 혼합모형전략이다(장미희, 박창기, 2012). 범죄피해 빈도자료의 측면에서 볼 때, 첫 번째는 카운트 모형은 범죄피해 빈도의 증가와 관련된 심각성에 미치는 위험요인에 대한 추정이며, 두 번째는 로짓 모형은 전혀 혹은 거의 범죄피해를 경험하지 않을 0의 집단에 속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으로 무발생확률(probability of zero)에 대한 추정을 의미한다.

영과잉 음이항 회귀분석모델은 전체모형에 대한 설명력을 증가시키고, 분포 내에서 위험성이 높은 집단으로 인한 효과와 사건종속성의 효과를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장미희, 박창기, 2012; Park, 2013). 본 연구에서는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에서 나타난 가구범죄피해분포가 평균(0.0)보다 분산(0.2)이 크며, 거의 95%에 이르는 가구가 범죄피해경험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영과잉 음이항 회귀분석모델을 사용하여 가구범죄피해의 발생여부 및 심각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2) 초기부터 범죄피해 빈도자료가 포아송 분포를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던 Sparks와 그의 동료들은 이미 1977년에 이에 대한 가능한 설명으로 면역집단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Park, 2013:29).

2.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 범죄피해의 원인에 대한 설명 :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과 사회해체론

범죄피해를 설명하려는 노력은 개인적인 수준과 집합적인 수준 양측에서 진행되었다. 범죄피해를 설명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이론 중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은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회해체론은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추고 있다.

먼저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생활양식이론(lifestyle theory)과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1970년대부터 실시된 대규모 범죄피해조사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범죄피해의 위험이 사회적 집단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Hindelang과 그의 동료들(1978)은 경험적인 자료를 통해서 얻게 된 규칙성을 발전시켜 개인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에 따라 상이한 생활양식이 범죄피해가능성에의 노출과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과의 접촉빈도에 영향을 주어 개인의 범죄피해여부를 결정한다는 생활양식이론을 제시하였다,

한편, 일상활동이론은 범죄율이 거시적인 사회변동과 관련이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범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동기화된 범죄자(the motivated offender), 적절한 범죄대상(suitable target), 보호능력의 부재(lack of the guardianship)라는 세 가지 요소가 시·공간적으로 수렴되어야만 하며¹³⁾, 사회적 변화로 인한 개인들의 여러 가지 일상활동(직업활동, 여가활동 등)의 변화가 범죄발생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Cohen and Felson, 1979).

이와 같이 생활양식이론과 일상활동이론의 출발점은 달랐지만, 두 이론 모두 사회구조나 역할기대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느 정도 유형화된 생활양식이나 일상활동들이 자신과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없고, 동기화된 범죄자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과 공간에 상황지우기 때문에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가정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이후 생활양식과 일상활동은 같은 의미를 같은 개념으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후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은 수많은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었으며, 범죄피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자리잡고 있다.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이 개인의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위와 생활양식 및 일상활동과 같은 미시적인 요인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에, 사회해체론(social disorganization)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역간 범죄율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의 여러 특성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범죄피해의 원인을 설명하는 사회해체론적 관점은 1920년대 시카고학파의 사회해체론에서 시작되었다. 사회해체론은 빈곤, 인종적 이질성, 거주불안정성과 같은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특성들

13) Cohen과 그의 동료들(1981)은 범죄피해와 관련한 일상활동의 요인을 더욱 구체화하여 범죄위험에의 노출, 범죄자와의 근접성, 잠재적 피해자의 매력성, 보호능력의 부재 등 4가지로 정리하였다.

이 지역사회의 해체를 가져오며, 이러한 해체된 지역에서는 범죄율이 높아진다(Shaw and McKay, 1942)고 주장함으로써 범죄와 피해의 연구에 있어서 지역사회 특성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는 하였지만, 이론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문제점과 사회적인 상황 등으로 인해 연구자의 관심에서 멀어져갔다.

그러나 1980년대 일군의 학자들에 의해서 초기의 사회해체론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가난, 이질적 인종구성, 잦은 인구이동과 같은 지역의 구조적 특성이 지역의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구조를 명확히 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었다(Sampson and Grove, 1989; Bursik and Grasmick, 1993; Sampson, Morenoff and Gannon-Rowley, 2002). 이는 수정된 사회해체론으로 불리는데, 이들은 지역주민들 간의 사회적 유대와 이를 통해서 형성된 사회통제를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범죄율을 연결하는 주요 고리로 생각하였다. 즉 가난, 이질적 인종구성, 잦은 인구이동과 같은 지역의 구조적 특성이 지역주민들 간의 공식적·비공식적인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을 방해하고, 지역사회의 집합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감소시켜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무질서와 범죄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후 수정된 사회해체론은 지역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며 많은 경험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이 여러 경험적인 자료를 통해서 규명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유대가 반드시 지역의 사회통제수준을 높여 범죄를 억제하는 것은 아니며,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 간의 사회적 유대가 범죄집단과의 접촉가능성을 높이고, 이것이 오히려 인해 범죄나 비행을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Markowita and Felson, 1998; Patillo, 1998; Browning, Fienberg, and Dietz, 2004).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Sampson과 그의 동료들(1997, 1999, 2001)은 지역사회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의도는 지역주민들 간의 친밀한 이웃관계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지역주민들 간의 상호신뢰와 결집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역유대’와 ‘사회통제를 달성하기 위해 기대되는 행동’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연결시킨 “집합효율성(collective efficacy)”개념을 제시하였다. Sampson(2004, 2006)에 따르면, 집합효율성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나 문제행위에 대해 주민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지역수준에서 의도하는 결과를 이루어내기 위한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역사회의 역량에 대해 지역성원들이 공유한 믿음을 강조한 개념으로 집합효율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범죄 및 피해율이 낮을 것으로 가정된다(박성훈, 2011). 이후 집합효율성이 범죄피해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많은 경험적인 연구결과를 통해서 입증되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피해에 대한 설명은 개인적인 수준과 집합적인 수준의 양측에서 진행되었지만, 영미권에서는 1990년대 이후부터는 개인적 요인이나 지역특성 어느 하나에 관심을 기울이기 보다는 두 가지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Smith and Jarjoura, 1989; Wilcox, Land and Miethe, 1994; Rountree et al, 1994; Rountree and Land, 1996; Wittebrood and Nieuwbeerta,

1997; Wilcox and Land, 2000,; Wilcox, Land and Hunt, 2003,; Wilcox, Madensen and Tillyer, 2007; Carvalho and Lavor, 2008).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개인적 요인과 지역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고, 개인수준의 요인들이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수준의 요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연구하는 것은 범죄피해에 대한 좀 더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Miethe and McDowal, 1993). 개인적 요인과 지역적 특성을 하나의 모델에서 고려하는 방법은 두 요인을 같이 투입하여 다른 하나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통제하는 방법, 개인적 요인과 지역특성 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는 방법, 그리고 다수준 분석 모형(multi-level)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중 다수준 분석모형은 다른 통계기법을 사용했을 때보다 지역수준에서 범죄피해의 차이는 물론 개인요인과의 상호작용도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면서(박성훈, 2011), 최근의 연구들은 다층적인 범죄피해 조사자료¹⁴⁾의 구조를 잘 반영한 위계적 다층모형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에서도 범죄피해조사 개편이후 다수준 분석모형을 적용하는 연구들이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김준호외, 2011; 박성훈, 2011; 윤우석, 201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개별가구의 특성과 생활양식 및 일상활동과 관련된 요인들이 가구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들이 개별가구가 속해 있는 지역의 여러 특성(사회적 유대, 비공식적 통제, 공식적 통제 등)에 의해서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개별가구를 1수준으로 하고, 개별가구가 포함된 지역(동)을 2수준으로 하는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기로 하겠다.

나. 반복피해의 원인에 대한 설명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범죄피해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대부분의 경험적인 연구들은 범죄피해 위험여부에 따라 가산자료를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으로 이분화시켜 살펴봄으로써 범죄피해건수와 범죄피해의 집중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일부 학자들이 반복피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으며, 범죄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한 번의 범죄피해를 당하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한번 이상의 범죄피해를 당하며, 전체범죄피해건수에 있어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Farrell, 1995; Pease and Laycock, 1996) 한편으로는 범죄피해의 전체적인 분포를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있어 범죄피해 위험(risk)보다는 범죄피해건수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자료에 부합되는 적절한 분석모형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Osborn and Tseloni, 1998), 다른 한편으로는 반복피해¹⁵⁾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었다.

14) 범죄피해조사는 3수준 자료의 구조를 띄고 있다. 1수준은 개인이며, 2수준은 개인가구원이 포함된 가구이며, 3수준은 가구가 포함된 지역(동 혹은 시군구)이다. 대부분의 다수준 분석은 개인이나 가구를 1수준, 지역을 2수준으로 설정한 후 여러 가지 개인수준의 요인들이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들이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분석하고 있으나, Tseloni and Pease(2003, 2004)의 연구는 개인을 1수준으로, 개인이 속한 가구를 2수준으로 설정하여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반복피해의 원인에 대한 설명은 주로 두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다¹⁶⁾(Taseloni and Pease, 2003, 2004; Johnson, 2008; Park, 2013). 하나는 “위험이질성(risk heterogeneity)”으로 이전의 범죄피해 경험여부와 상관없이 특정한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가구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가구에 비해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은 이전의 범죄자뿐 만아니라 다른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 매력적인 대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피해를 당하게 된다는 설명이다(Taseloni and Pease, 2003; 2004). 범죄사건은 지속적인 위험성을 나타내는 표식(flag)이며, 이러한 지속적인 위험이 피해가 반복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들은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과 사회해체론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개인적/지역적 특성들이 반복피해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간주하고 이를 범죄피해 건수에 있어서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주요 변인으로 활용하고 있다.

두 번째 개념은 “사건의존성(event dependency)”으로 이는 첫 번째 범죄피해가 이후의 범죄피해 가능성을 높인다(boost)는 점을 의미한다(Taseloni and Pease, 2003; 2004). 첫 번째 범죄가 성공한 경우에 피해자는 범죄피해에 더 취약하게 되거나 매력적으로 되며, 따라서 피해경험이 많고 오래될 수록 반복되는 범죄피해로 고통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범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성공적인 범죄가 반복가능성을 높이는데 이는 범죄에 대한 합리적 선택 관점과 일치한다. 반복피해는 범죄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이지만 조잡한 비용편익결정의 결과로서 간주된다. 반복피해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에서 사건의존성은 이전의 범죄피해경험으로 측정된다.

최근에는 반복피해를 설명하기 위한 대안적인 설명으로 “피해의 면역성(immunity of victimization)”이라는 개념이 고려되고 있다(Hope, 2007; Hope and Trickett, 2008; Hope and Norris, 2012, Park, 2013). 이는 범죄피해로부터 면역성을 가진 집단 즉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집단이 과도하게 존재할 경우(zero-inflated) 그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범죄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더욱 더 높임으로써 반복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차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자동차절도를 당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만약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를 갖고 있지 않다면 당연히 차를 갖고 있는 소수의 집단에 피해가 반복적, 중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5) 반복피해(repeat victimization)는 여러 범죄자에 의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범죄피해를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에서부터 동일한 범죄자에 의해서 저질러진 동일한 유형의 범죄피해만을 뜻하는 협소한 개념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Farrell, 1992). Outlaw, Ruback and Britt(2002)은 반복피해(repeat victimization)와 중복피해(multiple victimization)를 구분하고, 반복피해는 동일한 범죄자에 의해서 동일한 유형의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중복피해는 다수의 범죄자에 의해서 다양한 유형의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Menard and Huizinga(2001)는 반복피해를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반복피해를 중복피해(multiple victimization)와 만성적 피해(chronic victimization)로 구분하고 있다. 중복피해는 주어진 기간에 한번 이상의 범죄를 당하는 것이며, 만성적 피해는 둘 이상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반복피해는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반복피해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자인 Farrell(1992)과 Farrell and Pease(2001)가 사용하는 정의인 “어떤 사람이나 장소에 의해서 경험되는 다양한 범죄사건(multiple criminal incidents)”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16) 반복피해의 원인을 설명하는 개념인 위험 이질성, 사건의존성, 면역효과 등은 통계학자들에 의해서 과산포(over-dispersion)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된 개념과 동일하다. 이는 반복피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과산포된 범죄피해 빈도분포와 그 원인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개념을 그대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반복피해의 원인을 설명하는 개념의 하나로 ‘피해의 면역성’이 고려되기 전 반복피해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들은 대부분 범죄피해빈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음이항 회귀분석모형을 사용하였다. 음이항 회귀분석모형 자체가 과산포의 한 원인인 사건의존성의 문제를 확률분포에서 이미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이질성에 초점을 맞추어 범죄피해발생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다(Tseloni, 1998; Osborn and Tseloni, 1998; Tseloni and Pease, 2003, 2004). 그러나 이러한 분석에서는 설명되지 않은 분산이 사건의존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측정되지 않은 이질성(unmeasured heterogeneity)으로 인한 것인지를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의 학자들은 미국 범죄피해조사자료가 패널자료(panel data)라는 점을 이용하여 음이항 회귀분석모형에 분석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조사기간 이전(6개월 전, 12개월 전 등)의 조사에서 측정된 범죄피해경험을 독립변수로 투입함으로써 사건의존성의 효과를 분리시키고자 한다(Tseloni and Pease, 2003, 2004). 이들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설명되지 않은 분산은 사건의존성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측정되지 않은 개인의 특성, 그들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 혹은 생활양식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전의 피해의 효과가 분석모형에 투입된 측정된 이질성으로 인해서 약화된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사건종속성의 효과 차이 또한 측정되지 않은 이질성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위험이질성과 사건의존성이 반복피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네덜란드에서 일생동안의 범죄피해경험을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Wittebrood and Nieuwbeerta(1999)는 개인의 일생동안 반복범죄피해의 위험은 개인들 간에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으며, 이후의 범죄피해에 대한 이전의 범죄피해의 효과는 사건의존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측정되지 않은 이질성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개인의 범죄피해위험에 영향을 미치지만, 고려되지 않은 많은 위험요인들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패널조사자료를 사용한 이후의 연구에서는 위험이질성뿐만 아니라 이전의 범죄피해경험이 이후의 범죄피해위험을 증가시키며, 범죄피해건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Lauristen and Dvis-Quinet, 1995; Osborn and Tseloni, 1998; Tseloni and Pease, 2003, 2004).

최근 반복피해의 가능한 원인으로 간주되기 시작한 피해의 면역성은 어떤 특정요인들에 의해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음이항모형과 영과잉 음이항모형간의 적정성 검증(예; Vuong 검증)을 통해서 음이항모형보다 영과잉 음이항모형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관찰된 자료에 면역성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Park, 2013).

최근 영과잉 음이항 모형을 활용하여 범죄피해의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몇 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영과잉 음이항 모형을 적용한 경험적인 연구들은 대부분 횡단조사자료를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이전의 범죄피해경험을 분석에서 고려하지 못했으며, 개인 혹은 가구들간 범죄피해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주요 설명변인으로 사용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Carvalho and Lavor(2008)는 1988년 브라질의 10% 표본자료에 대한 전국센서스조사(National Research for Sample of Domciles)의 자료를 통해 사용하여 개인과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 특히,

소득불평등이 반복재산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소득불평등을 나타내주는 지표인 지니계수가 반복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변수 중(도시지역에 사는 것, 여성, 가구주, 직업유형, 교육수준, 가구원수, 가구소득, 개인소득)에서 지니계수가 반복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Park(2013)은 2011년에 수행된 2010년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를 갖고 가구범죄피해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구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방법활동 하나뿐인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범죄피해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독주택거주, 거주지에서 영업활동, 지역사회내 무질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Park(2013)이 반복범죄의 피해를 설명하기 위해서 2010년 전국범죄피해조사자료 중 가구범죄피해만을 대상으로 한 반면에, 장안식(2014)은 전체범죄피해를 대상으로 영과잉 음이항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사회적 무질서, 주택유형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죄피해경험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혼인상태, 매력성, 보호의 정도, 그리고 주택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Uludag, Colvin, Hussey, and Eng(2009)은 다수준 영과잉 음이항 회귀분석을 적용한 유일한 연구이다. 이들은 2000년에 실시된 국제범죄피해조사(ICVS:Inter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자료를 활용하여 국가단위의 거시수준 변수(민주주의 수준, 경제적 발전(GDP), 세계체제에서의 지위(주변국/중심국), 불평등(지니계수))와 개인수준 변수(결혼지위, 연령, 성, 교육, 소득)들이 가구의 재산범죄피해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있다. 그 결과 가구의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가구의 범죄피해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달랐고, 개인이 가구재산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과 빈도는 거시적 수준의 변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Uludag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와 같이 영과잉 음이항 회귀분석에 다수준 분석을 적용할 경우 지역수준변인들의 무선효과와 개인수준변인과 지역수준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고려함으로써 모델에서 설명되지 않은 이질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Rabe-Heskety and Skrondal(2012:712)에 따르면, 1수준의 자료에서 과산포가 발견된 경우 다수준 음이항분석을 추천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권고에 따라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한 영과잉 음이항 분석을 실시하도록 할 것이다¹⁷⁾.

17) 이외에도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가구범죄피해는 지역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수준 영과잉 음이항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 논문에서 사용된 자료는 2011년과 2013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2010년 전국범죄피해조사’와 ‘2012년 전국범죄피해조사’로 두 조사의 자료를 합쳐서 사용하였다. 두 조사의 모집단은 전국의 모든 가구 및 만 14세 이상 가구원이며, 표집틀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중 보통 조사구와 아파트 조사구로 동일하다. 또한, 전국을 25개 층별로 층화시킨 후 각 층별로 연령별 인구를 고려하여 비례배분한 후 확률비례계통추출을 하였다는 점에서 표집방법도 동일하다. 다만 전국범죄피해조사는 패널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두 조사에 포함된 가구는 동일하지 않다. 본 연구의 관심대상인 조사대상가구를 살펴보면, 2011년에는 7,550가구, 2013년에는 6,300가구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2개년 자료의 가구수를 합친 총 13,850가구가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2. 변인의 측정

가. 종속변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각 자료에서 지난 한 해 동안 가구에서 당한 범죄피해여부 및 빈도 두 가지이다. 가구범죄피해에는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도, 주거침입손괴, 단순주거침입, 주거침입기타, 자동차 및 부품절도, 자동차 손괴가 포함되며¹⁸⁾, 가구범죄피해여부는 총 7가지의 범죄유형 중 한번이라도 피해를 당한 적이 있으면 ‘있음(1)’, 한번도 없으면 ‘없음(0)’으로 구분하였으며, 가구범죄피해건수는 7가지 범죄유형에 대한 모든 경험횟수를 합산하였다.

나. 독립변인

1) 생활양식/일상활동 변인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에서는 노출, 대상의 매력성, 능력있는 보호자의 부재, 동기화된 범죄자와의 근접성 등과 같은 범죄피해 위험과 관련된 4가지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Miethe and Meier, 1990). 또한, 반복범죄피해에 관한 선행연구 또한 위험 이질성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동일한 요인들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개별 가구수준에서의 주요한 설명변수로

18) 2011년에 실시된 조사와 2012년에 실시된 조사에서 범죄피해유무를 확인하는 스크리닝 질문이 약간씩 달라 2011년과 2012년에 공통되는 범죄유형을 기준으로 자료를 재구성하였다.

사용하고자 한다. 범죄피해조사에서는 노출, 대상의 매력성, 능력있는 보호자의 부재를 몇 가지 문항을 통해서 측정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중 가구범죄피해와 관련성이 있는 문항만을 추출하였다.

노출은 개인이나 가구가 범죄피해의 대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집 비우는 시간으로 측정하였다. 집 비우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당신과 가족이 전부 외출하여 집이 비어 있는 시간은 하루 단위로 대략 몇 시간이나 됩니까”로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선택지는 ‘거의 없음(1)’, ‘4시간 미만(2)’, ‘4~8시간(3)’, ‘8~12시간(4)’, ‘12시간 이상(5)’으로 서열변수로 제시되었으나¹⁹⁾, 연속형 변수로의 전환을 위해서 ‘0’, ‘2’, ‘6’, ‘10’, ‘18’시간으로 재부호화(recoding)하였다²⁰⁾.

보호는 범죄발생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나 물건의 능력을 의미한다. 가구범죄피해에 관한 연구들은 보호를 사회적 보호(social guardianship)와 물리적 보호(physical guardianship)로 구분한다(Meier and Miethe, 1993; Tseloni et al., 2004). 일반적으로 사회적 보호는 가구구성, 빈집을 지켜주는 이웃의 존재 등으로 측정하며, 물리적 보호는 가구의 자체적인 방법수단의 사용과 집합적인 범죄예방활동에서의 참여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보호는 가구의 구성으로, 물리적 보호는 가구의 방법수준, 방법활동, 그리고 주택유형으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가구의 구성은 일인가구여부를 중심으로 일인가구인 경우에는 1, 아닌 경우에는 0으로 측정하였다. 가구의 방법수준은 “현관이나 창문에 이중자물쇠 등 특수 잠금장치가 있다”, “창문이나 비상구 등에 방범창(쇠창살)이 있다”, “비디오폰이나 현관문에 들여다보는 구멍이 있다”, “출입카드를 사용한다”, “도난 경보시스템이 있다”, “경비가 있다”, “집 주위에 CCTV 등 감시카메라가 있다”, “집 주변에 외부 조명이 있다”의 8개의 각 문항에 대해서 ‘예/아니오’로 구분한 여덟 개의 문항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가구의 방법활동은 “밤에 자기 전에 문이 잘 잠겼는지 꼭 확인한다”, “동네의 자율방범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3일 정도 집을 비워놓았을 때 이웃집에 보아달라고 부탁한다”의 3개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응답한 문항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주택유형은 범죄피해조사에서는 주택유형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 거주형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내 주택, 그리고 오피스텔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하나로 묶고, 그 이외의 주택유형(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형건물)으로 구분하였다. 통상 아파트/오피스텔은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고, 출입카드 등을 사용하여 외부인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 등 문지기 있는 주거단지의 형태를 띠고 있다(박성훈, 2011). 이에 따라 일반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에 비해 보호능력이 강화되어 있으며, 실제로

19) 2011년과 2013년 조사에서 집을 비우는 시간에 대해 제시된 선택지가 차이가 있어 선택지가 더 축소된 2013년 선택지로 통일하였다.

20) 본 연구에서는 거주기간이외에도 가구의 전체소득과 가구주의 교육수준을 연속형 변수로 전환하였는데, 연속형 변수로의 전환은 조사된 본래의 정확한 값을 상실했다는 단점을 지니지만, 이후 전개될 통계적 분석모형에서 통제변수로 이용할 때 보다 용이하게 변수의 효과 방향성을 판단하게 도와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서열변수로 연속형 변수로 전환하였다.

경험적인 연구결과에서 아파트 거주여부는 가구범죄피해위험을 낮추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최인섭·기광도, 1998; 김준호외, 2011; 박성훈, 2011)

대상의 매력성은 경제적이거나 상징적인 가치가 높은 물건의 이용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구범죄피해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이를 측정하는 변수로 가구의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사용되었다(Osborn and Tseloni, 1998).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소득수준, 가구주의 교육수준, 그리고 주택소유여부를 사용하였다. 범죄피해조사에서 가구전체소득은 소득없음(1)과 700만원 미만까지는 100만원 단위로 7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700만 원 이상~1,000만원 미만(9), 1,000만 원 이상(10)으로 구분하여 총 10개의 응답 중에서 선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서열변수를 연속형 변수로 전환하기 위해서 소득없음은 0으로, 그리고 구간값은 구간내 평균값으로 코딩하였으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통계청, 2010) 자료를 바탕으로 600만원 이상의 소득자들을 평균 790만원으로 코딩하였다. 그리고 왜도(skewness)의 절대값이 ± 1 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자연로그를 씌워 정규분포와 유사하게 값을 보정하였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범죄피해조사에서 무학(0), 초등학교(1), 중학교(2), 고등학교(3), 대학(4년제 미만)(4), 대학(4년제이상)(5), 대학원이상(6)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무학은 0년, 초등학교 졸업은 6년, 중학교 졸업은 9년, 고등학교 졸업은 12년, 대학교 졸업은 16년, 대학원 졸업은 20년으로 코딩하였다.

매력성을 측정하기 위한 세 번째 변수인 주택소유여부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지 아닌지 이분변수로 측정하였다.

2) 지역특성관련 변인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 특성으로 잠재적 범죄자와의 근접성, 사회적 유대, 비공식적 통제, 공식적 통제, 도시규모를 고려하였다²¹⁾. 그리고 각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변인들에 대해서는 다수준 분석에서 2수준 변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각 동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²²⁾.

앞의 배경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잠재적 범죄자와의 근접성은 원래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수준의 변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으로부터 제시된 개념이다. 잠재적 대상과 동기화된 범죄자간의 물리적 거리를 의미하는 잠재적 범죄자와의 근접성은 범죄피해위험과 관련된 4가지 요소 중 가장 측정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지역사회 내 무질서로 측정되거나(Park, 2013). 지역의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범죄에 대한 두려움, 지역사회 무질서를 하나의

21) 다수준 분석시에는 이외에도 동별 평균 가구 전체수입과 동별 평균거주년수와 각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거주불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사용되었다.

22) 지역수준의 변인은 각 동별로 공식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나 통계청 등에서 제공하는 기초생활수급자비율, 전출입인구비율 등과 같은 통계들이 시/군/구 단위에서만 공개되고 있어 개별가구가 포함되어 있는 동을 2수준으로 설정한 본 연구에서는 지역특성에 관련된 공식통계자료를 수집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지역수준의 값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측정된 값에 대해 동별 평균값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체하였다.

지수로 만들어 측정하거나(김준호외, 2011) 지역의 범죄발생추세와 범죄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박성훈, 2011)으로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근접성을 지역사회 내 무질서(incivility)²³⁾의 정도로 측정하였으나, 지역사회 내 무질서를 사회적 무질서와 물리적 무질서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사회적 무질서는 ‘기초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무리지어 다니는 불량청소년들이 많다’, 그리고 ‘큰 소리로 다투는 사람들이 많다’ 등의 3문항을 합산하여 구성하였다. 물리적 무질서는 ‘주변에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고 지저분하다’,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 ‘주변에 방치된 차나 빈 건물이 많다’ 등의 3문항을 합산하여 구성하였다.

집합효율성은 사회적 결속과 비공식통제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²⁴⁾. 사회적 결속은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 “동네의 각종행사 및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등과 같은 4문항을 합산하였다. 비공식적 통제는 “동네 아이들이 낯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도와줄 것이다”,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범죄예방을 위해 주민들의 순찰이 필요하다면 이 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등 3문항을 합산하였다.

공식적 통제는 지역의 경찰활동에 관한 것으로 “순찰활동을 잘 하고 있다”, “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신고하면, 즉시 출동할 것이다”, “범죄사건을 신고하면, 반드시 범인을 잡아 줄 것이다”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합산하였다.

3) 통제변인

생활양식/일상활동요인과 지역관련 요인이 가구범죄피해에 미치는 고유한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가구관련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통제변인으로서는 가구의 성별, 가구의 연령, 가구의 현 동네에서의 거주기간, 가구의 거주지에서 영업활동의 여부를 선정하였다. 가구의 성별은 여자를 0, 남자를 1로 코딩하였고, 가구의 연령은 1세 단위의 연속변수로 측정하였다. 가구의 거주지에서 영업활동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로 질문하였으며, 영업활동=1,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0으로 구분하였다.

23) ‘잠재적 범죄자와의 근접성’은 개인수준에서 범죄피해의 원인을 설명하는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으로부터 나온 개념이지만, Miethe와 Meier(1990)의 구조적 선택이론에서와 같이 근접성은 범죄의 기회를 만드는 거시적 혹은 구조적 요인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 특성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근접성의 개념을 측정하는 유사변인으로 활용한 지역사회 내 무질서를 지역적 특성으로 간주할 것이다.

24) 선행연구인 박성훈(2011)과 윤우석(2012)의 연구에서도 집합효율성을 사회적 유대와 비공식적 통제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다.

3. 분석방법

첫째, 대상가구의 특성, 생활양식/일활동관련 특성, 가구가 위치해 있는 지역사회의 특성과 종속변인인 범죄피해경험여부와 횟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둘째, 가구범죄피해경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구범죄피해경험횟수를 가구범죄피해경험이 없는 경우와 1회이상의 가구범죄피해경험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 이분형 자료로 변환한 후 위계적 다층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해서는 SPSS 프로그램을, 위계적 다층분석을 위해서는 HLM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셋째, 가구범죄피해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구범죄피해가 분산이 평균보다 큰 과산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음이항 모형과 영과잉 음이항 모형분석을 실시한 후 가구범죄피해횟수에 적합한 모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음이항 모형과 영과잉 음이항 회귀분석을 위해서는 STAT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V 분석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아래의 <표 1>은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가구범죄피해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범죄피해조사의 준거기간이 지난 1년 동안 가구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체 13,850가구 중 605가구로 전체의 4.4%를 차지한다. 반면에 한 번도 가구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이 없는 가구는 13,245가구로 95.6%를 차지하고 있다. 1회의 가구범죄피해를 경험한 가구는 538가구(3.9%), 2회는 55가구(0.4%), 3회는 9가구(0.1%), 4회는 3가구로 나타났다. 가구범죄피해횟수의 평균은 0.050, 분산은 0.062이다.

<표 1> 가구범죄피해 빈도

구분	빈도	퍼센트	범죄피해경험있는 가구 중 %
0회	13,245	95.6	
1회	538	3.9	88.9
2회	55	.4	9.1
3회	9	.1	1.5
4회	3	.0	0.5
합계	13,850	100.0	100.0

* 평균=0.050 분산=0.062

피해경험이 있는 가구 중 1회의 피해경험을 한 가구가 전체의 88.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회의 피해경험을 한 가구는 9.1%, 3회는 1.5%, 4회는 0.5%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가구범죄피해빈도 자료는 한 번도 가구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이 없는 가구가 95%를 넘는 영과잉(zero-inflated)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분산이 평균보다 큰 과산포(over-dispersion)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가구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가구도 대부분 1회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 가구범죄에서 반복피해의 경험은 흔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설명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51.2세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오피스텔 거주자의 비율이 46.3%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1인가구의 비율이 25.3%를 차지하였다.

<표 2> 주요 설명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변수군	변수	범주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가구 관련 특성	가구의 성	여성	5,564(40.2)	51.2	15.6	15	100
		남성	8,260(59.8)				
	가구의 연령			6.1	4.8	0	18
	거주지에서의 영업활동여부	영업안함 영업함	13,282(96.1) 542(3.9)				
	집비우는 시간			3.6	2.2	0	8
생활 양식 /일상 활동 관련 변수	1인가구여부	1인 가구아님	10,333(74.7)				
		1인 가구	3,491(25.3)	7.2	1.9	3	15
	가구의 방법수준						
	가구의 방법활동			267.1	200.3	50	790
	아파트/오피스텔 거주	아파트/오피스텔 단독/다세대주택	6,404(46.3) 7,420(53.7)				
	가구전체소득(만원)			11.7	4.7	0	20
	가구의 교육연한						
	주택소유여부	주택소유 아님	5,368(38.3)	7.3	2.5	3	15
		주택소유	8,456(61.2)				
	물리적무질서			7.1	2.4	3	15
지역 특성	사회적무질서						
	거주기간(개월)			10.9	4.3	4	20
	사회적결속						
	비공식적통제			9.8	2.3	3	15
	공식적통제						
	도시규모			2.3	1.0	1	4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분석에 투입될 변수들간에 다중공선성이 발생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관계수가 .6을 넘는 변수들이 없어 심각한 수준의 다중공선성이 발생해서 분석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구범죄피해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생활양식/일상활동과 관련된 요인들과 가구가 위치에 있는 지역사회적 특성이 가구범죄피해발생여부에 미치는 영향과 가구의 생활양식/일상활동과 관련된 요인들이 가구범죄피해발생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Bernouli 분포에 따른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수준 분석에서 1수준은 개별가구이며, 2수준은 개별가구가 속해있는 동이다.

먼저 기초모형(unconditional model)을 통해서 설명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구범죄피해 경험여부가 지역 간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해보았다. 고정효과(fixed effect)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의 가구범죄피해발생 로그승산의 평균값에 대한 추정치는 -3.089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무선폭포(random effect)를 살펴보면, 지역별 가구범죄피해경험여부의 차이를 나타내는 2수준 분산(μ 0)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가구범죄피해발생여부가 지역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9년 실시된 전국 범죄피해조사자료를 사용하여 가구범죄피해의 원인을 연구하였던 박성훈(2011)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지역수준에서 가구범죄피해의 분산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지역수준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면 굳이 다수준 분석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후부터는 다수준분석이 아닌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서 가구범죄피해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²⁵⁾.

각 변인군의 설명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4개의 모델을 구성하였다. 모델1에는 통제변인만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였고, 모델2는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 모델3는 사회해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지역특성요인²⁶⁾을 포함하였고, 마지막 모델4에서는 모든 변수들을 포함하였다.

먼저 모델1에서 가구범죄피해발생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주 연령, 거주기간, 거주지 영업활동이었다. 가구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가구범죄피해발생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주지에서 영업활동하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가구범죄피해

25) 전국범죄피해조사자료를 갖고 가구범죄피해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수준 분석을 하는 데는 몇 가지 난점이 있다. 첫째, 다수준 분석에서 적절한 파워를 얻기 위해서는 30개의 그룹과 그룹당 30명으로 900명 정도의 표본수가 요구되며, 수준간 상호작용에 관심이 있다면 50개의 그룹과 그룹당 20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송태민·송주영, 2013:15). 전국 범죄피해조사자료는 2수준을 동단위로 할 경우 500여개 넘는 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 표본크기는 문제가 없으나 각 동당 보통 10가구 정도만 조사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 집단에 포함된 개별가구의 수가 매우 적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2수준(각동)에 포함된 개별가구수가 많게는 30가구에서 적게는 10가구로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다. 가구범죄피해에 다수준 분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 조사구당 추출 가구수를 10가구에서 20가구 이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26) 다수준 분석의 기초모형에서 지역간 가구범죄피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투입된 지역특성요인들은 개별가구들이 속한 동의 평균값(group mean)이 아닌 개별가구의 값을 사용하였다.

발생위험이 더 높았다.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에서 제시된 3가지 범죄기회요인을 투입한 모델2에서 노출(집비우는 시간), 보호능력(1인가구, 가구의 방법설비수준, 가구의 방법활동, 아파트/오피스텔거주)과 관련된 모든 변인들은 가구범죄피해발생위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투입된 3개의 변수 중에서는 가구전체소득만이 가구범죄피해발생위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이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지지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가구의 방법활동의 경우에는 기대했던 바와 달리 가구에서 방법활동을 열심히 할수록 가구범죄피해발생위험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해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을 투입한 모델3에서는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비공식적 통제, 공식적 통제가 가구범죄피해발생위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해체이론이 어느 정도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집합적 효율성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투입되었던 사회적 결속은 가구범죄피해발생위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비공식적 통제 또한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비공식적 통제가 높을수록 가구범죄피해발생위험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든 변인들을 포함한 모델4의 결과를 살펴보면,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에서 제시된 노출과 보호요인은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가구범죄피해발생위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에 관련된 요인들만을 투입했을 때에는 매력성을 나타내는 가구의 전체소득이 유의미하였으나 모델4에서는 그 효과가 사라졌다.

한편, 사회해체론과 관련된 지역적 특성들 중에는 사회적 무질서, 비공식적 통제, 공식적 통제가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가구범죄피해발생위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인 중에는 가구주 연령과 거주지에서의 영업활동이 가구범죄피해발생위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가구범죄피해발생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변수		B	Exp(B)	B	Exp(B)	B	Exp(B)	B	Exp(B)
통제 변인: 가구 특성	남성	.012	1.012					-.088	.915
	가구주 연령	-.016 **	.984					-.010 *	.990
	거주기간(ln)	.128 **	1.136					.044	1.045
	거주지 영업활동	.585 **	1.795					.372 *	1.450
생활 양식/ 일상 활동 이론 관련 요인	노출 : 집 비우는 시간			.031 **	1.031			.025 **	1.026
	1인가구			-.509 ***	.601			-.474 ***	.622
	방범설비			-.117 ***	.890			-.131 ***	.877
	방범활동			.061 **	1.063			.055 *	1.056
	아파트/오피스텔			-.676 ***	.509			-.614 ***	.541
	가구전체소득			.163	1.177			.101	1.106
	가구주 교육연한			.022	1.022			-.009	.991
	주택소유			-.067	.935			.118	1.125
	물리적 무질서					.055**	1.056	-.006	.994
지역 특성 요인	사회적 무질서					.101***	1.106	.108 ***	1.114
	사회적 결속					.007	1.007	-.025	.976
	비공식적 통제					.100***	1.105	.089 ***	1.093
	공식적 통제					-.098***	.906	-.101 ***	.904
	도시규모					-.040	.961	-.006	.994
	상수항	-2.86	.057	-4.07	.017	-4.38	.013	-3.49 ***	.030
N			13,824		13,824		13,824		13,824
Pseudo-R2			.009		0.40		0.31		.067
-2 log likelihood			4895.454		4766.947		4801.366		4652.55
Chi-square			36.61***		165.117***		130.69***		279.612***

3. 가구범죄피해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아래에서는 가구범죄피해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음이항 회귀분석과 영과잉 음이항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구범죄피해조사 자료는 평균보다 분산이 큰 과산포된 가산자료이며, 95%이상이 가구범죄피해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영과잉 음이항 회귀분석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음이항 회귀분석과 영과잉 음이항 회귀분석을 모두 실시한 후 관찰된 자료에 최적의 모형이 무엇인지를 검증하는 Vuong 검증²⁷⁾을

27) Vuong 검증은 관찰된 자료에 대한 모형의 적합성(closeness)를 검증하는 것으로 음이항 회귀분석과 영과잉 음이항 회귀분석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통해서 최적모형을 선택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두 모델에서 나타나는 결과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영과잉 음이항 회귀분석을 통해서 영과잉 부분에 대한 설명력을 높였을 때 나타난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아래의 <표 4>의 하단에서 볼 수 있듯이, 음이항모델에 대한 영과잉 음이항모델의 적합도에 대한 Vuong 검증결과 검증치인 z값이 3.41로 0.001수준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과잉 음이항 모델이 음이항 모델에 비해 본 자료에 더 적합하며, 가구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면역집단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먼저 음이항 회귀분석의 결과를 해석해보면, 노출정도를 나타내는 집을 비우는 시간($b=0.028$, $p<.01$)은 가구범죄피해횟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하루평균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은 가구일수록 가구범죄피해횟수가 높아진다. 그리고 대상의 보호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투입한 1인가구($b=-0.582$, $p<.001$), 가구의 방범장비수준($b=-0.127$, $p<.001$), 가구의 방범활동($b=0.055$, $p<.05$), 아파트/오피스텔거주여부($b=-0.559$, $p<.001$) 모두 가구범죄피해횟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상의 매력성을 나타내는 가구의 전체소득, 가구주의 교육수준, 자택소유여부는 범죄피해횟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 특성 중의 하나인 잠재적인 범죄자와의 근접성을 나타내는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 중 사회적 무질서($b=0.112$, $p<.001$)만이 가구범죄피해횟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합효율성을 나타내는 사회적 결속($b=-0.030$, $p<.05$)과 비공식적 통제($b=0.089$, $p<.001$) 모두 범죄피해횟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계의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지역의 공식적 통제의 수준($b=-0.092$, $p<.001$)도 범죄피해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식적 통제의 수준은 비공식적 통제수준과 달리 가구범죄피해횟수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 특성으로 고려한 마지막 변수인 도시규모는 가구범죄피해횟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제변인으로 설정된 가구주 성별, 가구주 연령, 거주지에서의 영업활동여부, 거주기간 중 가구주의 연령과 거주지에서의 영업활동여부가 가구범죄피해횟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가구범죄피해횟수에 대한 음이항 회귀분석과 영과잉 음이항 회귀분석 결과

변수	음이항 회귀분석		영과잉 음이항 회귀분석			
			count model (not always zero)		logit model (always zero)	
노출: 집 비우는 시간	0.028	**	0.029	*	-0.002	
보호						
1인가구(준거=비해당)	-0.582	***	-0.864	***	-2.151 *	
방법수준	-0.127	***	-0.160	**	-0.147	
방법활동	0.055	*	0.095	**	0.149	
아파트/오피스텔거주(준거=단독등)	-0.559	***	0.252		3.458 ***	
매력성						
가구 전체소득	0.036		0.031		-0.003	
가구주 교육연한	-0.012		-0.025		-0.056	
주택소유(준거=비해당)	0.106		0.279		0.869	
지역특성						
근접성 : 물리적 무질서	-0.005		0.019		0.112	
근접성 : 사회적 무질서	0.112	***	0.093	**	-0.100	
사회적 결속	-0.030	*	-0.024		0.042	
비공식적 통제	0.089	***	0.040		-0.223 *	
공식적 통제	-0.092	***	-0.065	*	0.108	
도시규모	0.002		-0.056		-0.319	
통제변인 : 가구특성						
가구주 남자(준거=여자)	-0.044		0.003		0.114	
가구주 나이	-0.011	**	-0.018	**	-0.023	
거주지 영업활동(준거=비해당)	0.394	*	0.519	*	0.602	
거주기간ln	0.039		0.145	**	0.587 *	
상수항	-3.130	***	-2.923	***	-2.929	
N	13,824				13,824	
Pseudo R square	5.1%				6.0%	
Chi-square	278.00	***			54.39 ***	
H0) alpha=0	87.57	***				
Vuong test of zinb vs. standard negative binomial: z = 3.41 Pr>z = 0.0003						

가구범죄피해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대상으로 관계의 방향까지 고려해서 해석해보면,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주택유형이 그 이외의 기타 주택유형에 비해, 그리고 거주지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가 영업활동을 하는 가구에 비해 가구범죄피해횟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집주변의 방법설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지역주민들 간의 사회적 결속이 높을수록, 지역내 경찰의 활동 등이 활발하여 공식적인 통제가 잘 이루어질수록 가구범죄피해횟수는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하루 평균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을수록, 가구에서 방법활동을 많이 할수록, 지역 내에서 비공식적 통제가 잘 이루어질수록 가구범죄피해횟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영과잉 음이항 회귀분석을 통해서 가구범죄피해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항상 0일 집단에 속할 가능성(무발생확률), 즉 가구범죄피해를 전혀 혹은 거의 당할 가능성이 없는 집단에 속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표 4>의 logit model 참조), 보호요인에 해당하는 1인가구($b=-2.151$, $p<.05$), 아파트/오피스텔거주($b=3.458$, $p<.001$)와 지역적 특성에 해당하는 비공식적 통제($b=-0.223$, $p<.01$) 그리고 통제요인으로 설정된 거주기간($b=0.587$, $p<.05$)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인가구가 1인가구에 비해 가구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아파트/오피스텔의 주택유형이 그 이외의 기타 주택유형에 비해 가구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내 비공식적 통제수준이 높을수록 가구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집단에 포함될 확률이 낮아졌으며, 거주기간이 길수록 가구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집단에 포함될 확률이 높아졌다.

다음은 가구범죄피해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표 4>의 count model 참조), 노출을 측정한 집 비우는 시간($b=0.029$, $p<.05$), 보호를 측정한 1인 가구($b=-0.864$, $p<.05$), 가구의 방법설비수준($b=-0.160$, $p<.01$), 가구의 방법활동($b=0.095$, $p<.01$), 범죄자와의 근접성을 나타내는 사회적 무질서($b=0.093$, $p<.01$), 그리고 통제변인으로 설정된 가구주 나이($b=-0.018$, $p<.01$), 거주에서의 영업활동($b=0.519$, $p<.05$), 거주기간($b=0.145$, $p<.01$) 등이었다.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거주지에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가 영업활동을 하는 가구에 비해 가구범죄피해횟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의 방법설비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의 나이가 많을수록 반복적으로 가구범죄피해횟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법활동이 활발할수록, 거주지역의 사회적인 무질서 정도가 심할수록, 현재 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가구범죄피해횟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이항 회귀분석 결과와 영과잉 음이항 회귀분석결과를 비교해보면, 대체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두 모델 간에 유의미성과 관계의 방향에 차이를 보이는 변수들이 있다. 먼저 지역주민들 간의 사회적 결속의 경우에는 음이항 회귀분석모델에서만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고, 영과잉 음이항 회귀분석에서는 가산모델과 로짓모델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이항 회귀분석이 영과잉효과를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결속의 효과를 과잉추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거주기간의 경우에는 음이항 회귀분석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영과잉 음이항 회귀분석에서는 가산모델과 로짓모델 모두에서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과잉 음이항 회귀분석 중 가산모델에서 거주기간은 가구범죄피해횟수와 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 거주기간이 길수록 반복적으로 가구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로짓모델에서 거주기간은 가구범죄피해를 당하지 않을 확률과 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 거주기간이 길수록 가구범죄피해를 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았다. 이와 같이 거주기간이 가구범죄피해를 당하지 않을 확률과 가구범죄피해횟수에 미치는 상방된 효과로 인하여 이러한 효과를 분리하지 않고 합쳐서 분석하는 음이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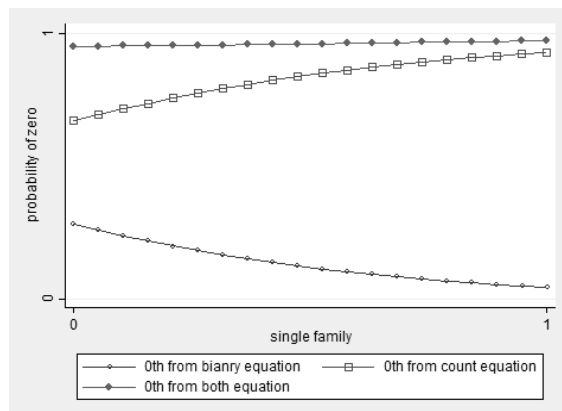
회귀분석모델에서는 거주기간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영과잉을 고려하지 못한 가산자료 분석모델인 음이항 회귀분석에서는 유의미하였으나, 영과잉 음이항 회귀분석에서의 가산모델에서는 영향력이 사라지고, 사건의 무발생확률을 보여주는 로짓분석에만 유의미한 변수들이 있다. 아파트/오피스텔거주와 사회적 결속이 그러한 변수들이다. 이러한 변수들은 사실 가구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집단에 포함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인데 영과잉을 고려하지 못하는 음이항 회귀분석모델에서는 가구범죄피해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나타나 변수의 효과가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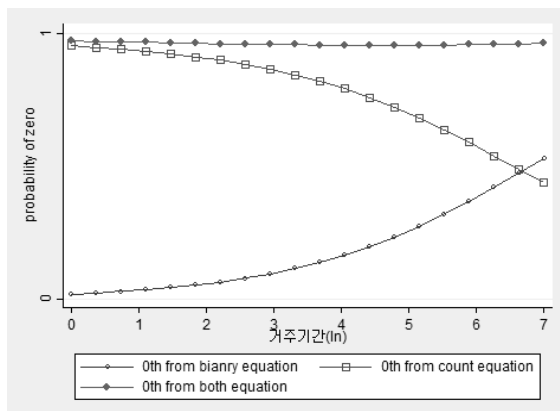
다음은 영과잉 음이항 회귀분석에서 가구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과 가구범죄피해횟수에 대해서로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로짓모델과 카운트모델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1인가구와 거주기간 두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두 변수 모두 로짓모델과 카운트모델에서 가구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이 똑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짓모델은 사건의 무발생확률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한 변수가 로짓모델과 카운트모델에서 영향을 미치는 방향이 같다는 결과는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1인가구의 효과를 살펴보면, 1인가구는 가구범죄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0일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가구범죄피해를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낮다는 것, 즉, 가구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가구범죄피해횟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길수록 가구범죄피해를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에, 거주기간이 길수록 가구범죄피해를 여러 번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1인 가구 효과 분해



[그림 2] 거주기간 효과 분해

V 논의

본 연구는 가구범죄피해에 대한 보다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 가구범죄피해를 가구범죄피해위험(발생여부)과 가구범죄피해빈도(심각성)으로 나누고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가구의 특성 및 생활양식/일상활동과 관련된 개인수준의 변인들이 가구범죄피해위험에 미치는 효과가 지역의 여러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기본모형분석결과 가구범죄피해에 있어 지역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아 다수준 분석을 중단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이러한 분석결과가 우리나라에서 가구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맥락효과가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점이다. 다수준 분석은 2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지역적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는 관건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동(읍면포함)’을 2수준의 분석단위로 설정하였다. 범죄피해조사의 표집단위인 조사구는 너무 범위가 작고, 시군구는 너무 넓어 지역사회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행정동’을 2수준의 분석단위로 설정하고 집계해본 결과 각 동에 포함되는 가구의 수는 대부분 한 조사구에서 표집되는 10가구였으며, 하나의 행정동에 두 개의 조사구가 표집되어 가구수가 20개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다수준 분석에서 보통 30/30의 규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범죄피해조사 자료는 2수준에 포함되는 개별가구수가 너무 작아 다수준 분석을 적용하기에 자료자체가 부적합한 면이 있었다. 앞으로 진행될 범죄피해조사는 이러한 면을 고려하여 조사구 당 표집가구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가구범죄발생 피해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변인 로지스틱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의 가구범죄피해를 설명하는데 있어 사회해체론에서 제시하는 지역특성과 관련된 요인들 보다는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과 관련된 요인들이 더 적합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범죄피해를 설명하는데 있어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의 적합성은 Miethe and Meier(1994), 박성훈(2011) 등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한편,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이 제시하고 있는 범죄기회와 관련된 4가지 요인 중 매력성을 제외한 노출, 보호, 잠재적 범죄자와의 근접성이 가구범죄피해의 발생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다른 요인들에 비해 보호능력의 설명력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 보호능력으로 고려된 ‘아파트/오피스텔’ 변인과 ‘1인가구’가 가구범죄피해발생위험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높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할 경우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것에 비해 가구범죄피해를 당할 위험성이 약 44% 감소하였으며,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가구범죄피해 발생위험을 당할 위험성이 약 48% 감소하였다.

‘1인가구’는 사회적 보호능력이 다인가구에 비해 낮아 가구범죄피해발생 위험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분석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거주비율이 높으며, 집을 비우는 시간도 많아 가구범죄피해 위험요인들을 중첩적으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범죄피해발생위험이 낮은 것은 범행대상으로서의 매력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가구의 전체소득이 높을수록 가구범죄피해위험이 증가하는 반면, 1인가구의 소득분포를 살펴보면, 1인가구의 81.0%가 2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추정에 불과할 뿐이며, 최근 우리사회에 1인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러한 1인가구의 비율이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과 그 메커니즘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아파트/오피스텔 주거형태는 가구범죄피해 발생위험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아파트나 오피스텔 단지는 CPTED 원리에 따라 공간이 잘 구획되어 정리되어 있고, 유지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종 방범장치들이 대부분 장착되어 있어 요새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사회적/물리적 보호능력을 겸비하고 있는 아파트/오피스텔에서 가구범죄피해 발생위험이 낮다는 점은 보호능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방범활동’의 경우에도 이론에서 기대했던 바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가구의 방범활동은 본 연구에서 ‘물리적 보호’로 고려된 변인으로 가구가 방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가구범죄피해위험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방범활동’과 가구범죄피해위험과의 정적인 관계는 앞서 ‘비공식적 통제’에 대한 추론에서 마찬가지로 현재의 범죄피해조사자료에서 시간적 순서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방범활동이 더 많은 범죄피해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범죄피해 경험이 더 많은 방범활동을 야기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결과 무질서, 비공식적 통제, 공식적 통제 등이 가구범죄피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했지만, 그 영향력이 상당히 낮고, 수정된 사회해체론의 중심개념인 집합효율성이 한국적 상황에서 갖는 의미가 다소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합효율성을 나타내는 두 개념 중 하나인 사회적 결속은 가구범죄피해의 발생위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비공식통제는 이론과는 반대로 비공식통제수준이 높을수록 가구범죄피해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가능한 추론 중의 하나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를 통해서는 시간적인 순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가구범죄피해를 당했거나 주변에 있는 가구가 가구범죄피해를 당했을 경우 지역 내의 무질서 및 범죄문제에 더 많은 관심으로 갖게 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끼리 힘을 합치고자 노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범죄발생위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뿐 아니라 가구범죄발생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가구범죄발생빈도에 대한 연구는 범죄피해의 두 가지 구성요소인 피해발생을 뿐만 아니라 사건발생율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주고, 더 나아가 특정 개별가구에 가구범죄피해가 중복되는 현상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범죄피해 발생빈도에 관한 자료가 과산포되어 있으며, 영이 지나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음이항 분석과 영과잉 음이항 회귀분석의 모델 적합도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영과잉 음이항 회귀분석이 가구범죄피해발생빈도에 더 적합한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범죄피해발생가능성이 전혀 없는 면역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영과잉 효과를 고려하지 못한 음이항 분석결과와 비교한 결과, 변수의 유의미성의 여부 및 방향 등이 달라지는 변수(사회적 결속, 거주기간)들이 있어 면역집단의 효과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을 때 계수들이 과잉 또는 과소추정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가구범죄피해발생위험이 항상 0인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을 고려한 후 가구범죄피해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과 관련된 요인인 ‘집을 비우는 시간’, ‘1인가구’, ‘방범수준’, ‘방법활동’과 더불어 사회해체이론에서 제시하는 ‘사회적 무질서’, ‘공식적 통제’ 등이 가구범죄피해빈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인으로 고려되었던 ‘가구주 나이’, ‘거주지 영업활동’도 가구범죄피해빈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범죄피해발생위험이 항상 0인 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인가구’, ‘아파트/오피스텔’, ‘낮은 비공식적 통제’, ‘거주기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의 일반화의 가능성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외국에서도 영과잉 음이항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범죄피해조사를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한 것이 비교적 최근이어서 선행연구가 거의 없고,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영과잉 음이항 분석을 적용한 선행연구가 두 편(Park, 2013; 장안식, 2014)이 있기는 하지만, 종속변수로 고려된 범죄피해의 유형²⁸⁾ 혹은 분석에 투입된 변수²⁹⁾들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향후 다양한 범죄피해유형을 대상으로 영과잉 음이항 분석모델을 사용한 연구가 이루어져 보다 확대되고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료에 적합한 영과잉 음이항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측정된 변수들의 정확한 효과를 밝혀내기는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분석모델의 설명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범죄피해빈도와 반복범죄피해가 측정되지 않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석모델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분석모델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범죄피해조사에서 개인이나 가구의 다양한 생활양식과 일상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장안식, 2014). 둘째, 이전의 범죄피해경험이 분석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전의 범죄피해경험이 고려된다면, 측정되지 않은 변수에 의한 분산과 사건의존성의 영향을 분리해낼 수 있으며, 이것이 분석모델의 설명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피해조사방식이 현재의 반복 횡단조사방식이 아닌 패널조사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패널조사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이전의 범죄피해경험이 분석에 포함될 수 있다면, ‘비공식적 통제’나 ‘가구의 방법활동’ 등이 범죄피해발생위험이나 발생빈도에 미치는

28) Park(2013)는 가구범죄피해빈도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장안식(2014)은 가구범죄피해를 포함한 전체범죄피해빈도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9) Pakr(2013)은 주로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에 관련된 변인들을 투입하였고, 장안식(2014)도 지역적 특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 • • 제3회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영향이 이론적 기대와 반대로 나오는 상황이 인과적 순서를 고려하지 못한 결과인지 아닌지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패널조사방식으로의 전환이 어렵다면, 적어도 현재와 같은 범죄피해조사에서 응답자에게 이전의 범죄피해경험을 묻는 문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자료〉

- 김준호·박현수·박성훈. 2010. “우리나라 범죄피해의 원인에 대한 연구.” 『제1회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185-232.
- 노성호. 2010. “다중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제1회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119-145.
- 박성훈. 2011. “범죄기회요인과 지역특성이 가구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22(3):327-357.
- 윤우석. 2012. “지역사회의 집합적 효율성과 범죄피해의 관계검증 :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89(봄):319-354.
- 이유산·김한성. 2014. “청소년 재가출: 경제적 배경과 사회유대의 영향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6(3):153-176.
- 장미화·박창기. 2012. “영과잉 가산자료(Zero-inflated Count Data) 분석 방법을 이용한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노인학대 발생과 심각성에 미치는 위험요인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42(6):819-832.
- 장안식. 2014. “단발성 범죄피해와 중복적 범죄피해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22(2):201-224.
- 최인섭, 기광도. 1998. “가구 및 개인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일상활동이론과 사회해체 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9(4):61-80.
- 홍성두·여승수·김남순·박상희·이선재. 2009. “지적장애 연구를 위한 영과잉 모형의 활용방안 탐색” 『지적장애연구』 11(4):179-197.

〈국외자료〉

- Browning, Christopher R., Seth L. Feinberg and Robert D. Dietz. 2004. “The paradox of social organization: Networks, collective efficacy and violent crime in urban neighborhoods.” *Social Forces* 83(2):503-534.
- Bursik, Robert Jr. and Harold G. Grasmick. 1993. *Neighborhoods and crime: The dimensions of effective community control*. Maryland: Lexington Books.
- Carvalho, José Raimundo. and Lavor, Sylvia Cristina. 2008. “Repeat Property Criminal Victimization and Income Inequality in Brazil” *Economia, Selecta*, Brasília 9(4):87-110.
- Degarmo, Matthew. 2011. “Understanding the Comparisons of Routine Activities and Contagious Distributions of Victimization: Forming a Mixed Model of Confluence and Transmi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ology and Sociological Theory*. 4(1):584-603.
- Farrell, Graham. 1995. “Preventing repeat victimization.” In M. Tonry & D. P. Farrington(Eds.),

- Building a safer society: Strategic approaches to crime prevention. Crime and Justice: A Review of Research* 19:469-534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arrell, Grahamm., Clark, Ken., Ellingworth, Dan. and Pease, Ken. 2005. "of Targets and Supertargets: A Routine Activity Theory of High Crime Rates" *Internet Journal of Criminology* pp.1-25.
- Farrell, Grahamm. and Peace, Ken. 1993. "Progress and Prospects in the prevention of repeat victimization." in N. Tilly(Eds), *Handbook of crime prevention and community safety*. pp.143-170."
- Gottfredson, M. R. 1984. *Victims of Crime: The Dimension of Risk, Home Office Research Study* 81. London:Home office.
- Grove, Louise. 2011. "Preventing Repeat Domestic Burglary: A Meta-Evaluation of Studies from Australia, th UK, and the United States." *Victims and Offenders*. 6:370-385.
- Hindelang, M., Gottfredson, M., and Garafalo, J. 1978. *Victims of Personal Crime*. Cambridge, MA:Ballinger
- Hope, Tim. and Norris, Paul A. 2013. "Heterogeneity in the Frequency Distribution of Crime Victimization."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29:543-578.
- Johnson, Shane D. 2008. "Repeat Burglary Victimization: a Tale of Two Theories" *Journal of Experimental Criminology*. 4:215-240 .
- Johnson, Shan D., Bernasco, Wim., Bowers, Kate J., Elffers, Henk., Ratcliffe, Jerry., Rengert, George. and Townsley, Michael. 2007.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23:201-219.
- Lambert, D. 1992. "Zero-inflated Poisson Regression, with an application to defects in manufacturing." *Technometrics*. 34:1-14.
- Lauritsen, J. L. and Rezey, M. L., 2013, "Measuring the Prevalence of Crime with the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Technical Report, U.S. Department of Justice.
- Markowitz, Fred E. and Richard Felson. 1998. "Social-demographic attitudes and violence." *Criminology* 36(1): 117-138.
- Miethe, Terance D. and David McDowall. 1993. "Contextual effects in models of criminal victimization." *Social Forces* 71(3): 741-759.
- Nelson, J. 1980. "Multiple Victimization in American Cities: A Statistical Analysis of Rare Even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5:870-891.
- Osborn, Denise R. and Tseloni, Andromachi. 1998.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Property Crimes"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4(3):307-330.
- Outlaw, Maureen., Ruback, Barry. and Britt, Chester. 2002. "Repeat and Multiple Victimizations: The Role of Individual and Contextual Factors." *Violence and Victims*. 17(2):187-204.
- Park, Seong Min. 2013. "A Study of Over-Dispersed Household Victimizations in South Korea: Zero-inflated Negative Binominal Analysis of Korean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 Comparative Research on Crime Victimization Survey and Policies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pp.25-44.
- Park, Seong Min. and Eck, John E. 2013. "Understanding the Random Effect on Victimization Distributions: A Statistical Analysis of Random Repeat Victimizations" *Victims and Offenders* 8:399-415.
- Pattillo, Mary E. 1998. "Sweet mothers and gangbangers: Managing crime in a black middle-class neighborhood." *Social Forces* 76(3):747-774.
- Pease, Ken. 1998. "Repeat Victimization: Talking stock." *Crime Detection and Prevention* 90.
- Sampson, Robert J. and W. Byron Groves. 1989. "Community structure and crime: Testing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774-802.
- Sampson, Robert J., Jeffrey D. Morenoff and Thomas Gannon-Rowley. 2002. "Assessing 'neighborhood effects': Social processes and new directions in research." *Annual Review of Sociology* 28:443-478.
- Sampson, Robert J. 2004. "Neighbourhood and community: Collective efficacy and community safety." *New Economy* 106-113.
- Sampson, Robert J. 2006. "Collective efficacy theory: Lessons learned and directions for future inquiry." pp. 149-167. in Francis T. Cullen, John Paul Wright and Kristie R. Blevis(eds.), *Taking stock: The status of criminological theory*.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 Sampson, Robert J., Jeffrey D. Morenoff and Felton Earls. 1999. "Beyond social capital: Spatial dynamics of collective efficacy for childr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4(5):633-660.
- Sampson, Robert J., Stephen W. Raudenbush and Felton Earls. 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918-924.
- Sagovsky, Alex. and Johnson, Shane D. 2007. "When Does Repeat Burglary Victimization Occur?" *The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Criminology*. 40:1-26.
- Smith, Douglas A. and Jarjoura, G. Roger. 1989. "Household Characteristics, Neighborhood Composition and Victimization Risk" *Social Forces*. 68(2):621-640.
- Sparks, Richard F. 1981. "Multiple Victimization: Evidence, Theory, and Future Research" *The Journal of Criminal Law & Criminology*. 72(2):762-778.
- Sparks, Richard F. and Dodd, D. 1977. *Surveying Victims: A Study of the Measurement of Criminal Victimization, Perceptions of Crime, and Attitudes to Criminal Justice*. London:Wiley.
- Tseloni, Andromachi. 2000. "Personal Criminal Victimization in the United States: Fixed and Random Effects of Individual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6(4):415-442.
- Tseloni, Andromachi. and Pease, Ken. 2003. "Repeat Personal Victimization: 'Boosts' or 'Flags' "

-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3:196-212.
- Tseloni, Andromachi. and Pease, Ken. 2004. "Repeat Personal Victimization."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4:931-945.
- Tseloni, Andromachi., Wittebrood, Karin., Farrell, Graham. and Pease, Ken. 2004. "Burglary Victimization in England and Wales, the United States and the Netherland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4:66-91.
- Turanovic, Jillian J. and Pratt, Tracis C. 2014. ""Can't Stop, Won't Stop": Self-Control, Risky Lifestyles, and Repeat Victimization."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30:29-56.
- Uludag, Sener., Colvin, Mark., Hussey, David. and Eng, Abbey L. 2009. "Modernization, Inequality, Routine Activities, and International Variations in Household Property Crimes"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Sciences*. 4(1):23-43.
- Wilcox Rountree, Pamela, and Kenneth C. Land. 2000. "Generalizability of multilevel models of burglary victimization: A cross-city comparison." *Social Science Research* 29:284-305.
- Wilcox, Rountree Pamela, Kenneth C. Land and Terance D. Miethe. 1994. "Macro-micro integration in the study of victimization: Hierarchical logistic model analysis across Seattle neighborhoods." *Criminology* 32(3):387-414.
- Wooldridge, Jeffrey M. Wooldridge. 2012. *Introductory Econometrics: A Modern Approach*. 5th edition. Cengage Learning.
- Yavrra, Lynn M. R. and Lohr, Sharon L. 2002. "Estimates of Repeat Victimization Using the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8(1):1-21.

2부 발표 1

범죄두려움과 자기보호행동의 관계에 관한 위험해석모델의 재검토

• • • 발표자(Vortrag)

김 연 수

전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범죄두려움과 자기보호행동의 관계에 관한 위험해석모델의 재검토

I 서론

2015년 현재 국내 경찰학 및 형사사법 연구영역에서 “범죄두려움”이라는 주제어로 검색해본 결과 학위논문 213건, 학술논문 374건 등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5.4.10. 검색). 물론, 이 가운데 범죄두려움이 핵심주제가 아닌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2005년 이전 발표된 연구가 20여 편이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비추어보면 피해자학을 포함한 범죄두려움을 주제로 한 연구가 장족의 발전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분석기법의 다양화와 고급화는 이 분야 연구주제의 확대와 심층적인 논의를 가능케 하였다. 그간 국내에서는 범죄두려움의 다양한 설명모델(범죄피해 모형, 취약성모형, 무질서모형, 이웃통합모형, 공식적 사회통제모형)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고, 이들 모형의 통합을 시도한 연구들도 제시되어왔다. 통합모형의 대표적 예가 바로 위험해석모델(risk interpretation model)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형의 통합을 시도한 다양한 연구논의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비해 범죄두려움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했다.

이 연구는 자기보호행동이 범죄두려움의 원인변수라는 설명이 과연 논리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즉, 범죄두려움을 느낄수록 외부활동을 자제하거나 호신장구 및 보안장치 구비 등의 대응을 유도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욱 논리적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양자의 선후관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시도된 바는 없다. 다만, Sacco(2005)의 연구를 통해 Ferraro(1995)의 범죄두려움과 위험인식 개념 구분에서 한걸음 나아가, 범죄두려움을 인지적 측면, 감정적 측면, 행동적 측면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Rader(2004)는 소위 “범죄피해의 위협(threat of victimization)”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면서, 두려움은 ‘범죄피해 위협’의 한 국면일 뿐 제약된 행동, 범죄두려움, 위험인식 사이에는 상호영향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리구성은 Ferraro가 주장한 행태적 적응(자기보호행동)³⁰⁾이 두려움의 원인이라는 부분에

30) 이하에서는 개념의 명확성을 위하여 Ferraro(1995)의 행태적 적응(behavioral adaptations)이라는 용어 대신 Giblin 등(2012)이 제안한 자기보호(self-protec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대해서는 일단 반박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다행히 최근의 연구에서는 자기보호행동(self-protection)에 관심을 둔 범죄피해연구를 통해 보호행동이 범죄피해 가능성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는 증거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Giblin et al., 2012; Kleck, et al., 2011 등). 또한 국내에서도 최근 민간경비의 선택(김상운·신재현, 2012)이나 민간조사업 도입 수용도(이정덕·장정현, 2012), 캠퍼스 내 CCTV 설치에 대한 태도(노성훈·강용길, 2010)에 관한 논의에서부터 주거단지의 요새화(김성언, 2011) 등의 원인으로 ‘범죄두려움’을 검토한 논문이 일부 발표되기도 하여, 범죄두려움과 그로 인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또, Ferraro(1995)의 위험해석모델이 이민식(2000)과 이성식(2000)의 연구를 통해 국내에 소개된 이래, 김지선(2004), 차훈진(2007), 김연수(2010)의 연구 등에서 비로소 위험인식과 자기보호행동의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 이 주제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김지선(2004)과 김연수(2010)의 연구는 Ferraro(1995)의 모델과 달리 범죄두려움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반응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하지만, 이것은 연구설계 과정에서 이론적 논리구성에 따라 연구가 진행되었을 뿐, 실제 범죄두려움과 자기보호행동의 선후관계를 입증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범죄두려움과 자기보호행동 사이의 선후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쟁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범죄두려움이 자기보호행동의 원인인가, 아니면 그 결과인가에 대한 연구문제를 제안한다. 물론, 범죄두려움 연구에서 Ferraro의 위험해석모델을 적용한 연구사례는 다수 있으나, 자기보호행동과 범죄두려움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양자의 선후관계를 검토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위험해석모델을 토대로 양자의 관계에 대해 이론검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완성도 높은 범죄두려움 설명모델을 제시할 수 있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범죄두려움이 원인이 되어 어떠한 행동들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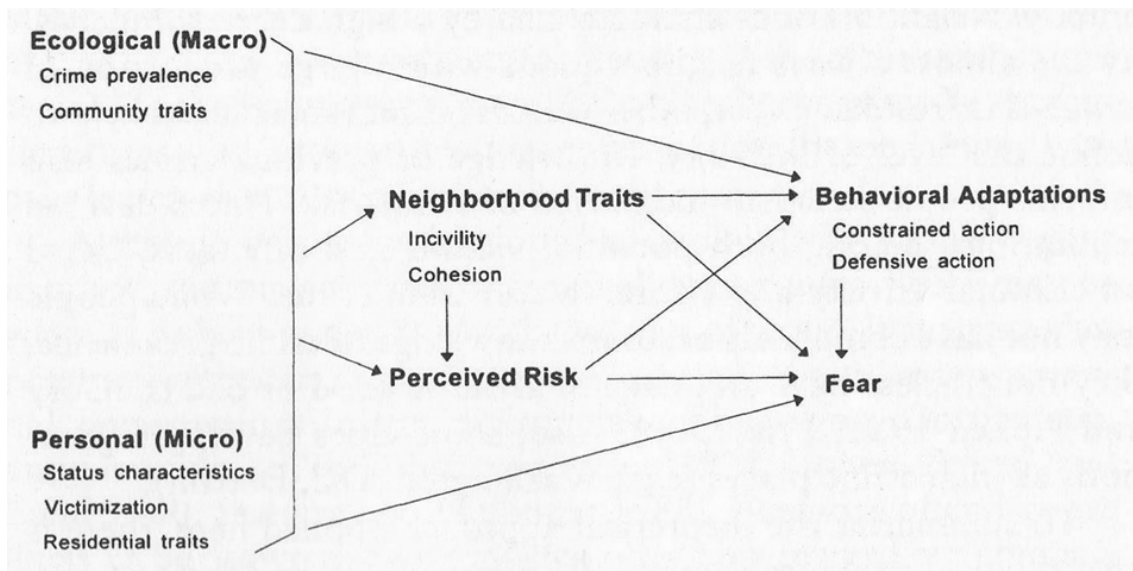
II 이론적 배경

1. Ferraro의 위험해석모델

1960년대 이후 범죄피해의 두려움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 당시 수행된 연구들은 범죄의 두려움과 관련한 중요한 상관 내지 인과관계들을 밝혀냈고, 이러한 정보는 형사사법 실무자와 정책입안자들에게 일반 시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경감시키는데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델은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Kenneth F. Ferraro(1995)의 저서 「범죄의 두려움: 범죄피해 위험의 해석(Fear of Crime: Interpreting Victimization Risk)」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험해석 모델(Risk Interpretation Model)”이라고 하겠다. 위험해석모델은 범죄두려움에 대한 다양한 설명모형들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Ferraro의 위험해석 모델은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미시수준과 거시수준의 요인과 범죄피해에 대한 인지된 위험(어느 한 개인이 범죄피해가 될 가능성), 그리고 제약된 행동(범죄피해를 회피하기 위한 개인의 일상적 활동의 변화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설계된 이론적 틀이다. 특히, 기존의 범죄두려움(fear of crime) 개념에서 위험인식(perceived risk)의 개념을 분리함으로써 이 분야 연구에서 진일보한 논의를 전개했다. 즉, [그림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위험해석모델은 거시적 환경요소로 범죄발생빈도, 지역사회 특질을, 미시적 개인요소로 지위특성, 범죄피해경험, 거주공간 특성을 아우르고 있다. 또, 근린의 대표적 특성인 무질서와 사회응집을 범죄두려움의 영향요인으로 포함하고 있고, 위험인식 그 자체와 그로 말미암은 행태적 적응(제약행동/방어행동)을 범죄두려움에 대한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더불어, 위험해석모델은 범죄위험에 대한 개인의 판단도 고려하고 있으며, 대중매체, 이웃, 동료관계, 지역의 물리적/사회적 환경, 일상활동 유형 등을 포함한다.



[그림 1] 위험해석접근에 기초한 범죄두려움의 일반모델

※ 출처: Ferraro(1995), p. 18.

특히, 위험해석모델이 갖는 의의는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이 범죄두려움과 위험인식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지역무질서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같은 주관적 요인과 함께 지역의 범죄율이나 지역의 특징과 같은 객관적 요인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Lee, 1998).

2. 자기보호행동과 범죄두려움의 관계

범죄두려움과 자기보호행동은 거의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 둘의 선후를 구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선행연구를 검토해보면 자기보호행동과 범죄두려움간의 관계에서 일관된 결과가 제시된 것은 아니다. 회피적 행동과 방어적 행동을 취함으로써 두려움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오히려 그러한 행위가 범죄두려움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이 대립한 것이다(Liska, Sanchirico, and Reed, 1988). Liska 등(1988)은 자기방어행동과 범죄두려움 사이를 정(+)적인 피드백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즉, 범죄두려움이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피해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동을 유도하고, 그러한 예방적 행동은 다시 범죄두려움을 가중시키며, 이는 더 높은 수준의 자기방어행동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후 위험인식과 범죄두려움을 구분하여 자기방어행동과의 관계를 탐색한 Ferraro(1995)의 위험해석모형에서는 위험의 지각이 범죄에 대한 예방적 행동을 유도하고 그 결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자기방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은 확인할 수 없는 가운데, 자기방어행동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유의미한 변수였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양자의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가 대립하고 있다. 이민식(2000)은 자기방어행동이 범죄두려움의 증가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차훈진(2007)은 여성의 회피적·방어적 행동이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두 연구의 결과는 상반되지만 양자는 모두 자기방어행동이 감정적 반응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설정한 연구결과이다. 그러나, 김지선(2004)이나 구자숙 등(2003), 그리고 김연수(2010)는 자기방어행동이 범죄두려움의 원인변수라고 이해하기보다 범죄두려움의 결과로서 자기방어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즉, 범죄두려움이 강하게 나타남에 따라 행동적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3. 선행연구의 검토

Ferraro의 위험해석모형은 자기보호행동을 범죄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국내외의 여러 선행연구에서 연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 처음으로 위험해석모형을 소개한 이민식(2000)의 연구는 본래의 위험해석모형을 그대로 적용하였는바, 범죄예방행동이 두려움의 각성효과를 가져오고 그것이 범죄두려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여 Ferraro(1995)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차훈진(2007)의 연구에 따르면 위험해석모형에서 자기보호행동이 범죄두려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편, 이 연구와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연구를 수행한 김연수(2010)는 모형자체를 범죄두려움이 범죄두려움의 반응(즉, 자기보호행동)에 선행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 범죄두려움은 자기보호행동의 가장 강력한 정(+)적 영향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이후, 국내에서 위험해석모형을 적용한 연구가

다수 있었으나, 대부분 예방 및 회피행동보다는 위험인식과 범죄두려움을 구분하는 측면을 강조한 연구들이어서 자기보호행동과 범죄두려움의 관계에 대한 검토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한편, 국외에서 수행된 자기보호행동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었으나, 방법론상의 문제로 범죄두려움과 자기보호행동 사이의 명확한 관계를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 즉, 대다수 연구가 선형회귀모형(Adams et al., 2005; Hope & Lab, 2001; Luxenburg et al., 1994; Whitehead & Langworthy, 1989) 또는 로지스틱회귀모형(Cao et al., 1997; Kleck & Kovandzic, 2009; Lee & DeHart, 2007; Smith & Uchida, 1988)을 활용하고 있어, 단지 직접효과만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쌍방향적 인과효과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이것은 위험해석모델을 확인하기에는 문제가 된다. 위험인식은 개인의 경험을 통해 확보되는 다양한 신호들을 기초로 해석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범죄피해경험이나 약화된 사회통제제도와 같은 요인들이 포함되고,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이 해석방식에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이 개인의 위험인식수준을 높일 수 있다(Ferraro, 1995). 단일한 종속변수에 대해 다양한 예측인자들의 직접효과만을 분석할 경우, 위험인식을 거쳐 자기보호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확인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연구는 있지만, 그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Ferguson & Mindel, 2007; Gates & Rohe, 1987; Krahn & Kennedy, 1985; Lab, 1990). 예를 들어, Lizotte와 Bordua(1980)는 주택보호장치에 대한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징의 직접효과와 함께 범죄두려움이나 위험인식을 통한 간접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사용했다. 분석결과, 위험해석모델과는 반대로 두려움이 자기보호행동을 예측했고, 범죄에 대한 인식(위험해석을 측정)은 범죄두려움을 예측했다. Krahn과 Kennedy(1985)는 위험에 대한 객관적 지표가 범죄두려움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자기보호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범죄피해경험의 경우 직접효과는 일부 사례로 제한적인 것 같다. 자기보호행동변인이 범죄피해경험에 의해 유의하게 영향을 받는다면(Ferguson & Mindel, 2007; Garofalo, 1981; Liska, Sanchirico, & Reed, 1988; Skogan & Maxfield, 1981), 그것은 범죄피해경험이 보호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보다, 위험인식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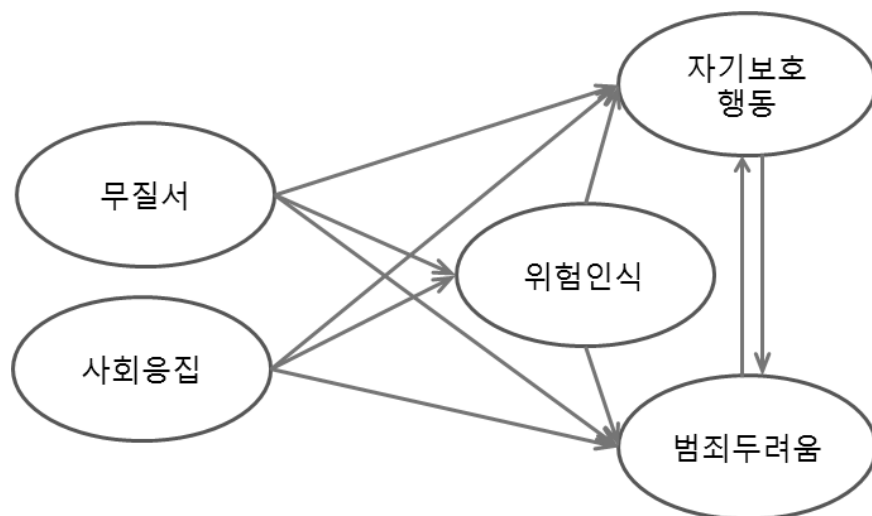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국내외의 선행연구가 명쾌하게 양자의 관계를 입증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에 이 연구는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변수들 사이의 입체적인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범죄두려움과 자기보호행동의 비재귀적 경로모델을 통해 두 변수 사이의 영향관계 중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논리적으로 상충하는 이론적 결함 내지 비판을 보완하고자 한다.

4. 연구모형과 가설

이 연구는 우선 Ferraro(1995)가 제시한 위험해석모델을 검토하고자 한다. 위험해석모델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중심으로 한 개인변인과 근린의 특질을 중심으로 한 지역변인이 함께 고려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무질서 변인과 사회응집변인만을 고려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위험해석, 범죄두려움, 자기보호행동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지만, Ferraro의 위험해석모델 중 환경적 변인과 개인변인을 제외한 근린특성은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근린의 특성으로 무질서(incivility)와 사회응집(social cohesion)은 범죄두려움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중요한 원인변수로 다루어지고 있어 연구모형에 포함하는 것이 연구모형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범죄두려움과 자기방어행동의 선후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조방정식모델을 활용하여 범죄두려움과 자기방어행동 두 변수가 서로의 원인과 결과가 되는 상호관계를 가정한 비재귀적 경로모델(non-recursive path model)을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귀모델이 두 변수간의 일방적 관계를 살펴보는 분석기법인데 비해, 비재귀모델은 두 변수 간의 양방의 관계를 가정하고 상대적 영향력의 차이를 볼 수 있는 분석방법이라는 점에서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분석기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림 2]에 제시된 연구모형을 토대로, 자기보호행동이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한 Ferraro의 위험해석모델과 범죄두려움의 결과 자기보호행동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수정된 위험해석모델, 범죄두려움과 자기보호행동이 쌍방향적 영향관계를 가정한 비재귀적 경로모델 등 총 3가지 모델의 경쟁을 통해 위험해석모델의 수정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림 2] 자기보호행동과 범죄두려움에 관한 비재귀적 경로모형

이상의 연구모델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 H1a. 무질서는 위험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 H1b. 무질서는 자기보호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 H1c. 무질서는 범죄두려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 H2a. 사회응집은 위험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 H2b. 사회응집은 자기보호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 H2c. 사회응집은 범죄두려움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 H3a. 위험인식은 자기보호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 H3b. 위험인식은 범죄두려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 H4. 자기보호행동은 범죄두려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 H5. 범죄두려움은 자기보호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2012년 범죄피해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3년 5월 29일부터 6월 12일 사이에 전국 630개 표본조사구에서 13,317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표본은 남성 6,400명(48.1%), 여성 6,917명(51.9%)이었고, 연령은 10대 1,161명(8.7%), 20대 1,599명(12.0%), 30대 2,401명(18.0%), 40대 2,542명(19.1%), 50대 2,471명(18.6%), 60대이상 3,142명(23.6%)의 분포를 보였다.

혼인상태는 미혼 3,351명(29.0%), 현재 배우자 있음 8,329명(60.0%), 사별/이혼 1,637명(11.0%)의 분포를 나타냈고, 교육수준은 무학 597명(3.1%), 초졸 1,519명(9.1%), 중졸 1,624명(11.6%), 고졸 4,557명(34.4%), 전문대졸 1,842명(14.9%), 대졸 2,765(23.4%), 대학원 졸 413명(3.5%)의 분포를 나타냈다.

한편, 조사대상 6,284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만 원 미만 1,569가구(22.0%), 100-200만 원 1,238가구(19.4%), 200-300만 원 1,318가구(21.5%), 300-400만 원 963가구(16.0%), 400-500만 원 531가구(9.3%), 500-600만 원 323가구(5.6%), 600만 원 이상 342가구(6.3%)의 분포를 나타냈다.

끝으로 총 인원 13,317명 가운데 조사된 범죄피해는 601건(4.5%)이었고, 이 가운데 폭력피해 범죄는 92건(0.7%), 재산피해 범죄는 509건(3.8%)로 나타났다. 폭력피해 범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성폭력 21건(0.2%), 강도 8건(0.1%), 폭행(협박포함)/상해 63건(0.5%)이 있었고, 재산피해 범주는 소매치기 14건(0.1%), 주거침입 152건(1.1%), 일반절도 157건(1.2%), 손괴 75건(0.6%), 사기 111건(0.8%)의 분포를 보였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1) 범죄두려움

Garofalo(1981)는 범죄두려움을 ‘어떠한 범죄적 측면과 관련한 환경에서 인식되는 물리적 위험 또는 걱정’에 대한 감정적 반응’으로 정의하였고, Ferraro(1995)는 ‘범죄나 이와 연관된 상징에 대해 행위자가 결부짓는 무서움 혹은 불안감의 정서적 반응’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두려움의 측정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일반적 두려움(*general fear*)과 구체적 두려움(*specific fear*)이 있다. 일반적 두려움이란 취약성에 대한 일반화된 느낌 또는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형태로서, 야간에 자신의 주거지역에서 혼자 걸을 때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가를 묻는 형태로 측정된다. 한편, 구체적 두려움은 특정한 범죄유형의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다 특정적이고 구체적이다(Keane, 1992).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 범죄두려움을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의 두려움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alpha=.871$). 한편, 구체적 범죄두려움은 절도, 강도, 폭행, 사기, 성폭행, 손괴, 주거침입, 괴롭힘 등 8가지 범죄유형에 대한 두려움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alpha=.943$). 이상 범죄두려움 측정에 사용한 10문항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alpha=.943$ 이었다.

2) 위험해석

Ferraro(1995)는 위험인식(*perceived risk*)을 인지적 판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범죄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절차라고 설명하여, 범죄두려움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았다. 그리고 위험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10개의 범죄유형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피해가능성에 대해 10점 척도로 측정하였다(Ferraro, 1995: 133).

그러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집된 자료는 위험인식에 관한 문항으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범죄피해를 당할 소지가 높다’는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다. 부득이, 범죄피해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이 하나밖에 없어 이 문항으로만 위험해석을 측정하였다.

3) 자기보호행동

Gate와 Rohe(1987)는 범죄에 대한 반응양식을 회피행동(*avoidance behavior*)과 보호행동(*protective behavior*)으로 구분하고 있다. 회피행동이 범죄피해위험이 높다고 인식되는 상황을 피하거나 그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킴으로써 범죄피해위험에의 노출을 감소시키는 행위라면, 보호행동은 피해위험이 높은 조건이나 상황에서 범죄피해에 대한 저항을 높이기 위한 행동으로 집안에 시건장이나 경보장치 등과 같은 보호장치를 하거나 호신술을 배우거나 호신도구를 소지하는 것을 포함한다(김지선, 2006: 51).

이 연구에서 자기보호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워 누군가와 같이 다닌다’, ‘범죄피해를 당할까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피해다닌다’, ‘밤에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서 그 일을 미룬다’,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 등 4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alpha=.863$).

4) 무질서 및 사회응집

지역의 무질서 수준에 대한 인식은 범죄두려움에 중요한 설명요인이 된다. 특히, 무질서는 사회적 무질서와 물리적 무질서로 구분하기도 하는데(Kohm, 2009; 6), 물리적 무질서(physical incivility)는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것으로 반달리즘, 쓰레기, 빈집, 버려진 차량이나 건물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사회적 무질서(social incivility)는 지역사회 내의 구성원들이 취하는 행동양식으로서 불량배집단, 노숙자, 주취자, 부랑자 등의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물리적 무질서의 개념은 ‘주변에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고 지저분했다’,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았다’, ‘주변에 방치된 차나 빈 건물이 많았다’ 등 3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alpha=.738$), 사회적 무질서는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무리 지어 다니는 불량 청소년들이 많았다’, ‘큰소리로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 등 3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alpha=.758$).

한편, 사회응집(social cohesion)은 범죄 및 일탈행동을 예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자발적 의사와 함께 범죄두려움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는다(Bursik & Grasmick, 1993; McGrarrell et al., 1997). 유사한 개념으로 비공식 통제(informal control)나 집합효율(collective efficacy), 사회자본(social capital) 등이 있으며, 범죄두려움과 관련해서는 이웃통합모형(neighborhood integration model)을 통해 사회응집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응집에 대해 지역문제 해결에 대한 이웃들의 참여정도를 의미하는 이웃참여를 측정하는 문항인 ‘동네 아이가 낯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도와줄 것 같았다’,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았다’의 2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alpha=.760$).

5)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및 특성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위해 사용한 전체 측정변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오차 및 표준편차, 왜도, 첨도는 <표 1>과 같다.

<표 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평균	표준오차	표준편차	왜도	첨도
범죄두려움	일반적 두려움	2.45	.010	1.134	.396	-.844
	구체적 두려움	2.27	.007	.843	.464	-.107
자기보호행동	야간외출시 동행	2.12	.009	1.038	.749	-.194
	위험공간 회피	2.72	.011	1.233	.077	-1.182
	야간활동 자제	2.18	.009	1.053	.720	-.205
	야간택시이용 자제	2.39	.011	1.218	.549	-.773
위험인식	-	2.12	.007	.831	.557	.237
무질서	물리적 무질서	2.48	.007	.830	.273	-.236
	사회적 무질서	2.47	.007	.829	.290	-.089
사회응집	피해자 지원	3.45	.009	.992	-.483	-.172
	경찰신고	3.82	.008	.933	-.828	.635

왜도와 첨도를 통해 정규분포성을 확인한 결과 절대값이 2를 넘지 않아 중심극한정리에 의해 정규분포를 가정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측정변인들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에 적합한 모수추정법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였다.

3. 분석절차 및 방법

이 연구는 SPSS v.21과 AMOS v.21 프로그램을 분석도구로 사용하였다. 분석절차는 우선, 주요변수인 범죄두려움, 위험인식, 자기보호행동, 무질서, 사회응집 변인 간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와 각 변인 별 기술통계를 구하였다. 다음으로 주요변수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검토하였는데, 1단계 분석인 측정모형에 대한 분석과 2단계 분석인 구조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측정모형과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최대우도법을 계수추정방법으로 사용하였고, 경로모형의 적합도 판정을 위해 χ^2 , RMSEA, GFI, TLI, CFI, NFI 등을 사용하였다.

한편,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집중타당성 검증으로 분산추출평균(variance extracted) 값과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표준화 회귀계수 값을 활용하였고, 판별타당성의 검정을 위해 평균분산추출(AVE) 및 표준오차추정구간을 활용하였다.

끝으로, 종속변인인 범죄두려움 내지 자기보호행동을 상호영향이 미치는 비재귀모델로 설정하여 분석했으며, 가설검증을 위해 각 변수들간에 존재하는 경로의 유의도와 설명력을 검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측정모형 평가

측정모형을 평가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잠재변수는 범죄두려움, 자기보호행동, 위험인식, 무질서, 사회응집이고, 각각의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측변수들이 2~4개가 존재한다.³¹⁾ 이렇게 구성된 측정모형이 적합한지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 적합도 수준이 $\chi^2=1459.613$, $df=35$, $p=.000$, $CMIN/DF=41.703$, $RMR=.027$, $GFI=.981$, $AGFI=.964$, $NFI=.975$, $TLI=.962$, $CFI=.976$, $RMSEA=.055$ 로 나타났다. 모델을 채택하기 위한 일반적 적합도 기준은 $RMR .05$ 이하, GFI , $AGFI$, NFI , TLI , CFI 는 $.90$ 이상, $RMSEA$ 는 $.08$ 이하를 제안한다(우종필, 2012: 361). 이 연구에서는 모든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여 수용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집중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CFA를 통해 도출된 표준화 요인적재량, 다중상관자승값(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및 연구단위신뢰도값(construct reliability: CR)을 적용하였다(이학식·임지훈, 2009)(<표 2>). 집중타당성에 대한 검증하기 위하여 SMC의 수용기준은 $.40$ 이상이고(Bollen, 1989), 요인적재량 $.50 \sim .95$ ($.70$ 이상이면 바람직), 요인적재량의 유의성확인을 위한 C.R. 1.96 이상, 평균분산추출값(AVE) $.50$ 이상, 개념신뢰도 $.70$ 이상을 제안한다(우종필, 2012: 165). 이 기준에 따라 집중타당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측정항목들의 표준화 요인적재량은 $.695$ 이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또, 모형에 사용된 모든 관측변수는 SMC 기준을 충족하였고, AVE 값과 개념신뢰도 값 역시 각각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이들 추정치에 대한 C.R. 값도 모두 1.96 을 초과하여 잠재변수는 해당 측정변수들의 변량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내적일관성 및 집중타당성 평가결과

잠재 변수	관측변수	표준화 요인적재량	S.E.	C.R.	SMC	AVE	개념 신뢰도
범죄 두려움	일반적 두려움	.802			.643	.631	.773
	구체적 두려움	.782	.008	88.892	.612		
자기 보호 행동	야간외출시 동행	.798			.637	.553	.831
	위험공간 회피	.796	.012	97.467	.634		
	야간활동 자제	.842	.010	103.685	.709		

31) 위험인식의 경우 부득이 한 개의 관측변인으로 잠재변인을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오차의 분산을 0으로 고정하였고, 표준화 요인적재량도 1로 고정하였다.

잠재 변수	관측변수	표준화 요인적재량	S.E.	C.R.	SMC	AVE	개념 신뢰도
	야간택시이용 자제	.710	.012	84.997	.504		
위험 인식	위험인식	1.000			.000		-
무질서	물리적 무질서	.707			.500		
	사회적 무질서	.813	.028	40.935	.660	.668	.800
사회 응집	피해자 지원	.883			.781		
	경찰신고	.695	.034	21.565	.483	.655	.789

※ 모델적합도: $\chi^2=1459.613$, $df=35$, $p=.000$, $CMIN/DF=41.703$, $RMR=.027$, $GFI=.981$, $AGFI=.964$, $NFI=.975$, $TLI=.962$, $CFI=.976$, $RMSEA=.055$

다음으로 측정모형의 판별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AVE값을 상관계수의 제곱 값과 비교하여 보았다. 두 요인 사이에서 구한 분산추출지수가 각 요인의 상관계수의 제곱, 즉 결정계수(r^2)보다 크면 두 요인 사이에는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본다(김계수, 2009: 372). 그런데, 이 연구에서 자기보호행동과 범죄두려움의 상관계수 값은 .778이고, 이를 제곱하면 .605이므로 자기보호행동의 AVE 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판별타당도의 또 다른 평가방법으로 개념들 간에 동일하다는 가설($\phi=1.0$)을 기각하는지의 여부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 즉, 95% 신뢰구간에서 ($\phi \pm 2 \times \text{standard error}$)가 1이 아니면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Anderson & Gerbing, 1988; 배병렬, 2009: 367). 이 방법에 따르면, 범죄두려움과 자기보호행동의 상관계수 .778은 $\{2 \times \text{표준오차}(.011)\}$ 을 더하거나 빼면 각각 .800과 .756이 되어 1이 아니고 따라서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 변수에 대한 판별타당성 및 법칙타당성 평가결과

변수	판별타당성				
	범죄두려움	자기보호행동	위험인식	무질서	사회응집
범죄두려움	(.631)	.011	.009	.008	.009
자기보호행동	.778***	(.553)	.007	.006	.007
위험인식	.618***	.411***	-	.005	.007
무질서	.454***	.230***	.280***	(.668)	.006
사회응집	-.142***	-.087***	-.147***	-.219***	(.655)

주) 대각선 ()안에 표기된 값은 각 변수의 평균분산추출값, 대각선 아래의 행렬값들은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계수, 대각선 위의 행렬값들은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계수의 표준오차

*** $p<.001$

끝으로, 법칙타당성은 예측한 가설간의 관계의 방향이 실제 자료에서 얻은 관계의 방향과 일치하

는가에 의해 검토할 수 있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응집과 범죄두려움, 자기보호행동, 위험인식은 부(-)적 상관을 갖고 있고, 나머지 잠재변수 사이의 관계는 모두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어 모형 및 가설설정 단계에서 예상했던 관계의 방향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측정모형은 법칙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구조모형 평가

확인적 요인분석결과를 통해 각각의 관측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충실히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범죄두려움, 자기보호행동, 위험인식, 무질서, 사회응집 변수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우선, 연구모형으로 설정한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모형의 적합도가 전체적으로 양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조모형은 3가지로 검토하였다. 먼저, 자기보호행동 → 범죄두려움의 경로를 설정하고 있는 Ferraro(1995)가 제시한 위험해석모델을 검증해보았다. 다음으로, 위험해석모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는 등 모형수정을 통해 경쟁모델1을 제안하였고, 경쟁모델2는 경로의 방향을 범죄두려움 → 자기보호행동으로 설정하여 제안하였다. 끝으로, 범죄두려움과 자기보호행동이 쌍방향 인과관계를 가정하는 비재귀모델을 검토하였다.

특히, 비재귀모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모델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델수정의 과정을 거쳐 최적모델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비재귀모델의 안정성 지수(stability index)는 .180으로 ± 1 보다 작게 나타나 선형적 관계는 안정적이다(우종필, 2012: 203).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험해석모델과 최적모델로 확보된 비재귀모델을 중심으로 연구가설을 검증하겠다.

<표 4>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CMIN (p)	RMR	GFI	AGFI	RMSEA	NFI	IFI	CFI
기준값	$p > .05$	.05이하	.90이상	.90이상	.80이하	.90이상	.90이상	.90이상
위험해석모델	1459.6 (.000)	.027	.981	.964	.055	.975	.976	.976
경쟁모델1 (보호행동 선행)	1460.4 (.000)	.026	.981	.966	.054	.975	.976	.976
경쟁모델2 (두려움 선행)	1460.4 (.000)	.026	.981	.966	.054	.975	.976	.976
최적모델 (비재귀모델)	1460.4 (.000)	.026	.981	.966	.054	.975	.976	.976

주 1. 위험해석모델은 경로수정을 하지 않은 모델임

주 2. 경쟁모델1과 경쟁모델2는 위험해석모델에서 ‘사회응집 → 자기보호행동’과 ‘사회응집 → 범죄두려움’ 경로를 삭제한 모델임

주 3. 비재귀모델은 ‘사회응집 → 자기보호행동’, ‘사회응집 → 범죄두려움’, ‘무질서 → 자기보호행동’ 경로를 삭제한 모델임

3. 연구가설의 검증

이 연구의 목적은 Ferraro(1995)가 제시한 위험해석모델의 자기보호행동과 범죄두려움의 관계를 재검토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위험해석모델을 1차적으로 검토하고, 경로의 유의성을 검토하여 자기보호행동과 범죄두려움이 각각 선행하는 경쟁모델을 제안하였다. 또, 최종적으로 자기보호행동과 범죄두려움 사이의 비재귀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비재귀모델을 확인하였다(<표 5>와 [그림 3] 참조).

한편, 경쟁모델 검증을 통해 범죄두려움과 자기보호행동의 관계를 탐색해보았다. 자기보호행동이 범죄두려움에 선행하는 경쟁모델1은 위험해석모델을 수정한 것으로 경로의 방향과 계수크기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범죄두려움이 자기보호행동에 선행한다고 본 경쟁모델2의 경우는 몇몇 경로의 인과성에 문제가 발견되었다. 즉, 무질서가 자기보호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점이나, 위험인식이 자기보호행동에 부(-)적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가설 H1b 및 H3a을 기각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논리적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 비재귀 경로모델을 통해 연구가설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5> 모형의 모수추정치

	위험해석모델	경쟁모델1	경쟁모델2	비재귀모델
무 질 서 → 위험인식	.369(.260)***	.369(.260)***	.369(.260)***	.369(.260)***
무 질 서 → 자기보호행동	.175(.124)***	.177(.125)***	-.233(-.154)***	-
무 질 서 → 범죄두려움	.357(.231)***	.355(.229)***	.471(.304)***	.386(.249)***
사회응집 → 위험인식	-.085(-.090)***	-.085(-.090)***	-.085(-.090)***	-.085(-.090)***
사회응집 → 자기보호행동	-.005(-.005)	-	-	-
사회응집 → 범죄두려움	.006(.006)	-	-	-
위험인식 → 자기보호행동	.374(.375)***	.375(.229)***	-.122(-.114)***	.156(.156)***
위험인식 → 범죄두려움	.338(.309)***	.338(.308)***	.584(.533)***	.403(.368)***
자기보호행동 → 범죄두려움	.657(.599)***	.657(.599)***	-	.481(.439)***
범죄두려움 → 자기보호행동	-	-	.896(.919)***	.375(.411)***

주 1. $p < .001$

주 2. 제시된 추정치는 비표준화 계수이며 ()에 표준화 계수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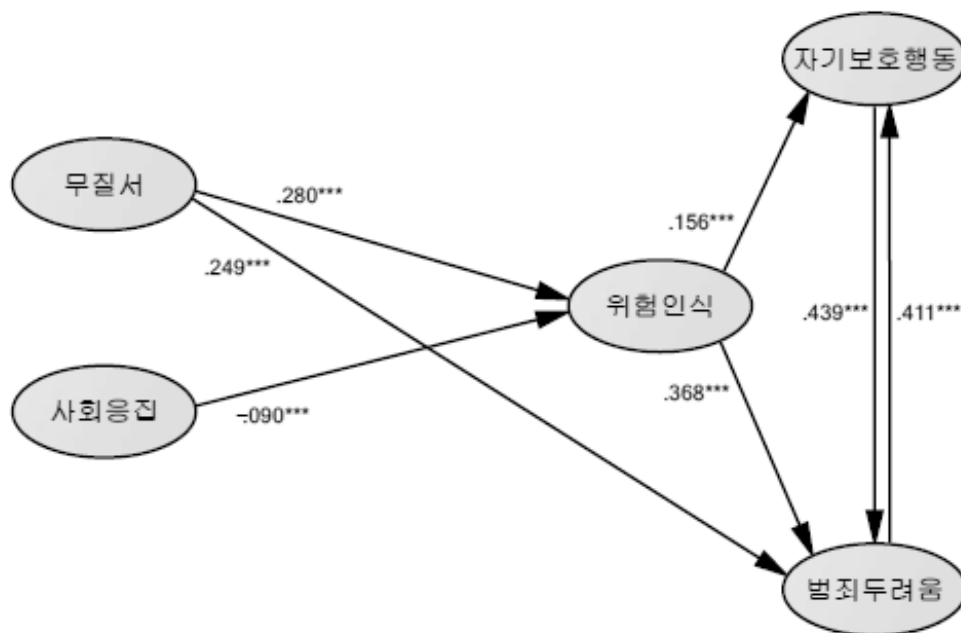
세부적인 연구가설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질서가 위험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H1a($\beta=.280$, $t\text{-value}=24.838$, $p<.001$)는 지지되었다. 또, 무질서가 자기보호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H1b은 최적모델의 수정과정에서 경로가 제외되어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질서가 범죄두려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H1c($\beta=.249$, $t\text{-value}=29.145$, $p<.001$)는 지지되었다.

둘째, 사회응집과 관련한 가설 H2는 사회응집이 위험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H2a($\beta=-.090$, $t\text{-value}=-8.850$, $p<.001$)만이 지지되었고, 자기보호행동과 범죄두려움에 대한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것은 위험해석모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결과였다.

셋째, 위험인식이 자기보호행동과 범죄두려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H3a($\beta=.156$, $t\text{-value}=8.094$, $p<.001$)와 가설 H3b($\beta=.368$, $t\text{-value}=34.928$, $p<.001$)는 모두 지지되었다. 위험인식은 자기보호행동과 범죄두려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끝으로, 자기보호행동과 범죄두려움의 비재귀적 관계에 관한 가설 H4($\beta=.439$, $t\text{-value}=23.222$, $p<.001$)와 가설 H5($\beta=.411$, $t\text{-value}=14.130$, $p<.001$) 역시 모두 지지되었다. 자기보호행동은 범죄두려움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 동시에, 범죄두려움으로 인해 자기보호행동을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양자는 상호 가산적 관계로서 자기보호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범죄두려움을 덜 느낄 것이라는 일반적 사고논리와는 배치된다.



[그림 3] 위험해석모델을 수정한 최적모델(비재귀적 경로모델)

※ 모델적합도: $\chi^2=1460.387$, $df=37$, $p=.000$, $CMIN/DF=39.470$, $RMR=.026$, $GFI=.981$, $AGFI=.966$, $NFI=.975$, $TLI=.964$, $CFI=.976$, $RMSEA=.054$

V 논의 및 시사점

1. 논의

범죄두려움은 경험적인가 표출적인가, 실존하는 개념인가 허구의 개념인가, 또, 범죄두려움은 이성적인 것인가 비이성적인가 등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이성적인 판단의 산물이건 비이성적 감정의 산물이건, 범죄두려움은 다양한 행동의 제약을 가져오고 있고, 그것은 삶의 질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범죄두려움의 문제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통합모델이 Ferraro(1995)의 위협해석모델이다. Ferraro(1995)는 행동의 제약 혹은 자기보호행동은 범죄두려움의 또 다른 원인요소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즉, 범죄두려움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자기보호행동을 꼽은 것이다. 이러한 설명방식에는 범죄두려움에 대해 자기보호행동은 일종의 각성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고,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행동으로 인해 범죄에 대해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지속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설명방식이 논리적이고 타당할까?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연구는 출발하고 있다. 즉, 범죄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자기보호행동을 더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한 이 연구는 위협해석모델의 재해석을 통해 이 문제를 깊이있게 다루고자 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그 관계를 살펴보았다.

첫째, 지역사회 요인으로 무질서는 위험인식과 범죄두려움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가설을 지지하였으나, 자기보호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기각하였다. 무질서는 범죄두려움에 중요한 영향요인이라는 점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박정선과 이성식(2010)은 구조모형이 아닌 다수준적 접근을 통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무질서가 범죄두려움에 유의미한 효과를 갖는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 이민식(2000)과 이성식(2000) 역시 무질서가 위험인식과 범죄두려움에 정(+)적 영향관계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어 이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다만, 무질서가 자기보호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보호행동은 위험인식을 통한 행동전략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사회응집과 관련하여 사회응집은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나 위험인식을 경감시켜주는 가설을 지지하였으나, 자기보호행동 및 범죄두려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다. 사회응집이 범죄두려움에 중요한 설명변인이라는 이론논의(사회통제모형 내지 이웃통합모형)와는 달리 국내의 여러 연구에서 사회응집은 범죄두려움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이성식, 2000; 박정선·이성식, 2010; 이민식, 2000; 김연수, 2010). 물론 이재영(2011)의 경우 무질서와 같은 환경적 측면보다 비공식적 통제와 같은 정서적 측면이 개인의 범죄두려움에 더 큰 영향이 있다는

주장도 일부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사회응집은 위험인식에 부(-)적 영향만을 갖고 있을 뿐, 자기보호행동 및 범죄두려움과는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셋째, 범죄두려움에 대한 이론구성에 획기적인 단초를 제시한 위험인식은 범죄두려움과 자기보호행동 모두에 정(+)적 영향을 갖는다는 가설을 지지하였다. 이상의 가설은 Ferraro(1995)의 위험해석모델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으로,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이 되었던 내용이다. 위험인식은 범죄두려움은 물론 자기보호행동에도 선행되는 변수로 설명되는데, 연구모형으로 설정한 비재귀모델에서는 자기보호행동보다는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와 정서, 그리고 행동의 관계를 종합했을 때, 인지는 정서와 더 가까운 구성개념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며, 그럼에도 양자의 개념이 구분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넷째, 자기보호행동과 범죄두려움의 관계에 이 연구는 쌍방향적 인과관계, 즉 재귀적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자기보호행동이 범죄두려움에, 다시 범죄두려움은 자기보호행동에 상호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지지하였다. 여러 연구를 통해 범죄두려움은 회피행동 및 방어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Liska et al., 1988; May, 1999). 전미범죄조사 자료를 활용한 Liska, Sanchirico, 그리고 Reed(1988)는 범죄두려움과 행동제약(두려움 완화를 위한 활동변경 등) 사이에 상호 점증적 순환고리를 발견하였다.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위험한 상황을 회피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행동을 제한하고, 이러한 회피행동이 다시 두려움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Liska et al., 1988). 한편, Rader, May, 그리고 Goodrum(2007)은 범죄두려움의 개념을 확장하여 범죄피해 위협(threat of victimization)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범죄두려움, 위험인식, 그리고 자기보호행동은 범죄피해 위협의 각기 다른 측면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즉, 범죄두려움을 중심으로 위험인식, 회피 및 방어행동이 상호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범죄두려움에 대한 위험해석모델에서 자기보호행동은 범죄두려움의 원인인 동시에 결과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자기보호행동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점에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범죄두려움으로 나타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현상으로서 지나친 자기보호, 보안, 호신 등으로 인한 경제적·비경제적 손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2.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이 연구는 위험해석모델을 재검토함으로써 위험인식과 자기보호행동, 그리고 범죄두려움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특히, Ferraro(1995)가 위험해석모델을 제안한 이후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자기보호행동과 범죄두려움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탐색한 연구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범죄두려움의 원인에 매몰되었던 학문적 관심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다만, 연구설계와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몇가지 한계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이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가 2013년 수집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라는 점에서 시간적 인과관계를 확인하기에는 다소간의 한계가 있다. 즉, 패널데이터와 같은 종단자료가 아닌 특정 시점에 수집된 횡단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점에서 범죄두려움과 자기보호행동 사이의 시간적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확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음으로, 위험해석모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위험인식 변수를 측정함에 있어 측정의 오차를 무시해야 했다. 확보한 자료를 통해서는 위험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 1문항 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불가피하였다.

끝으로, Ferraro(1995)의 위험해석모델에서는 무질서와 사회응집과 같은 지역사회 특질에 관한 변수 뿐 아니라, 개인의 범죄피해경험, 성별, 연령, 경제적 지위, 교육수준과 같은 변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의 공식범죄 통계, 도시화율 등과 같은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모형의 간명성을 위해 생략하였다. 연구의 목표가 위험인식, 범죄두려움, 자기보호행동 사이의 구조적 관계검토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전략적인 선택이었음을 밝힌다.

이상의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먼저, 위험해석모델을 검토함에 있어서 자기보호행동은 범죄두려움의 원인이자 결과로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이 이 연구의 가장 큰 소득이라고 본다. 사회전반을 통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보안산업 등의 급속한 성장으로 이제 범죄두려움은 하나의 정치경제적 이슈가 되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범죄두려움과 자기보호행동의 관계는 추후 보안시장과 관련한 연구에서 중요한 이론적 틀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또, 기존 범죄두려움에 관한 수많은 연구들이 범죄두려움의 원인을 찾는 것에 집중하였으나, 이제는 그 관심의 범위를 확장하여 범죄두려움의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을 확장하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삶의 질과 범죄두려움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들도 시도되고 있었으나, 그 중간에 행동의 제약 혹은 자기보호행동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함으로써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다.

더불어, 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하고 있는 위험인식에 대한 문항개발을 통해 이 연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다면 자기보호행동과 범죄두려움에 대한 종단적 연구설계로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른 인과관계검토도 시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기보호행동을 수정하여 자기보호행동의 ‘의도’를 측정하여 이를 보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이론의 확립은 다양한 연구설계와 연구방법, 그리고 이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참고문헌

〈국내자료〉

- 구자숙·이현희·원영희·전영실. (2003), “노인의 범죄피해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형사정책연구』 14(3): 141-173.
- 김계수, (2009),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한나래출판사.
- 김상운·신재현. (2012).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민간경비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2:33-63.
- 김성언. (2011). “범죄의 두려움과 주거 단지의 요새화”, 『형사정책연구』, 22(4):315-346.
- 김지선. (2004),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구성과 결과”,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노성훈·강용길, (2010)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대학 캠퍼스 내의 CCTV 설치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연구』, 9(4):77-102.
- 박정선·이성식, (2010), “범죄두려움에 관한 다수준적 접근: 주요 모델들의 검증”, 『형사정책연구』, 21(3):173-203.
- 배병렬,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 원리와 실제(제2판)』, 도서출판 청람.
- 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한나래출판사.
- 이민식. (2000), “범죄에 대한 반응: 일반모델의 검증”, 『형사정책연구』 11(4):215-254.
- 이성식. (2000), “거주지역의 특성과 범죄두려움 - 위험해석모델의 검증”, 『형사정책연구』 11(1): 117-139.
- 이정덕·장정현, (2012), “대학생의 지역사회 통제 및 무질서 인식이 민간조사업 도입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심리연구』, 8(2):125-147.
- 차훈진. (2007),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여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국외자료〉

- Adams, R.E., Rohe, W.M., & Arcury, T.A. (2005). Awareness of community-oriented policing and neighborhood perceptions in five small to midsize citie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3, 43-54.
- Bollen, K.A. (1989),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New York, NY: Willey.
- Bursik, R., & Grasmick, H.G. (1993). *Neighborhoods and Crime: The Dimensions of Effective Crime Control*, New York: Lexington Books.
- Cao, L., Cullen, F.T., & Link, B.G. (1997). The social determinants of gun ownership: Self-protection in an urban environment. *Criminology*, 35, 629-658.

- Ferguson, K.M., & Mindel, C.H. (2007). Modeling fear of crime in Dallas neighborhoods: A test of social capital theory. *Crime & Delinquency*, 53, 322-349.
- Ferraro, K.F. (1995). *Fear of Crime*,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Gates, L.B., & Rohe, W.M. (1987). Fear and reactions to crime. *Urban Affairs Review*, 22, 425-453.
- Giblin, M.J., Burreuss, G.W., Corsaro, N., and Schafer, J.A. (2012), "Self-Protection in Rural America: A Risk Interpretation Model of Household Protective Measures",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23(4): 493-517.
- Hope, T., & Lab, S. (2001). Variation in crime prevention participation: Evidence from the British Crime Survey. *Crime Prevention and Community Safety: An International Journal*, 3, 7-22.
- Keane, C. (1992), "Fear of Crime in Canada: An Examination of Concrete and Formless Fear of Victimization",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34:215-224.
- Kleck, G., & Kovandzic, T. (2009). City-level characteristics and individual handgun ownership.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25(1), 45-66.
- Kleck, G., Kovandzic, T., Saber, M., and Hauser, W. (2011), "The effect of perceived risk and victimization on plans to purchase a gun for self-protectio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9: 312-319.
- Kohm, Steven A. (2009), "Spatial Dimensions of Fear in a High-Crime Community: Fear of Crime or Fear of Disorder?",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51(1):1-30.
- Krahn, H., & Kennedy, L.W. (1985). Producing personal safety: The effects of crime rates, police force size, and fear of crime. *Criminology*, 23, 697-710.
- Lab, S.P. (1990). Citizen crime prevention: Domains and participation. *Justice Quarterly*, 7, 467-491.
- Lee, M.R., & DeHart, E. (2007). The influence of a serial killer on changes in fear of crime and the use of protective measures: A survey-based case study of Baton Rouge. *Deviant Behavior*, 28(1), 1-28.
- Lee, Min-Sik (1998), "Fear of Crime among Korean American in the Chicago Area: A Multilevel Analysis", Purdue University Dept. of Sociology and Anthropology, Ph. D. Dissertation.
- Liska, Allen. E., Andrew Sanghirico, and Mark D. Reed. (1988), "Fear of Crime and Constrained Behavior: Specifying and Estimating a Reciprocal Effects Model", *Social Forces* 66: 827-837.
- Lizotte, A.J., & Bordua, D.J. (1980). Firearms ownership for sport and protection: Two divergent model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5, 229-244.
- Luxenburg, J., Cullen, F.T., Langworthy, R.H., & Kopache, R. (1994). Firearms and Fido: Ownership of injurious means of protectio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2, 159-170.
- McGarrell, E.F., Giacomazzi, A., & Thurman, Q. (1997). "Neighborhood disorder, integration, and

the fear of crime”, Justice Quarterly 14:479-500.

Rader, Nicole E. (2004), “The Threat of Victimization: A Theoretical Reconceptualization of Fear of Crime”, Sociological Spectrum 24:689-704.

Sacco, Vincent. (2005), When Crime Waves, Thousand Oaks, CA: Sage.

Smith, D., & Uchida, C.D. (1988). The social organization of self-help: A study of defensive weapon ownership.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3(1), 94-102.

Whitehead, J.T., & Langworthy, R.H. (1989). Gun ownership and willingness to shoot: A clarification of current controversies. Justice Quarterly, 6, 263-282.

2부 발표 2

**폭력과 절도의 경찰신고
결정요인 분석,
KCVS 2008-2012**

• • • 발표자(Vortrag)

강 지 현

울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폭력과 절도의 경찰신고 결정요인 분석, KCVS 2008-2012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범죄피해자의 경찰신고 여부를 살펴보고 피해자의 범죄신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는데 있다. 모든 범죄사건이 경찰에 인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피해사건은 피해자 본인과 피해자 가족이나 목격자의 신고, 가해자의 자수, 수사기관의 인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이 발생범죄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경찰이 인지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이 갖는 차이에 대한 학술적 관심은 공식통계와 범죄피해조사자료의 비교분석이나 신고된 사건의 특성분석 등 다양한 관련주제들을 다루며 발전해왔다. 경찰 및 형사사법기관이 범죄사건을 인지하는 다양한 경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피해자의 신고이다. 피해자의 신고는 경찰이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고, 피해자의 적극적인 의지로 해당 사건을 형사사법기관이 해결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법과 형사사법기관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성범죄 및 가정폭력 등의 사건 등 피해자의 신고 없이는 사건이 알려지기 힘든 범죄 유형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피해자의 범죄사실 신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미국 등지에서는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사법기관이 인지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의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며, 경찰신고와 관련하여 특히 피해자의 신고결정 여부 및 영향요인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피해자의 신고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용편익분석과 규범적 관점, Black의 법행동 이론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Kang & Lynch, 2014; Goudriaan, Lynch, & Nieuwebeerta, 2004; 노성훈, 2012; 탁종연, 2010). 우리나라에 경우, 피해자의 경찰신고 여부 및 신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논의가 다소 부족한 편이고 실증적 선행연구도 많지 않은데, 이는 범죄율이 낮고 관련 연구문제를 검증할 수 있는 실증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2009년부터 개편되어 실시된 범죄피해조사가 거의 유일한 실증자료인데 이 또한 낮은

피해율로 인해 그 활용도가 높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범죄피해조사자료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범죄신고 여부 및 신고결정요인을 살펴보고 선행연구에서 밝힌 피해자의 비용-편익분석과 규범적 관점이라는 두 이론적 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범죄피해조사를 활용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의 낮은 범죄피해율은 단일년도 자료만으로는 충분한 피해사례의 확보와 분석을 어렵게 한다는 한계가 있어 자료활용과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이는 특히 피해자의 신고여부나 범죄피해의 영향 및 후유증 등 피해자 관련한 보다 상세한 연구문제에 대한 범죄피해조사자료에 활용하는 것을 어렵게 하며, 절도 등 발생빈도가 높은 특정 범죄유형을 제외하고는 범죄유형별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이기도 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다년간의 범죄피해조사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는 방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은 전미범죄피해조사(NCVS)를 활용한 다른 연구에서도 사용된 방식이다 (Kang & Lynch, 2014). 폭행과 절도사건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신체폭행 피해와 절도피해 사건의 경찰신고 결정요인을 비교해 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부차적으로는 범죄피해조사자료의 통합적 혹은 종단적 활용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범죄피해자의 범죄신고 결정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로서 선행연구는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과 규범적 관점(normative prescription), 그리고 Black의 이론 등을 제시한다.

비용-편익분석이란 피해자가 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비용과 이익을 비교계산하고 이에 따라 신고여부를 결정한다는 주장이고 규범적 관점은 범죄피해자의 신념이나 규범, 믿음이 피해사실의 신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다(Kang & Lynch, 2014; Goudriaan, Lynch, & Nieuwebeerta, 2004). 비용-편익분석에서는 피해액이나 신체피해의 결과가 클수록, 피해보상의 가능성이 클수록 해당 사건을 피해자가 형사사법 기관에 신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즉, 범죄신고를 위한 비용(신고를 위해 들이는 시간과 노력, 보복 가능성 등)보다 신고로 얻는 이익(재피해 확률 감소, 피해액의 보상 등)이 더 큰 경우에 신고가 이루어진다는 설명이다(Goudriann et al., 2004; Schnebly, 2008). 이와는 달리, 규범적 관점에서는 피해자가 처한 사회적 환경이 요구하는 규범적 맥락에 따라 피해사실 신고여부가 결정된다고 보는 입장으로, 피해자의 규범적 관점이나 신념 등에 따른 범죄피해의 신고결정은 신고로 인한 이익과 비용을 비교계산한 비용-편익분석의 결과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도난 피해의 경우 경찰신고에 앞서 카드사에 먼저 도난신고와

이용정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기 보다는 선생님이나 학교직원 등 관리자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회일반의 상식, 그리고 아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사건은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야 한다고 여기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1976년에 발표한 도널드 블랙의 법행동 이론 또한 피해사실 신고결정을 위한 이론적 틀로써 선행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 이론에서는 법을 양적으로 변화하는 함수로 이해하고 법의 사용량이 개인의 계층과 사회적 거리, 문화, 조직화, 그리고 사회통제 등에서 영향받는다고 정의한다(Black, 1976). 법이 자동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누군가 법을 사용 혹은 동원해야 하는 것인데, 법을 동원하는 대표적인 예가 경찰에 범죄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Balck, 1976, 126: 노성훈, 2012, 288에서 재인용).

비용-편익분석과 규범적 관점, 그리고 법행동 이론 등을 토대로 선행연구들은 경찰신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밝혔는데, 크게 사건관련 특성과 피해자관련 특성, 그리고 환경적 특성의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사건관련 특성 가운데 비교적 일관되게 경찰신고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피해의 심각성이다. 피해의 심각성은 신고의 비용-편익분석 측면에서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 피해액이 크거나 신체피해의 정도가 심할수록 해당사건을 신고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이해된다. 이는 심각한 사건의 경우 신고로 인한 편익, 즉 피해보상 등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범죄유형에 따라 신체피해의 정도 또는 피해액수, 범행에 가담한 가해자의 수 등으로 측정된 사건의 심각성은 다양한 연구에서 그 영향력이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났다(Felson, Messner, Hskin, & Deane, 2002; Goudriann et al., 2004; Skogan, 1976, 1984; Zhang, Messner & Liu, 2007). 이와 함께, 피해사건의 유형 또한 피해자의 신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산범죄피해의 경우 피해대상 물품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보상이나 보험금 신청 등 신고로 인한 편익이 높다는 점에서 신고율이 높아진다는 특성이 있었다(Skogan, 1984).

선행연구에서는 규범적 관점에서 피해자의 범죄신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사건은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도발하는 등 사건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도 해당 사건은 경찰에 인지되어 공식적으로 처리되기 보다는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간에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는 경향도 있다(Greenberg & Ruback, 1992). 또한, 사건발생 장소 또한 규범적 관점에서 경찰신고여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직장이나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에의 신고에 앞서 직장 내 책임자나 상사, 선생님 등에게 먼저 보고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대표적이다(Lynch, 1987).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경찰신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실증연구 결과는 그러나 다소

비일관적이다. 아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에 비해 경찰에 신고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Block, 1974; Worrall & Peace, 1986; Braithwaite & Biles, 1980)가 있기도 하지만, 다른 연구들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범죄사건의 신고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Lizotte, 1985; Skogan, 1984; BJS, 1980, 1992). 이처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의 효과가 비일관되게 나타난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신고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일 수 있다. Kang과 Lynch(2014)의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해자 관계가 신고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생애주기(life stages)에 따라 가해자와의 관계가 신고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히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도 신고여부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 피해자가 남성보다, 연령이 높은 피해자가 어린 피해자에 비해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Baumer, 2002; Tarling & Morris, 2010; 탁종연·노성훈, 2009 등). 이 또한 규범적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는데, 연령이 높은 사람들과 여성의 경우, 젊은 층이나 남성에 비해 보다 전통적인 가치와 규범을 따르도록 사회화되었다(Zink, Regan, Jacobson, & Pabst, 2003)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신념이 피해자로서 범죄사실을 경찰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믿음을 강화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피해자의 신고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가운데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포함된다. 경찰 신뢰도가 높을수록 피해신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Goudriaan et al., 2004)는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범죄신고로 기대되는 이익(가해자의 검거 가능성 및 이로 인한 피해복구의 가능성)을 크게 평가한 결과로 볼 수도 있고 경찰 신뢰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범죄사건은 반드시 경찰에 인지되어야 한다는 신념이 강하다고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에 실시된 연구(Tarling & Morris, 2010; 탁종연, 2010)에서는 경찰 신뢰도가 피해신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결과들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처럼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과 피해사건 관련 특성에서 나아가 몇몇 선행연구들은 환경적 특성의 영향력을 살펴보기도 하였으나, 연구결과는 비일관적이다. 일부선행연구에서는 거주지역의 취약성 등 지역수준 변수가 범죄신고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난 반면(Baumer, 2002; Goudriaan, Wittebrood, and Nieuwbeerta, 2006), 이러한 지역수준 변수의 효과는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과 사건의 심각성을 통제한 경우에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도 있다(Bennett & Wiegand, 1994; Warner, 1992).

요약하면, 범죄피해의 경찰신고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신고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이는 반면, 피해자-가해자 관계와 지역수준의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는 비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범죄피해의 경찰신고 결정요인을 한국범죄피해조사 자료를 통해 재분석해보

고자 한다. 이를 통해, 범죄신고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가 한국의 범죄피해자들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고 선행연구에서 차용된 비용-편익분석과 규범적 관점이라는 두 가지 이론적 틀이 한국적 상황에서 얼마나 적실성을 갖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다년도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함으로써 단일년도 조사자료 활용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범죄피해조사의 통합적 혹은 종단적 활용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범죄피해자의 경찰신고 결정요인을 폭행사건과 절도사건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고자 하는데 구체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연구문제를 가진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차용된 비용-편익분석과 규범적 관점이라는 두 가지 이론적 틀이 한국범죄피해조사자를 분석하는 본 연구의 범죄피해자 신고결정요인을 설명하는가를 살펴본다, 특히, 폭행범죄와 절도범죄의 신고결정요인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다.

둘째, 낮은 피해율로 인해 단일년도 범죄피해조사자료의 낮은 활용가능성을 보완하는 한 방법으로 다년간의 범죄피해조사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는 방식을 탐색해 본다.

2. 연구방법

1) 분석자료와 연구대상

분석을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3차례(김은경·최수형·박정선, 2009; 김지선·홍영오, 2011; 김은경·황지태·황의갑·노성훈, 2013)에 걸쳐 실시된 범죄피해조사를 통합하여 활용한다. 발생빈도를 고려하여 개인대상 폭행과 절도를 그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해당 사건이 경찰에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사건을 분석단위로 구성하였다.

(1) 폭행 판별식 비교와 분석대상 선정

자료의 통합을 위해 먼저 연도별 범죄피해조사 보고서(김은경·최수형·박정선, 2009; 김지선·홍영오, 2011; 김은경·황지태·황의갑·노성훈, 2013)에 나타난 범죄유형 판별식을 비교하여 분석대상

범죄유형을 선정하였다.

폭행사건의 경우, 연도별 범죄피해조사에서 사용한 판별식의 조건식의 구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그 내용면에서는 [폭행이 있었을 것, 신체공격 내용이 성폭력 피해를 포함하지 않을 것, 신체피해가 발생할 것, 그리고 탈취피해나 재산피해가 없을 것] 등의 네 가지 조건식 등을 만족하는 ‘상해 사건’과 ‘단순 폭행’을 포함한다는 면에서 동일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2008년과 2010년의 범죄피해조사에서 사용한 폭행 및 상해의 범죄판별식은 거의 동일하다고 판단될 만큼 유사하였다. 2012년 조사 판별식은 ‘상해’와 ‘단순폭행’을 각각 ‘상해 폭행’과 ‘무상해 폭행’으로 구분하여 판별식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폭행의 신체공격 없이 협박만 이루어진 사건을 무상해 폭행에 포함하고 있어 실제로는 ‘상해폭행’ 사건과 ‘무상해 폭행 + 단순협박’으로 판별식이 구성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2008년과 2012년은 ‘폭행’과 ‘상해’사건, 그리고 2012년은 ‘상해폭행’과 ‘단순협박을 제외한 무상해 폭행’ 사건을 통합하여 분석자료를 구성하였다. 즉, 강도 및 성폭력 범죄, 그리고 폭행이 없는 단순협박사건을 제외하고 개인에게 신체공격 또는 피해가 발생한 사건만을 폭행 및 상해를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2008년과 2010년, 2012년 각각 43건, 40건, 22건으로 구성된 전체 105건의 폭행 및 상해사건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범죄신고 결정요인을 분석자료를 구성하였다.

(2) 절도 판별식 비교와 분석대상 선정

같은 방식으로 절도사건의 연도별 판별식을 비교하였다. 먼저, 2008년 조사의 ‘개인절도’ 판별식은 [침입여부 없음, 몰래 가져감, 탈취피해 있음] 또는 [발생지역 잘 모름, 몰래 가져감, 탈취피해 있음]으로 구성되어 주거침입절도를 제외하고 가해자가 몰래 가져간 탈취피해 사건을 일반절도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범죄피해조사에서도 2008년과 유사하게 [몰래 가져감, 탈취피해 있음]을 일반절도의 판별식으로 구성하고 주거침입 절도는 제외하였다. 2012년의 일반절도 판별식은 주거침입절도에도 해당되지 않고 소매치기절도에도 해당되지 않는 기타의 절도행위들을 포함한다.

소매치기의 경우, 2012년에는 별도의 판별식 [주거지 발생이 아님, 신체공격이나 협박 없음, 접촉탈취 있음]으로 구성하였다. 즉, 소매치기의 경우에는 2008년과 2010년의 범죄피해조사에서는 일반절도에 포함되나 2012년 조사에서는 일반절도에 포함되지 않은 차이가 있다. 자동차 절도의 경우, 2008년 피해조사에서는 개인대상 절도범죄피해로, 2010년 조사에서는 가구대상 범죄유형으로, 그리고 2012년의 범죄피해조사에서는 일반절도로 분류된 특성이 있어, 연도별 차이가 있었다. 자동차를 가구의 소유물로 인식하여 가구 범죄피해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피해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절도의 범위에서 자동차 절도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요약하면, 2008년과 2010년, 2012년의 절도사건을 통합하여 분석하기 위해 2008년의 일반절도 사건 가운데 자동차절도를 제외한 일반절도, 2010년의 일반절도 사건, 그리고 2012년의 자동차

절도를 제외한 일반절도와 소매치기 절도를 포함하여 절도의 분석대상을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주거침입절도와 자동차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절도와 소매치기를 포함하는 보다 일관된 형태로 일반절도의 분석대상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2008년과 2010년, 2012년 각각 320건, 270건, 170건의 절도사건을 포함하는 760건의 절도사건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범죄신고 결정요인을 분석자료를 구성하였다.

2) 주요변인과 자료분석 방법

최종적으로 분석을 위해 구성된 폭행 105건과 절도 760건에 대한 기술통계는 아래 <표 1>과 같다. 연구의 종속변수는 피해자의 경찰신고 여부로, 피해자 본인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경우(변수값=1)와 그렇지 않은 경우(변수값=0)으로 나뉜 이분형 변수로 구성하였다. 폭행사건의 신고율은 34%로 105건 가운데 34건이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고 절도사건 신고율은 13%로 760건 가운데 96건(12.6%)만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경찰신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독립변수는 범죄의 심각성이다. 폭행사건의 심각성은 가해자가 칼 등의 무기나 위험물건 사용여부, 2인 이상의 가해자에 의한 사건인지, 그리고 상해가 발생하거나 심한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등으로 측정하였다. 폭행사건의 무기사용 비율은 23%였고, 가해자가 2인 이상인 경우가 19%, 그리고 심한 폭행인 경우가 54%로 나타났다. 절도사건의 심각성은 피해액으로 측정하였는데 피해액은 3천원 부터 1,400만 원까지로 평균 피해액은 31만 2,600원이었는데, 피해액의 분포의 왜도값이 너무 높아 분석에서는 로그값을 사용하였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해당 사건의 경찰신고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여부에 대한 규범적 믿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상과 선행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변수를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친척이나 가족을 포함한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이항분포로 구성하였고, 폭행사건의 51%가 아는 사람에 의한 범행이었다. 이와 함께 규범적 관념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행연구에서 신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관련 변수들을 포함하였다. 폭행과 절도 각각 50%와 52%가 여성피해자였으며, 연령대는 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의 경우 폭행사건의 39%와 절도의 55%에서 피해자가 기혼자였으며, 폭행과 절도 각각 38%, 37%에서 피해자가 대학교육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수준은 월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미만, 300-500만 원 미만, 500-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경찰의 검거능력에 대한 평가를 ‘우리 동네 경찰은 범죄사건을 신고하면 범인을 반드시 잡아줄 것이다’라는 5점 척도 문항에 대한 응답 가운데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는 응답을 검거신뢰도=1로 코딩하고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0으로 코딩, 비교적 강한 검거신뢰를 보이는 경우를 구분하는 이분형 변수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경찰의 검거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경우에 피해사건 신고로 발생하는 이익이 높은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앞서 폭행과 절도 각각에 대해 종속변수인 신고여부와 각 결정요인들 간의 이변량관계를 검증하였다. 폭행의 경우, 혼인상태와 심한폭행, 그리고 가해자 2인 이상의 변수들이 범죄신고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고, 절도의 경우, 연령대와 혼인상태, 발생장소, 피해액이 범죄신고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표 생략).

<표 1> 기술통계

변수		최소-최대	폭행 평균 (SD)	절도 평균 (SD)
신고여부	신고 안함=0 신고 함=1	0-1	.32 (.47)	.13 (.33)
성별	남성=0 여성=1	0-1	.50 (.50)	.52 (.50)
연령대	10 대=1 ~ 60대 이상 =6	1-6	3.09 (1.63)	3.08 (1.55)
결혼상태	배우자 없음=0 배우자 있음=1	0-1	.39 (.49)	.55 (.50)
교육수준	대학교육 무경험=0 대학교육 경험=1	0-1	.38 (.49)	.37 (.48)
가구 소득수준	월 100만원 미만=1 ~ 월 1000만원 이상=6	1-6	3.15 (1.43)	3.31 (1.20)
무기·위험물건 사용	무기 사용 않음=0 무기 사용함=1	0-1	.23 (.42)	-
가해자 2인 이상	단독/모르겠음=0 2인 이상=1	0-1	.19 (.39)	-
아는 가해자	모르는사람/모르겠음=0 아는 사람=1	0-1	.51 (.50)	-
심한 폭행	심한폭행 아님=0 심한 폭행, 상해=1	0-1	.54 (.50)	-
피해액	단위: 만원	.30-1400	-	31.26 (80.74)
검거 신뢰	검거신뢰 높음=1 낮음/보통=0	0-1	.20 (.40)	.17 (.38)
Total N			105 건	760 건

IV 연구결과

1. 폭행 범죄피해 신고결정요인

폭행 및 상해사건의 범죄피해 신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먼저 분석모델 1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범죄사건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변수들 가운데 가해자 수만이 경찰신고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해자가 명확하게 2인 이상인 폭행사건은, 단독 가해자 및 가해자의 수가 확실하지 않은 사건과 비교하여 피해자의 신고확률이 5.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건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다른 변수들, 즉 가해자의 무기사용 여부 및 심한폭행으로 인한 상해 발생여부 등은 피해신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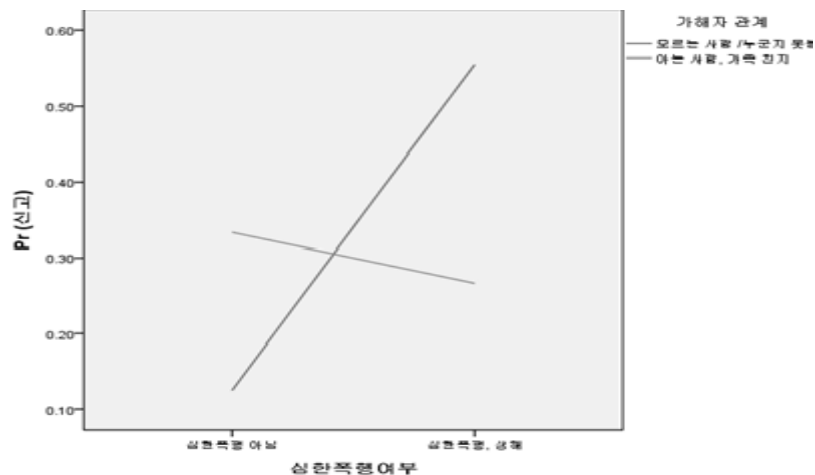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피해신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찰의 검거신뢰, 성별, 연령, 가구소득과 교육수준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기혼자들은 미혼자 및 사별, 이혼 등으로 현재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피해신고 확률이 약 4.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을 위한 자료가 3차년도 범죄피해조사자료를 통합하여 구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조사자료의 년도를 통제변수로 분석에 포함하였고 이러한 조사년도 변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2> 폭행사건의 경찰신고 결정요인

	분석 모델 1		분석 모델 2	
	b(s.e.)	Exp.(b)	b(s.e.)	Exp.(b)
성별 (여성)	.277 (.489)	1.320	.084 (.515)	1.087
연령대	-.158 (.235)	.854	-.220 (.251)	.803
혼인상태 (기혼)	1.543 (.733)	4.677*	1.840 (.802)	6.298*
가구소득	.031 (.187)	1.031	.005 (.200)	1.005
대학교육 경험	.439 (.535)	1.551	.378 (.568)	1.460
무기사용	.695 (.581)	2.003	.797 (.621)	2.220
심한폭행	.696 (.503)	2.006	2.164 (.813)	8.702**
아는 가해자	.005 (.494)	1.006	1.619 (.838)	5.050
가해자 2인 이상	1.677 (.641)	5.350**	1.375 (.675)	3.956*
검거 신뢰	-.908 (.681)	.403	-1.192 (.697)	.304
년도구분(2010)	.394 (.582)	1.483	.284 (.608)	1.328
년도구분(2012)	.515 (.687)	1.674	.566 (.719)	1.761
interaction				
심한폭행×아는 가해자	-	-	-2.805 (1.104)	.061*
상수항	-4.786 (1.578)	.008**	-5.355 (1.680)	.005
chi-square	21.821*		28.913 **	
-2Log 우도	110.418		103.325	
Nagelkerke R 제곱	.262		.336	

*** p< 0.001, ** p<0.01, *p<0.05

<표 2>의 분석 모델 1에서 나타난 결과는 기존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검증된 범죄 심각성이 피해신고에 유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피해자-가해자 관계 변수의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등이 범죄신고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는 다수 선행연구결과들과 차이가 있다. 특히, 피해자-가해자의 관계의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범죄심각성이나 다른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Kang & Lynch, 2014)을 고려하여 상호작용효과를 포함하는 분석모형을 구성하였다(표2의 분석모델 2). 그 결과 피해자-가해자 관계 변수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유의하게 신고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으나, 폭행의 심각성이 피해사실 신고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르는 사람에 의한 심한 폭행은 피해자가 신고할 확률이 높아지는 반면 아는 사람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신고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고). 이는 폭행피해의 신고결정 요인을 분석할 때 피-가해자 관계와 피해 심각성이 갖는 관련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것이다.



[그림 1] 폭행 심각성 정도별 피-가해자 관계의 신고 예측확률

2. 절도 범죄피해 신고결정요인

절도사건의 범죄피해 신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다년도 범죄 피해조사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와 연도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통합자료와 연도별로 구분된 자료의 비교분석을 통해 자료통합의 타당성과 통합분석의 안정성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폭행사건과 달리 절도사건의 경우 연도별 사건수가 많아 구분하여 분석해보는 것이 가능하였다.

먼저, 통합모델, 즉 다년간의 피해조사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표 3>의 모델1: 통합모델)를 살펴보면, 연령대와 피해액, 그리고 발생장소가 유의하게 피해자의 경찰신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절도사건을 경찰에 신고할 확률이 높았고, 피해액(로그화된 값)에 따라 절도사건의 신고확률 또한 높아졌다. 발생장소를 집, 주택가, 학교 및 직장, 기타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집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의 신고확률이 기타 다른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과 비교하여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가 심각할수록 피해자의 비용-편익분석에 영향을 미쳐 신고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연령대에 따른 규범적 관념의 차이가 신고여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집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의 경우 이를 사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야 한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절도사건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다시 분석해 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3>의 모델 2와 같다. 이러한 연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통합모델과 비교해보면, 범죄심각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피해액 변수는 년도별 모델과 통합모델에서 그 영향력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대의 영향력은 2008년과 2010년 자료를 분석한 모델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고, 혼인상태 변수는 2012년 자료를 분석한 모델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나, 통합모델과 차이가 있었다. 또한, 절도사건의 발생장소가 학교 및 직장인 경우에는 기타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에 비해 신고확률이 높았는데, 이는 2012년 자료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경찰에 대한 검거신뢰도가 높은 경우 오히려 절도사건 신고확률이 낮아진다는 점은 2010년 자료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통합모델과 연도별 구분모델에서 유의한 변수의 종류와 그 영향력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의미에서 연도별 자료의 통합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나, 아쉽게도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다. 다만, 선행연구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난 범죄신고 여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범죄심각성과 피해자의 연령, 그리고 발생장소의 경우에는 비교적 일관되게 그 영향력이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결과라 생각된다.

<표 3> 절도사건의 경찰신고 결정요인

	모델 1: 통합 모델		모델 2: 연도별 구분 모델					
			2008		2010		2012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성별 (여성)	.311 (.269)	1.365	.571 (.473)	1.769	-.285 (.478)	.752	1.130 (.623)	3.096
연령대	.385 (.118)	1.470**	.590 (.214)	1.804**	.483 (.190)	1.621*	-.054 (.306)	.948
혼인 상태	-.047 (.338)	.954	-.248 (.611)	.780	-1.048 (.562)	.351	2.336 (.941)	10.341*
가구 소득	.002 (.115)	1.002	-.034 (.187)	.967	-.030 (.204)	.971	-.155 (.275)	.856
대학 교육	.382 (.289)	1.465	.930 (.562)	2.535	-.147 (.517)	.863	.841 (.641)	2.319
피해액 logged	2.330 (.292)	10.273***	2.774 (.527)	16.026***	2.271 (.598)	9.690***	3.561 (.823)	35.211***

	모델 1: 통합 모델		모델 2: 연도별 구분 모델					
			2008		2010		2012	
발생지: 집 ^a	-1.321 (.506)	.267**	-1.780 (.835)	.169*	-.792 (.852)	.453	-2.363 (1.208)	.094*
발생지:주택가	.103 (.319)	1.109	-.764 (.552)	.466	.679 (.631)	1.971	.582 (.718)	1.790
발생지:학교/직장	.384 (.371)	1.469	-.522 (.628)	.593	.487 (.628)	1.627	2.462 (1.083)	11.730*
검거 신뢰	-.681 (.374)	.506	-.120 (.641)	.887	-2.176 (.841)	.113*	-.070 (.782)	.933
상수항	-6.462 (.772)	.002***	-7.744 (1.431)	.000***	-5.367 (1.326)	.005***	-9.241 (2.227)	.001***
chi-square	128.878***		70.317***		39.778***		51.229***	
-2 Log 우도	391.444		139.598		129.755		86.344	
Nagelkerke R 제곱	.324		.422		.301		.483	

*** p< 0.001, ** p<0.01, *p<0.05, ^a발생장소(기타) 참조범주.

V 논의

본 연구는 개인의 폭행과 절도사건에서 범죄피해 신고결정 요인을 분석해보고, 한국범죄피해조사원의 낮은 피해율을 고려하여 다년간의 범죄피해조사를 통합하여 분석해보는 방식을 시도해 보는 탐색적 연구이다. 연구결과, 폭행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 2인 이상인 사건으로 측정한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혼인상태만이 유의하게 신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폭행피해의 심각성은 독립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폭행의 심각성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리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피해액과 발생장소, 피해자의 연령이 신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영향요인은 연도별 분석결과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피해액이 커질수록 신고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은 연도별 분석과 통합분석 모델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범죄사건의 신고여부 결정요인에 대해 다음의 몇 가지를 시사한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의 심각성은 범죄피해 신고여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밝혔는데, 이는 한국범죄피해조사의 폭행사건과 절도사건 신고요인 분석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심각한 사건일수록 신고로 인해 기대되는 이득이 더 크다는 이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편익분석적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피해자들이 범죄로 인한 손실과 피해의 정도가 큰 사건일수록 경찰에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나 믿음이 강할 것이라는 예상에서 규범적 틀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둘째, 한국범죄피해조사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 성별의 영향력이 선행연구결과들과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신고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성별의 유의한 영향력은 선행연구에서도 범죄유형에 상관없이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났으나(Baumer, 2010; Gourdriann et al., 2004 등), 한국범죄피해조사를 분석한 본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신고가능성에는 차이가 없었다. 반면, 연령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Baumer, 2002; Tarling & Morris, 2010; 탁종연·노성훈, 2009 등). 여성과 연령이 높은 사람들이 남성이나 젊은층에 비해 전통적인 가치와 규범을 잘 따르도록 사회화되어 연령과 성별이 범죄사실 신고여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범적 관점에서 이해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하면(Zink, Regan, Jacobson, & Pabst, 2003), 성별에 따른 규범적 관념이 더 이상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연령별 규범적 관념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여성의 사회진출과 성인식에 대한 인식 변화 등과 유사하게 성별에 따른 사회화의 차이 및 이로 인한 규범적 관념의 차이는 더 이상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폭행사건의 신고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가해자 관계 변수는 독립적으로 분석모델에 넣었을 때와 두 변수의 상호작용을 가정하고 결합하여 분석에 포함하였을 때 그 결과가 달라졌다. 이는 피해의 심각성이 신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단순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특히, 피해심각성이 가해자와의 관계와 교차상호작용을 통해 신고확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신고여부의 결정요인을 분석할 때 피해의 심각성이 피해자-가해자 관계와 갖는 관련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것이다.

폭행사건과 절도사건의 신고결정요인을 비교분석하고 선행연구의 이론적 틀을 적용해 보는 것과 함께 이번 연구에서는 피해조사자료의 통합적 활용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선행연구들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이 크다고 나타난 피해 심각성은 통합모델의 결과와 연도별 분석모델에서 그 영향력이 일관되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절도사건에서 피해액이 커질수록 신고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은 통합모델과 연도별 분석모델에서 일관된 경향을 보였다. 통합모델과 연도별 구분모델에서 유의한 변수의 종류와 그 영향력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의미에서 연도별 자료의 통합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나, 아쉽게도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 변수들이 있어, 통합분석에 주의를 요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다년간의 자료를 통합하여도 여전히 낮은 피해율로 인해 분석을 위한 충분한 사례수가 확보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여전히 남는다. 이는 분석모델이 피해신고 결정요인의 주요 변수들을 모두 포함하지 못해 그 완전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후행 연구에서 범죄심각성 및 피해자-가해자 관계, 발생장소 등 주요변수를 더욱 세분화하여 살펴보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환경변수를 포함하여 보다 섬세하게 분석모형을 재분석해보는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국내자료〉

- 김은경·최수형·박정선 (2009).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V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황지태·황의갑·노성훈 (2013).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홍영오 (2011). 전국범죄피해조사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노성훈 (2012). 이민지위와 범죄심각성이 피해신고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89:285-317.
- 탁종연·노성훈 (2009). 인종이 범죄피해신고에 미치는 영향: 동양계 미국인의 강도와 폭행피해 신고경향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8:41-70.
- 탁종연 (2010). 피해신고율 결정 요인분석: 절도와 사기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83:53-75.

〈국외자료〉

- Baumer, E. P. (2002). Neighborhood disadvantage and police notification by victims of violence. *Criminology*, 40, 579-616.
- Bennett, R. R. & Wiegand, R. B. (1994). Observations on crime reporting in a developing nation. *Criminology*, 32, 135-148.
- Black, D. (1976). *The Behavior of Law*. New York: Academic Press.
- Block, R. (1974). Why notify the police? The victim's decision to notify the police of an assault. *Criminology*, 11, 555-569.
- Braithwaite, J., & Biles, D. (1980). Empirical verification and Black's *The behavior of law*.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5, 334-338.
-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BJS). (1980). *Intimate Victims: A study of Violence among Friends and Relative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BJS). (1992). *Criminal Victimization in the United States, 1991*.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 Felson, R. B., Messner, S. F., Hoskin, A. W., & Deane, G. (2002). Reasons for reporting and not reporting domestic violence to the police. *Criminology*, 40(3), 617-647.
- Goudriaan, H., Lynch, J. P., & Nieuwbeerta, P. (2004). Reporting to the police in Western nations: A theoret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social context. *Justice Quarterly*, 21(4), 933-969.
- Greenberg, M. S., & Ruback, R. B. (1992). *After the crime: Victim decision making*. New York: Plenum.
- Kang, J. Lynch, J. P. (2014). Calling the police in instances of family violence: Effects of victim-offender relationship and life stages. *Crime and Delinquency*, 60(1), 34-59.
- Lizotte, A. (1985). The Uniqueness of Rape: Reporting Assaultive Violence to the Police. *Crime and*

- Delinquency*, 31, 169-190.
- Lynch, J. P. (1987). Routine Activity and Victimization at Work.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3, 283-300.
- Skogan, W. G. (1976). Citizen reporting of crime: Some national panel data. *Criminology*, 13, 535-549.
- Skogan, W. (1984). Reporting crimes to the police: The status of world research.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1, 113-137.
- Tarling, R., & Morris, K. (2010). Reporting Crime to the Polic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50, 474-490.
- Warner, B. D. (1992). *The reporting of crime: A missing link in conflict theory*. In Social Threat and Social Control, ed. Allen E. Liska.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Worrall, A., & Pease, K. (1986). Personal crimes against women: Evidence from the 1982 British Crime Survey. *Howard Journal*, 25, 118-124.
- Zhang, L., Messner, S. F., Liu, J. (2007). An exploration of the determinants of crime reporting to the police in the city of Tianjin, China. *Criminology*, 45(4), 959-984.
- Zink, T., Regan, S., Jacobson, C. J., & Pabst, S. (2003). Cohort, period, and aging effects: A qualitative study of older women's reasons for remaining in abusive relationships. *Violence Against Women*, 9, 1429-1441.

3부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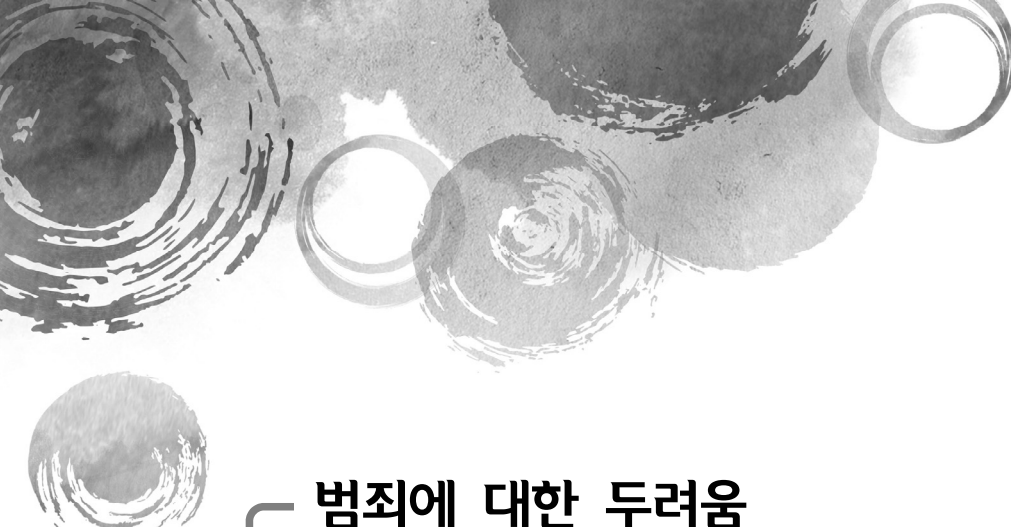
범죄에 대한 두려움: 지역적 특성에 따른 다층모형 분석

• • • 발표자(Vortrag)

장 안 식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사회학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지역적 특성에 따른 다층모형 분석

I 들어가는 말

일반적인 의미에서 두려움이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서워하며 걱정하는 것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 또한 범죄와 관련해서 사람에게 심리적 불편함을 초래하는 반응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연구에서 초기의 접근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개인이 범죄피해자가 될 확률과 동일시하여 정의하기도 하였다(Furstenberg, 1971). 하지만, 범죄의 두려움이 단순히 범죄피해자가 될 확률에 대한 평가일 수 없으며(Rader, 2004), 이후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범죄와 관련된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으로 정의되어왔다(Warr, 1983; Reber, 1985; Ferraro, 1995).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개인적 요인과 지역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적인 설명방식은 주로 피해경험이나 개인의 취약성에 근거한 설명방식을 취한다. 취약성이나 직/간접적인 범죄피해의 결과로서 범죄의 두려움을 설명하였던 이전의 시도와는 반대로 지역적 특성으로 설명하는 방식은 보다 더 사회학적 전통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적 특성을 사용하는 설명방식은 개인들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반응들을 그들이 매일 매일을 살아야만 하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설명하고자 한다(Holloway and Jefferson, 1997; Girling, Loader, and Sparks, 2000; Jackson, 2006). 즉, 이러한 설명방식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개인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있어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렇다면, 지역의 맥락적 효과는 어떻게 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줄 것인가? 개인이 느끼는 범죄의 두려움을 보다 광범위한 지역적 맥락으로 넓히는 연구들은 대개가 범죄의 두려움이나 근심걱정 등과 같은 불안 등이 보다 광범위한 지역적 맥락 하에서 발생하는 범죄활동의 산물인 것으로 판단한다(Ferraro, 1995; Holloway and Jefferson, 1997). 구체적으로 지역적 단위의 요인이 어떻게 개인들이 경험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무질서라든지, 이웃의 통합이라든지, 혹은 공식적인 사회통제의 영향 하에서 파악할 수 있다. 무질서모델은 개인에게 지각되는

물리적, 사회적 무질서가 범죄의 두려움을 증가시킨다는 것이고, 이웃통합모델은 이웃지역의 결속과 상호신뢰가 존재한다면 지역의 두려움은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식적 사회통제 모델에서는 순찰 중인 경찰을 자주 목격하거나 경찰활동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경우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낮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지금까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연구는 개인적인 차원의 설명과 그 차이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혹은 개인적 차원과 구분되는 지역적 차원의 특성들이 어떻게 개인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차별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피해경험과 취약성과 같은 개인적 차원의 설명과 지역적/구조적 특성에 근거한 설명방식은 서로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관계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강화시키는 지역적 특성들은 개인의 특성을 강화시켜 두려움을 증폭시킬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키는 지역적 특성은 개인적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강화되는 것을 완충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적 특성의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미비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들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지역사회의 구조 속에 배태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 위에서 발현된다는 전제하에서, 개인적 특성(피해경험과 취약성)과 지역적 특성은 어떻게 개인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주며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지 살펴보고자한다.

오랜 기간 동안 범죄학자들은 지역의 특성이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개인들이 구체적인 범죄피해의 두려움을 혹은 막연한 두려움을 만들어내는데 있어 중요한 변인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중요성과 그 함의에도 불구하고 실증적 결과는 대체로 약하고 일관적이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즉, 지금까지의 지역맥락적 효과의 분석이 미미하거나 일관적이지 못했던 이유는 방법론적 한계에 기인한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론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시도로서 최근에는 다층모형을 이용한 지역적 맥락효과 분석을 시행하고 있다(Franklin et al., 2008; Miethe and McDowall, 1993; Morenoff et al., 2001; Sampson et al., 1997; Taylor, 2001; Rountree and Land, 1996).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의 특성들을 포괄하는 전국 단위의 데이터는 기존의 이론적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의 구조적 특성들과 지역 무질서의 정도가 개인들이 느끼는 두려움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와 범죄의 두려움을 느끼는데 있어 나타나는 개인 간 차이가 지역의 특성들에 의해서 조절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II 이론적 논의

1. 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

1) 피해경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설명하는 가장 단순한 설명방식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범죄와 범죄피해에 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의 결과로 간주하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그들의 합리적 판단의 결과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개인적인/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범죄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스스로 추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피해경험 관점이다. 이와 같이 범죄의 두려움을 설명하고자 했던 초기의 시도는 개인들의 피해 경험에 기초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더 강하게 느낀다면, 그 이유는 그들이 겪은 피해경험의 결과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범죄피해를 당했던 이들이 다른 이들에 비해서 범죄 피해에 대해서 보다 더 불안해하는 이유는 그들이 겪은 피해경험과 그에 따른 높은 위험 인지라고 할 수 있다(Lewis and Salem, 1981).

피해경험의 논의를 지지하는 많은 연구들은 범죄피해(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든)를 경험한 개인들일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Balkin, 1979; Liska et al., 1988; Skogan, 1986; 박철현, 2012; 장안식 외, 2011). 직접 피해경험이 범죄를 더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연구결과들은 있었지만(Skogan, 1986; Stafford and Galle, 1984; Liska et al., 1988; Covington and Taylor, 1991; Hough, 1995; Keane, 1995; McCoy et al., 1996; Kury and Ferdinand, 1998; Rountree, 1998), 두려움과 실제 범죄의 수준과 범죄피해경험 간의 약한 상관관계 때문에 소위 말하는 “두려움의 역설”—높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범죄 피해자가 될 확률이 낮은 부류의 사람들인—의 등장으로 인해 범죄 피해경험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높인다는 설명은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였다(Conklin, 1975; DuBow et al., 1979; Hale, 1996).

피해경험적 관점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범죄의 두려움이 직접적인 피해경험의 결과라는 사실을 일관성 있게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과 범죄의 두려움이 피해경험의 산물이지만, 왜 두려움을 가장 높게 느끼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낮은 피해를 나타내는 집단인지를 설명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요약하면, 피해경험적 접근은 직접적인 피해경험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경험까지 포괄하여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이건 간접적인 노출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데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피해경험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여전히 일관적이지 못하고(Gray et al., 2008), 또한 개인의 주변 환경이나 다른 요인들이 범죄에 대한 개인적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취약성 관점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논의에서 또 다른 개인적 차원의 설명방식은 취약성 관점이다. 취약성의 관점에 의하면, 두려움은 위협으로서 피해 위험에 대한 노출, 위협을 인지하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기대하는 것, 그리고 위협을 경감하거나 피할 수 없는 무력감(Killias, 1990; Killias and Clerici, 2000)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요소들은 각각 위협, 취약성, 무력감 등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 취약성(vulnerability)이라는 개념으로 지칭할 수 있다(Skogan and Maxfield, 1981).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피해의 확률이 낮은 사람들이라는 소위 ‘두려움의 역설’에 대한 설명의 일환으로 취약성 가설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취약성은 일종의 신념이고, 사람들이 미래의 불행이나 위험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막지 못할 것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Perloff, 1983). 그러므로 취약성 관점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잠재적 피해자로 가정할 때 더 두려워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자기 자신이 범죄의 위협에 취약하다는 것을 개념화한 인지된 개인적 취약성은 자기 자신을 쉬운 먹잇감(범죄 피해자)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Killias and Clerici, 2000). 즉, 취약성은 미래에 일어날 위협에 얼마나 노출이 되어 있는가와 범죄피해의 발생과 결과에 대한 민감성을 나타낸다. 취약성의 개념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몇몇 사회 인구학적 집단들에 몰려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특별히 유용했다(Baumer, 1985; Garofalo, 1981; Skogan and Maxfield, 1981).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 취약성에 대한 설명으로, 킬리아스(Killias, 1990)는 취약성의 창발은 세 가지 요소들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 가지의 요소는 1) 위협에 대한 노출가능성(exposure to risk), 2) 통제의 상실(the loss of control - 효과적인 방어기제, 보호 장치들의 부재 등), 3) 심각한 결과(손상)에 대한 예상(the anticipation of serious consequences)이다. 킬리아스(Killias, 1990)에 의하면,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키는 취약성을 만들어낸다. 취약성에 근거한 설명은 개인이 범죄피해에 대해서 취약성을 인지할 때 두려움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2. 지역적 특성과 범죄의 두려움

1) 지역사회 무질서의 상징적 신호들

지역의 사회구조적 특성들이 개인들이 가지는 불안감, 즉 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은 상식에 가깝다. 하지만, 이러한 상식적인 주장에 대한 연구는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많은 연구자들은 지역 무질서의 가시성 혹은 무질서의 상징들이 개인들이 가지는 위협에 대한 지각(인지)-범죄의 두려움을 왜곡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증폭시키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헌터(Hunter, 1978)는 무질서의 가시적 신호들이 실제로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의 무질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가시적 신호들은 실제로 일어나는 범죄보다 더 가시적이고 지역구성원들이 더 가깝게 체감할 수 있는 경험들이기 때문이다(Skogan, 1996).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적 특성을 탐구했던 많은 연구들은 무질서와 같은 상징적 신호들이 어떻게 개인들의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지를 탐구해왔다(Innes, 2004, Sampson and Raudenbush, 2004; Skogan and Maxfield, 1981; Taylor, 2001; Wilson and Kelling, 1982; Wyant, 2008). 지역사회의 상징적 신호들은 사회 질서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회통제 역량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개인들로 하여금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보다 더 강하게 느끼게 한다. 지역의 무질서가 범죄의 두려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많은 경험적 지지를 받았다(Lewis and Salem, 1986; Taylor and Hale, 1986; Covington and Taylor, 1991; Bursik and Grasmick, 1993; Box et al., 1998; Markowitz, 2001; Robinson et al., 2003; Taylor, 2001; Wyant, 2008). 하지만, 범죄와 지역의 무질서 간의 관계는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고(Harcourt, 1998; 2001), 지역사회의 무질서가 범죄의 증가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연구 또한 있었다(Taylor, 2000).

2) 지역사회의 사회적 관계: 집합효율성

1980년대 사회해체이론의 설명방식을 새롭게 구현하려는 새로운 사회생태학적 시도들은 공통적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관계의 정도, 지역의 비공식적 통제의 수준, 혹은 집합효율성 등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을 견지했다(Henry and Lukas, 2009). 이러한 측면에서, 샘슨과 윌슨(Sampson and Wilson, 1995)은 지역사회의 통제 역량의 붕괴가 범죄성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샘슨(Sampson et al., 1997)은 동료들과 이러한 논지를 더욱 확장시켰는데, 사회해체의 효과가 지역의 집합효율성에 의해서 매개되어질 수 있음을 밝혔다. 집합효율성은 지역 사회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 청소년(아이)들의 생활에 개입하려는 의지, 그리고 공공질서의 유지 노력 등으로 구성된다(Cancino, 2005; Gibson et al., 2002). 다시 말해서, 집합효율성은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서 벌어지는 비공식적 통제에 대한 상호 기대감과 지역의 거주민들 간에 존재하는 상호 신뢰와 부조를 바탕으로 하는 일종의 지역적 응집력이라고 할 수 있다(Sampson et al., 1997). 즉, 쇼와 맥케이의 사회해체이론이 통제의 현현으로써 공식적인 사회조직을 상징하였다면, 지역의 집합효율성 개념은 지역사회의 상호부조와 신뢰라는 개념을 사회통제의 한 차원으로 추가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집합효율성은 사회해체와 반대쌍이 되는 개념이고 사회자본(social capital)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Taylor, 2001).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의 유대란 측면에서, 로스와 장(Ross and Jang, 2000)은 지역 내의 비공식적 유대들이 두려움과 불신에 영향을 주는 무질서 효과를 완충한다는 것을 밝혔다. 즉,

서로 신뢰할 수 있고 공동체/지역사회의 효율성이 높으면 사람들은 위험을 낮게 인식한다. 그러나 빌라리얼과 실바(Villarreal and Silva, 2006)의 연구를 보면, 지역 사회 유대는 오히려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코빙톤과 테일러(Covington and Taylor, 1991)는 사회유대가 오히려 두려움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빌라리얼과 실바(Villarreal and Silva, 2006)는 높은 사회적 결집과 유대를 보이는 지역에서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즉, 지역성원들이 잦은 접촉을 통해서 범죄피해를 간접적으로 더 자주 접하기 때문에 간접피해경험의 효과를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비공식통제는 지역사회(공동체)가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행사할 수 있느냐하는 사회통제 역량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그것에 의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간접적으로 통제되는가와 관련이 있다. 버식과 그라스믹(Bursik and Grasmick, 1993)에 의하면, 개인들의 범죄의 두려움을 억제하는 기제는 그들이 느끼는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역량에 달려 있다. 즉, 비공식적 통제는 지역 구성원들이 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범죄나 일탈행위를 예방하는 것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Silver and Miller, 2004). 지역사회의 거주자들이 자신의 지역사회를 통제할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의 중요성은 이제까지의 연구들에서 많이 거론되어져 왔다(Bursik, 1988; Bursik and Grasmick, 1993; Sampson and Raudenbush, 1999). 많은 선행 연구들은 비공식적 통제와 공식적 사회통제 둘 다 공히 개인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부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한다(Gibson et al., 2002; Taylor, 2002; Renauer, 2007). 또한, 맥가렐과 동료들은(McGarrell et al., 1997)은 비공식적 통제에 대한 개인들의 인지가 범죄의 두려움을 감소시키기는 하지만 그러한 효과가 주로 낮은 무질서 지역이나 중간 정도의 무질서를 나타내는 지역에서 조건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기도 한다. 하지만, 비공식적 통제가 범죄의 두려움에 별반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어왔다(Zhao et al., 2002). 전반적으로 많은 선행연구들은 비공식적 통제와 범죄의 두려움 간의 부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대해서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집합효율성을 구성하는 또 다른 축은 지역 구성원들이 얼마나 상부상조하는가를 측정하는 사회적 유대/결속이라고 할 수 있다(Gibson et al., 2002; Sampson et al., 1997). 지역적 수준에서 강한 사회적 연대를 나타내는 지역사회일수록 낮은 두려움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낸다는 결과도 있지만(Taylor et al., 1984), 개인 간의 교류를 바탕으로한 사회적 결속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범죄의 두려움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못함을 보고하기도 한다(Bursik and Grasmick, 1993). 김슨과 동료들(Gibson et al., 2002)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유대/결속이 높은 지역의 사람들은 대체로 높은 집합효율성을 나타내고 결과적으로 낮은 두려움을 지니게 된다고 보고한다.

3) 지역사회의 경찰만족도와 생활만족도

두려움의 감정은 공식적/비공식적인 사회통제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지역사회에 통제가 작동하고 있다면, 지역구성원들의 안전감은 생기게 마련이지만, 통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불안의 감정이 생기는 것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식적인 사회통제 기관으로서 경찰활동 또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찰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지역사회경찰활동이 경찰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그 결과 지역성원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낮춘다는 주장한다(Henig and Maxfield, 1978; Skogan, 1990).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경찰 활동이 활발하고 가시성이 높을 때 지역 성원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낮춘다는 것을 보여줬다(이성식, 2000; Zhao et al., 2002).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초점을 둔 많은 선행연구들은 지역사회의 경찰활동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범죄의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Brown and Wycoff, 1986; Williams and Pate, 1986; Johnston, 2001; Sampson, 2001).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경찰활동이 특별히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별 관련이 없다고 보고하기도 한다(Roh and Oliver, 2005).

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은 지역사회에 대해서 개인들이 가지는 만족도라고 할 수 있다(Ferguson and Mindel, 2007). 노인들의 범죄의 두려움에 대해서 지역만족도의 영향을 분석한 맥코이와 동료들(McCoy et al., 1996)의 연구에 의하면, 개인들이 평가하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범죄의 두려움을 예측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또한 여성들의 두려움에 대한 연구에선, 지역 만족도가 지역의 무질서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Alvi et al., 2001). 이러한 경험적 연구들이 증거하는 바는 개인들의 주관적 평가인 지역 만족도가 지역에서의 범죄의 가시성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지역의 무질서한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정도를 잘 반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보다 높은 수준의 지역 만족도는 낮은 수준의 범죄의 두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지역적 특성의 조절효과

지역구조적 특성이나 지역의 실제 범죄율, 무질서의 가시적 신호들이 범죄의 두려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효과 이외에도 지역의 효과들은 또한 개인적 수준의 효과들과 상호작용한다고 주장되어져왔다. 개인적 수준에서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개인들이 속해 있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특히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지역적 속성이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남녀 간의 차이처럼 상식적으로 인식되는 개인적 특성의 차이가 지역 수준의 특성에 따라서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적 맥락 효과(contextual interactions)의 관점에서, 맥가렐과 동료들은(McGarell et al., 1997) 범죄의 두려움에 있어서 개인 간의 차이의 크기가 지역의 무질서 수준에 따라 변하게 됨을 보여주었다. 지역의 무질서 수준을 고, 중, 저로 나눴으로서, 지역의 무질서

효과가 서로 다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무질서의 수준이 높지 않은 지역에서는 개인적 요인의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나지만, 무질서가 높은 지역에서는 개인적 요인의 효과가 괄목할 정도로 줄어들음을 보여주었다.

라운트리와 랜드(Rountree and Land, 1996)의 연구 또한 절도 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이전의 피해경험이라는 개인적 요인의 효과가 높은 무질서를 지닌 지역에서는 괄목할만하게 줄어드는 현상, 즉 개인의 이전 피해경험이라는 개인적 효과가 지역적 맥락에 의해서 조절되는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많은 선행연구들은 개인적 특성의 효과들이 지역적 특성의 맥락에 따라 범죄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화되거나 혹은 완충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국적 맥락에서 범죄의 두려움을 강화시키는 혹은 완화시키는 지역수준의 효과성에 대한 다수준적 연구는 있었지만(박정선·이성식, 2010), 지역적 특성의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미비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범죄피해조사는 일반인들이 경험한 범죄피해에 대한 설문조사로서 공식범죄통계에서 볼 수 없었던 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다(김준호·심영희·조정희, 1991). 본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3년도에 발표한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를 이용하였다.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는 조사시점 기준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의 일반조사구 중 보통조사구 및 아파트조사구의 모든 가구 및 만 14세 이상 가구원’으로 정의된다(김은경 외, 2013). 조사의 표본선정은 전국의 표본규모를 630개의 조사구로 결정한 후에 16개 시도 및 동부, 읍면 부를 고려한 25개 층으로 층화시킨 후 각 층별로 연령별 인구를 고려하여 비례배분한 후 확률비례통계 추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6300가구에 총 13,317명이 응답하였다. 가중치는 설계가중치, 무응답 조정가중치, 그리고 사후층화 가중치의 세 단계의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본 자료가 이전의 자료와 차별화되는 점은 다수준적(Multi-level)이라는 것이다. 이전의 대다수의 범죄피해조사 자료는 하나의 수준(uni-level)에 국한되어 있었고, 분석의 단위 또한 개인 수준이나 혹은 집단/지역 수준에 국한되어 있었다. 연구 자료의 특성이 다수준적(multi level) 특성에도 불구하고 수준에 대한 고려 없는 분석방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Raudenbush and Bryk, 2002), 본 연구의 다수준적 자료는 범죄의 두려움이 단지 개인적 수준의 특성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같은 거시적 수준의 특성에 의해서도 설명되어질 수 있다는 통합론적 관점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변인의 측정

1) 범죄에 대한 두려움: 구체적 두려움

개인들이 일반적인 안전에 대한 위험평가로서 범죄피해자가 될 개연성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을 추상적인 두려움(*abstract/general/formless fear*)으로 정의되고 구체적인 범죄를 상정하고 개인적인 수준에서 구체적인 피해위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을 구체적인 두려움(*specific/concrete fear*)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범죄로부터 파생되는 정서적 두려움과 다른 일반적인 두려움을 비교하면, 구체적인 두려움은 구체적인 범죄를 상정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위험을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측정의 측면에서 보면, 구체적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은 일반적인 안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정 범죄에 대한 개인적인 두려움의 감정을 보다 명확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한다(Warr and Stafford, 1983).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측정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정서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범죄를 상정하고 구체적인 범죄피해의 위험성/가능성을 걱정하고 그것으로 인해 파생되는 정서적인 두려움으로 정의한다. 구체적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여덟 가지의 구체적인 범죄 문항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는지를 측정하였다. 2012년도 형사정책연구원 범죄피해조사에서는 절도, 강도, 폭행, 사기, 성폭력, 기물파괴, 주거침입, 그리고 스토킹 등의 항목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염려)되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alpha=.943$).

2) 개인적 수준: 범죄피해와 취약성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은 개인적 수준의 요인과 지역적 수준의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개인적 수준의 요인들은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취약성을 나타낼 수 있는 변인들로 구성되었다. 개인적 수준의 요인 중 범죄피해경험은 지난 1년간 실제로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경험 유무로 구성되었다. 범죄피해경험은 지난 일년 동안 범죄피해의 경험 유무(1=있음, 0=없음)로 측정하였다. 취약성은 킬리야스(Killias, 1990)와 스코겐과 맥스필드(Skogan and Maxfield, 1981)의 논의를 바탕으로, 신체적, 사회적 취약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신체적 취약성은 성별, 연령대 등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독립변인으로 사용되는 개인적 특성 변인들은 성별(여성=1, 남성=0), 교육수준은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초대졸’, ‘대졸’, ‘대학원이상’ (0~6)으로 측정하였다. 취약성의 한 차원으로 위험인지(피해가능성)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범죄피해를 당할 소지가 높다’를 사용하였고,

피해심각성으로서의 취약성은 ‘내가 범죄피해를 당한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 결과가 더 심각하고 오래 지속될 것이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 지역적 특성: 지역 무질서, 지역유대, 비공식통제, 경찰만족도, 지역만족도

본 연구에서의 사회통제관련 지역적 특성 변인들은 지역 무질서, 사회적 유대, 비공식적 통제, 지역만족도, 그리고 지역사회의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 무질서는 범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상징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피해의 위험이 높다는 인식과 함께 두려움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제론적 관점에서 무질서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연구했던 이전의 연구를 바탕으로(Lewis and Salem, 1986; Taylor and Hale, 1986; Covington and Taylor, 1991), 지역사회에서의 무질서는 사회적 무질서와 물리적 무질서로 구분하여 분석할 것이다. 물리적 무질서는 ‘주변에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고 지저분했다’,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았다’, ‘주변에 방치된 차나 빈 건물이 많았다’등으로 측정하였다($\alpha=.738$). 사회적 무질서는 ‘기초 질서(무단횡단, 불법 주 정차 등)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무리지어 다니는 불량청소년들이 많았다’, 그리고 ‘큰 소리로 다투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로 측정하였다($\alpha=.758$).

집합효율성을 구성하는 두 축은 사회 유대와 비공식적 통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집합효율성은 지역 사회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 청소년(아이)들의 생활에 개입하려는 의지, 그리고 공공질서의 유지로 구성된다(Cancino, 2005; Gibson et al., 2002). 본 논문에서는 사회 구성원의 신뢰를 나타내는 지역적 유대(결속)을 측정하기 위해서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었다’,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도왔다’,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의 네 문항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것을 사용하였다($\alpha=.908$).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통제는 지역성원들이 아이들(지역 청소년들)의 생활에 개입하려는 의지로 표현되는바, 즉 이러한 비공식적 통제는 지역성원들이 범죄예방에 얼마나 참여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Sampson et al., 1997), ‘동네 아이들이 낯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어떻게라도 도와줄 것이다’, ‘여학생이 불량배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면 어떤 방식이라도 도와줄 것 같았다’,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았다’,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을 해야 한다면 이 활동에 참여할 것 같았다’의 세 문항을 5점 척도로(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응답한 것을 사용하였다($\alpha=.667$).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평가는 ‘순찰 활동을 잘 하고 있었다’, ‘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신고하면, 즉시 출동할 것 같았다’, ‘범죄사건을 신고하면, 반드시 범인을 잡아줄 것 같았다’의 세 문항에 대해서 5점 척도로 응답한 것을 사용하였다($\alpha=.796$). 지역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이 느끼는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근사의 형태로 나타내는 지역사회 구성원 생활만족도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부터 '매우 만족한다=1'의 11점 척도로 응답한 것을 사용하였다. 주변의 방법수준은 '특수 잠금장치', '방범창', '도난 경보시스템', 'CCTV'등 여덟 문항에 대해서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3. 분석방법

1) 다층모형/위계적 회귀분석

다수준분석(Multi Level)이라 불리는 방법은 다수준 선형 모델(Multilevel linear model), 혼합효과모델(Mixed effects model), 무선효과 모델(random effects model), 무선회수 회귀모델(random coefficient regression model), 공변량 요소 모델(covariance component model), 그리고 위계선형 모델(Hierarchical linear model) 등으로 불린다. 자료구조의 특성을 보다 잘 표현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위계선형모델(hierarchical linear model)이 보다 적절한 표현일 수 있다(Raudenbush and Bryk, 2002). 다수준적 분석(multi level model)은 기존의 전통적 분석과는 여러 면에서 차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수준적 분석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특징은 내재적(nested)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위계적인 다층적 자료구조 하에서는 여러 수준에서 측정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하고 수준들 간에 일정한 위계성이 존재해야만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개인은 가정에 속해 있고, 특정 지역에 속해 있고, 특정 지역은 보다 큰 단위의 지역에 속하게 된다. 이러한 다수준적 자료는 교육학 등에서 주로 사용되어져 왔는데, 개인이 학급에 속하고, 학급은 학교에 속하고, 학교는 교육청에 속하는 것과 같이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을 동시에 포괄할 수 있다는 장점에 기인한다(Twisk, 2006).

일반회귀분석(OLS)에서 개인수준의 변인과 지역수준의 변인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지역수준의 영향력이 종속변인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며 지역수준의 변인이 개인에 직접 영향을 줄 경우에는 생태학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즉, 지역수준의 변인과 개인수준의 변인을 구분 없이 동시에 사용할 경우, 지역수준의 특성을 통해 개인의 특성을 유추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수준분석은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사용한다.

먼저, 가장 간단한 형태의 다층모형은 자료분석의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기초모형(base model)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초모형에서의 각 개인의 두려움은 개인이 속한 지역의 평균 두려움과 그것으로부터의 개인편차로 표현되는데, 기초모형은 이후의 다른 변인이 투입된 이후의 통계모형과의 비교를 용이하게 해준다. 또한, 기초모형에서 제공하는 집단 내 상관계수(ICC; intraclass correlation)은 종속변인의 전체분산에서 지역수준의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후 모형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위계선형모델(hierarchical model)의 기초모형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Y_{ij} &= \beta_{0j} + \epsilon_{ij}, & \epsilon_{ij} &\sim N(0, \sigma^2) \text{ (지역내 모형 : within effect)} \\ \beta_{0j} &= \gamma_{00} + u_{0j}, & u_{0j} &\sim N(0, \tau) \text{ (지역간 모형 : between effect)} \\ Y_{ij} &= \gamma_{00} + u_{0j} + \epsilon_{ij} \text{ (통합모형)} \end{aligned}$$

이와 같이 기초모형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수준의 변인과 지역수준의 변인을 사용하여 다층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층모형의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y_{ij} &= \beta_{0j} + \beta_{1j}(\text{여성}) + \beta_{2j}(\text{교육수준}) + \dots + \beta_{pj}(\text{개인적특성}) + r_{ij} \\ \beta_{0j} &= \gamma_{00} + \gamma_{01}(\text{사회적무질서}) + \gamma_{02}(\text{물리적무질서}) + \dots + \gamma_{0q}(\text{지역변인}) + u_0 \end{aligned}$$

위 공식에서 x 는 개인수준의 예측변인이 되고, β 는 개인수준의 회귀계수가 된다. β 는 2수준(level 2), 즉 지역수준의 예측변인이 되고, γ 는 지역수준의 회귀계수가 된다. 즉, 다수준분석에서 종속변인 y 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들은 개인수준(level 1)에서 측정된 변인들만이 된다. 지역수준(level 2)에서 측정된 변인들은 종속변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다만 각 집단별 회귀식의 절편인 β_{0j} , 즉 집단의 평균에만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 수준의 특성에 따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층모형/위계선형모형(Mixed Model/Hierarchical Linear Model)을 위와 같이 적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변인의 조절효과 또한 다수준분석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통제관련 변인과 관련하여서는 지역무질서, 집합효율성, 사회적 유대(결속), 그리고 비/공식 통제로 조절효과를 분석한다. 다수준분석/위계선형모형에서 지역수준과 개인수준의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분석이 가능하다. 상호작용 분석을 위한 다수준분석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y_{ij} &= \beta_{0j} + \beta_{1j}(\text{개인수준변인}) + r_{ij} \\ \beta_{0j} &= \gamma_{00} + \gamma_{01}(\text{지역수준변인}) + u_{0j} \\ \beta_{1j} &= \gamma_{10} + \gamma_{11}(\text{지역수준변인}) + u_{1j} \\ &\vdots \\ Y_{ij} &= \gamma_{00} + \gamma_{01}(\text{지역수준변인}) + \gamma_{10}(\text{개인수준변인}) \\ &\quad + \gamma_{11}(\text{지역수준변인}) \times (\text{개인수준변인}) + u_0 + r \end{aligned}$$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수준의 변인들이 각 지역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그 효과가 변하는지를 다수준분석 상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 과연 개인들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맥락에 따라 개인적 특성의 효과들(취약성, 피해경험)이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지역적 특성은 범죄의 두려움을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해서 개인적 특성의 영향력을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 범죄의 두려움을 완충시키는 기제로도 작동할 수 있다. 만약 개인수준의 변인과 지역수준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면, 개인수준의 변인이 지역수준 변인의 수준에 따라

변하는 기울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범죄의 두려움이 지역적 맥락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와 개인들이 범죄의 두려움을 느끼는 매커니즘에 대해서 어떠한 조절효과를 발휘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IV 분석결과

<표 1>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의 기술통계

LEVEL-1 기술통계					
변인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구체적 두려움	13317	18.13	6.71	8	40
성(여성)	13317	0.52	0.5	0	1
연령(대)	13317	4.09	1.78	1	7
범죄피해가능성	13317	2.12	0.83	1	5
취약성	13317	2.88	1	1	5
교육	13317	3.16	1.48	0	6
피해경험	13317	0.04	0.19	0	1
LEVEL-2 기술통계					
변인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물리적 무질서	552	7.48	1.4	3	12.92
사회적 무질서	552	7.35	1.51	3	12.5
사회적 유대/결속	552	10.61	2.64	6.05	20
비공식통제	552	10	1.14	5.68	14.28
경찰만족도	552	9.58	1.1	5.68	14.88
생활만족도	552	6.74	0.69	4.6	9.3
방법수준	552	1.76	0.93	0	6

구체적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지역수준의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전에, 구체적 두려움의 변량과 지역수준의 변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체적 두려움에 있어 지역 간 차이보다는 (between effect)보다는 지역 내의 차이(within effect)에서 보다 더 큰 변량(variation)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²⁾. 추정된 지역수준의 효과(between effect) $\tau_{00}=7.279$ 이고 개인수준의 효과(within effect)인 $\sigma^2=38.296$ 로 나타났다(<표 1>).

32) $ICC = \rho = \frac{7.279}{7.279 + 38.296} = 0.026112$

<표 2> 구체적 두려움에 대한 다층모형/위계선형 분석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고정효과(Fixed Effects)				
상수 γ_{00}	18.049 (0.128) ***	18.046 (0.111) ***	17.461 (0.250) ***	17.412 (0.244) ***
물리적 무질서 γ_{01}		0.005 (0.124) ns		0.027 (0.118)
사회적 무질서 γ_{02}		0.853 (0.122) ***		0.814 (0.121) ***
사회적 유대 γ_{03}		-0.050 (0.070) ns		0.043 (0.070)
비공식통제 γ_{04}		0.515 (0.129) ***		0.458 (0.127) **
경찰만족도 γ_{05}		-0.327 (0.135) *		-0.255 (0.128) *
생활만족도 γ_{06}		-0.427 (0.175) *		-0.514 (0.173) *
방법수준 γ_{07}		0.263 (0.159) ns		0.145 (0.156)
여성 γ_{10}			2.178 (0.092) ***	2.179 (0.092) ***
연령대 γ_{20}			-0.348 (0.030) ***	-0.332 (0.030) ***
위험인지 γ_{30}			3.404 (0.061) ***	3.407 (0.061) ***
취약성 (피해심각성) γ_{40}			1.002 (0.051) ***	1.000 (0.051) ***
교육수준 γ_{50}			0.268 (0.038) ***	0.261 (0.038) ***
피해경험 γ_{60}			1.487 (0.230) ***	1.449 (0.230) ***
무선효과(Random Effects)				
τ_{00}	7.279 (2.698)	5.091 (2.256)	7.227 (2.688)	5.550 (2.356)
σ^2	38.296 (6.189)	38.298 (6.189)	25.024 (5.002)	25.024 (5.002)
모델 적합도(Model Fit Statistics)				
Deviance	87265.36	87121.39	81807.50	81693.85
χ^2	2919.491	2203.526	4136.937	3269.626

기초모형([모델 1])에서는 하나의 고정효과만이 존재하는데, 18.049로 나타났다. 즉, 18.049는 전체 샘플에서 지역수준의 구체적 두려움의 평균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지역수준의 변인들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다층모형 분석은 [모델 2]에 제시되어 있다. 지역 수준의 변인들 중에서 구체적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사회적 무질서, 지역의 비공식통제, 경찰만족도, 그리고 생활만족도로 나타났다. 지역의 사회적 무질서와 구체적 두려움 간의 관계는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gamma_{02}=0.853$, $p<.001$). 지역의 사회적 무질서(γ_{02})의 고정효과는 .853으로 나타난다. 즉, 지역의 평균 사회적 무질서가 한 단위 증가할 때 구체적 두려움의 평균은 약 .853 증가한다는 것이다. 비공식통제

(γ_{04})의 고정효과는 .515로 나타난다. 즉, 지역의 평균 비공식통제의 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 때 구체적 두려움의 평균은 약 .515 증가하며, 이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gamma_{04}=.515$, $p<.001$). 지역사회에 대한 경찰만족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인 관계를 가지는데($\gamma_{05}=-.334$, $p<.05$), 지역사회에 대한 경찰만족도가 지역에서 한 단위 증가할 때 구체적 두려움은 -.32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나타내는 지역수준의 생활만족도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gamma_{06}=-.427$, $p<.05$). 얼마나 많은 변량이 지역수준의 변인들에 의해서 설명되었는가는 기저모델의 τ_{00} 이 얼마나 변했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지역변인들로 인한 변량의 설명력은 약 30% ($\rho=(7.279-5.091)/7.279$)로 나타났다.

[모델 3]은 개인 수준의 변인들만의 영향력을 검토하기 위한 모델이다. 개인적 수준에서 구체적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 연령, 위험인지(주관적 피해위험성), 취약성(피해심각성), 교육수준, 피해경험 모두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여성일수록($\gamma_{10}=2.178$, $p<.001$), 위험인지가 높아질수록($\gamma_{30}=3.404$, $p<.001$), 취약성의 수준이 높아질수록($\gamma_{40}=1.002$, $p<.001$), 교육수준이 높을수록($\gamma_{50}=2.268$, $p<.001$), 피해경험이 있을수록($\gamma_{60}=1.487$, $p<.001$) 지역 평균 구체적 두려움의 수준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gamma_{20}=-.348$, $p<.001$) 구체적 두려움의 수준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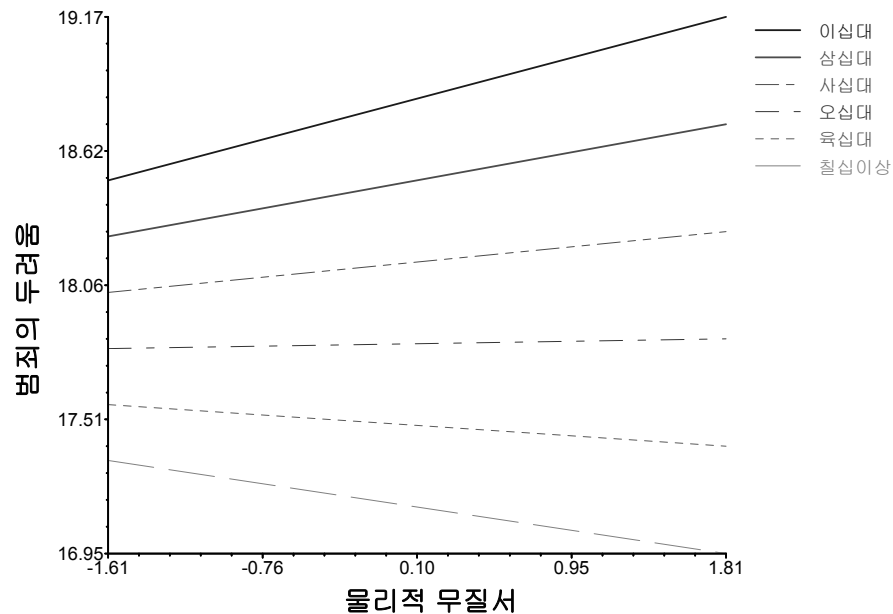
[모델 4]는 지역적 변인들과 개인 수준의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통합모델이다. <표 1>의 결과를 보면 개인수준의 변인들은 모두 [모델 3]에서의 결과와 유사하게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여성일수록($\gamma_{10}=2.179$, $p<.001$), 위험인지가 높아질수록($\gamma_{30}=3.407$, $p<.001$), 취약성의 수준이 높아질수록($\gamma_{40}=1.000$, $p<.001$), 교육수준이 높을수록($\gamma_{50}=2.261$, $p<.001$), 피해경험이 있을수록($\gamma_{60}=1.449$, $p<.001$) 지역 평균 구체적 두려움의 수준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만, 연령대가 높아지면($\gamma_{20}=-.332$, $p<.001$) 구체적 두려움의 수준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 변인들의 효과 역시 [모델 2]에서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나타낸다. 지역적 변인들 중에서 개인변인인 사회적 무질서, 비공식통제, 경찰만족도, 그리고 생활만족도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의 사회적 무질서 정도가 높아지면($\gamma_{02}=.814$, $p<.001$), 또는 비공식통제의 정도가 높아지면($\gamma_{04}=.458$, $p<.01$) 구체적 두려움은 증가하는 것을 나타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경찰만족도의 수준이 높을수록($\gamma_{05}=-.255$, $p<.05$), 생활만족도 수준이 높을수록($\gamma_{06}=-.514$, $p<.05$) 구체적 두려움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구체적 두려움에 대한 지역수준의 조절효과(상호작용)

구체적 두려움	× 물리적 무질서			× 사회적 무질서			× 사회적 유대			× 비공식통제		
	B (SE)			B (SE)			B (SE)			B (SE)		
상수	17.465(0.245)	***		17.444(0.245)	***		17.522(0.248)	***		17.422(0.244)	***	
물리적 무질서	0.405(0.202)	*		0.032(0.118)			0.040(0.118)			0.029(0.118)		
사회적 무질서	0.820(0.121)	***		1.097(0.204)	***		0.778(0.121)	***		0.811(0.121)	***	
사회적 유대	0.049(0.070)			0.0636(0.070)			0.086(0.122)			0.047(0.070)		
비공식통제	0.458(0.127)	**		0.453(0.127)	**		0.461(0.127)	**		0.488(0.241)	*	
경찰만족도	-0.254(0.128)	*		-0.252(0.128)	*		-0.251(0.128)	*		-0.252(0.128)	*	
생활만족도	-0.527(0.173)	**		-0.538(0.173)	**		-0.527(0.173)	**		-0.519(0.173)	**	
방법수준	0.146(0.156)			0.146(0.156)			0.148(0.156)			0.144(0.156)		
여성	2.183(0.093)	***		2.182(0.093)	***		2.183(0.093)	***		2.184(0.093)	***	
	여성 ×	0.049(0.069)		0.066(0.066)			0.010(0.039)			0.156(0.086)		
연령대	-0.339(0.030)	***		-0.332(0.030)	***		-0.335(0.030)	***		-0.333(0.030)	***	
	연령 ×	-0.045(0.022)	*	-0.017(0.022)			-0.024(0.014)			-0.033(0.028)		
위험인지	3.410(0.061)	***		3.404(0.061)	***		3.399(0.061)	***		3.406(0.061)	***	
	위험인지 ×	-0.071(0.043)		-0.002(0.042)			-0.039(0.026)			0.091(0.057)		
취약성(피해심각성)	0.997(0.051)	***		0.999(0.051)	***		0.997(0.051)	***		0.996(0.051)	***	
	취약성(피해심각성) ×	-0.037(0.037)		0.023(0.035)			-0.032(0.020)			0.009(0.050)		
교육수준	0.249(0.039)	***		0.259(0.038)	***		0.253(0.039)	***		0.263(0.038)	***	
	교육수준 ×	-0.073(0.028)	*	-0.085(0.028)	**		0.026(0.016)			0.015(0.035)		
피해경험	1.465(0.231)	***		1.460(0.233)	***		1.351(0.236)	***		1.447(0.230)	***	
	피해경험 ×	0.025(0.166)		-0.009(0.164)			-0.181(0.104)			-0.392(0.232)		
무선효과(Random Effects)												
τ_{00}	5.540			5.526			5.540			5.437		
	(2.354)			(2.351)			(2.353)			(2.331)		
σ^2	25.013			25.011			24.993			25.295		
	(5.001)			(5.001)			(4.999)			(5.029)		
chi-square	3264.866	***		3258.685	***		3264.144	***		2992.686	***	
Deviance	81707.07			81705.48			81703.55			7726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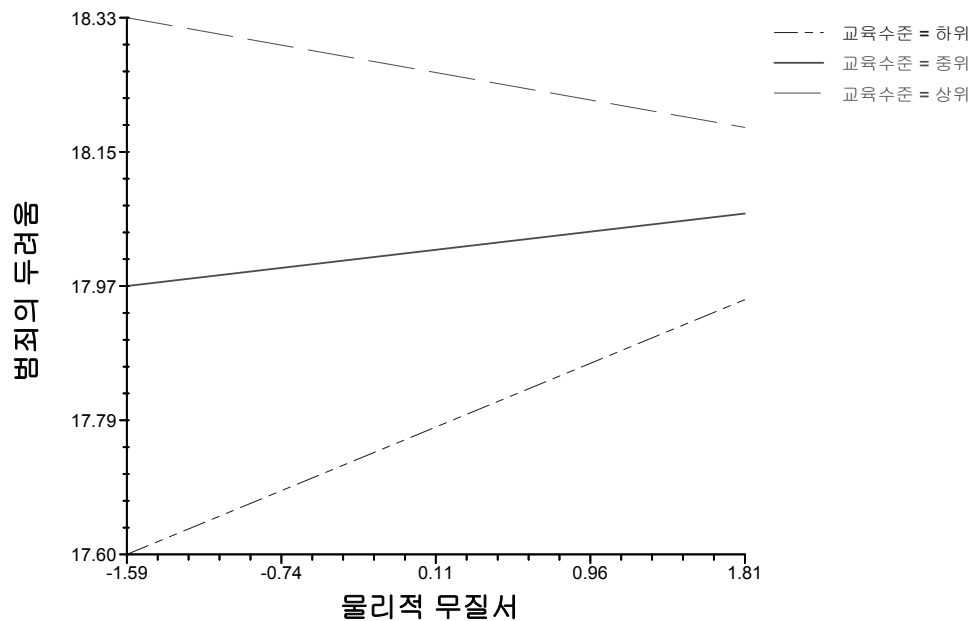
모델 비교 분석(<표 2>)에 근거하여, 지역적 변인들과 개인요인들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 <표 4>). 즉, 지역변인과 개인변인간의 상호작용 분석은 지역적 맥락에 따라 개인요인들의 영향력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살펴보았다. 만약 개인 수준의 변인과 지역 수준의 변인 간 상호작용이 유의미하다면 개인수준의 기울기가 각 지역 변인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지역변인의 맥락에 따른 상호작용의 효과를 살펴보면, 지역수준의 물리적 무질서는 개인 요인으로 연령(대), 위험인지(주관적 범죄위험)와 교육수준과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나타낸다(<표 3>). 즉, 연령(대)의 효과와 교육수준의 효과는 각 지역의 평균 물리적 무질서의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 지역의 물리적 무질서와 연령(대)의 상호작용

물리적 무질서와 연령(대)의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그림 1]), 지역사회에 조용하는 연령(대)의 효과는 각 연령대 별로 상이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에 만연한 물리적 무질서에 대한 반응으로 상대적으로 젊은 이십대와 삼십대의 경우는 구체적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반해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물리적 무질서의 효과는 사라지고 연령(대)의 고유효과인 부적관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지역의 물리적 무질서와 교육수준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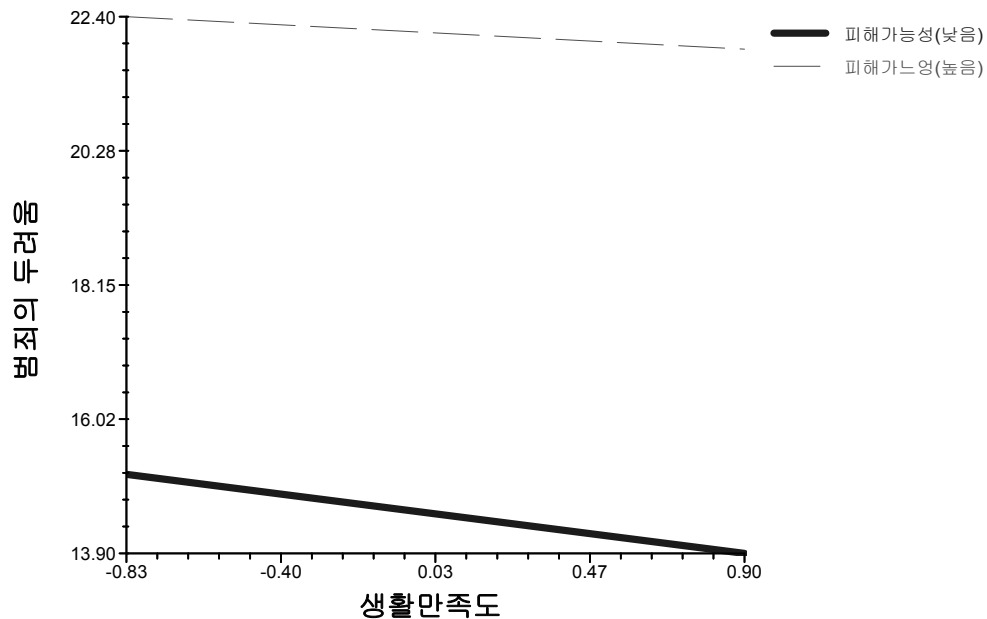
[그림 2]는 지역의 물리적 무질서와 개인의 교육수준이 상호작용하면서 차별적인 효과가 발현됨을 보여준다. 상호작용을 통제한 후에 나타나는 교육수준의 효과는 정적이지만, 지역의 물리적 무질서와의 상호작용 후에 나타나는 교육수준의 효과는 차별적이다. 예를 들어, 교육수준이 중위인 집단은 지역의 물리적 무질서가 높아질수록 범죄의 두려움이 높아지는 정적이 효과를 보인다. 하지만,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 대해서 물리적 무질서의 맥락적 효과는 부적이며,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 대해서는 구체적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맥락적 효과를 발휘한다고 할 수 있다.

<표 4> 구체적 두려움에 대한 지역수준의 조절효과(상호작용)

구체적 두려움	× 경찰만족도	× 생활만족도	× 방법수준
	B (SE)	B (SE)	B (SE)
상수	17.453(0.245) ***	17.413(0.245) ***	17.399(0.244) ***
물리적 무질서	0.031(0.118)	0.024(0.118)	0.021(0.118)
사회적 무질서	0.806(0.121) ***	0.811(0.121) ***	0.827(0.121) ***
사회적 유대	0.048(0.070)	0.043(0.070)	0.037(0.070)
비공식통제	0.464(0.127) **	0.458(0.127) **	0.461(0.127) **
경찰만족도	-0.187(0.259)	-0.255(0.128) *	-0.255(0.128) *
생활만족도	-0.519(0.173) **	-0.379(0.372)	-0.511(0.173) *
방법수준	0.144(0.156)	0.145(0.156)	0.121(0.320)
여성	2.184(0.093) ***	2.193(0.093) ***	2.176(0.093) ***
여성 ×	0.065(0.090)	-0.284(0.140) *	0.117(0.111)
연령대	-0.335(0.030) ***	-0.333(0.030) ***	-0.337(0.030) ***
연령 ×	-0.042(0.031)	0.031(0.045)	-0.035(0.038)
위험인지	3.402(0.061) ***	3.402(0.061) ***	3.419(0.061) ***
위험인지 ×	-0.109(0.057)	0.191(0.090) *	0.280(0.073) ***
취약성(피해심각성)	1.000(0.051) ***	1.005(0.051) ***	0.999(0.051) ***
취약성(피해심각성) ×	0.004(0.048)	-0.029(0.074)	0.018(0.060)
교육수준	0.259(0.038) ***	0.263(0.039) ***	0.263(0.038) ***
교육수준 ×	0.026(0.037)	-0.039(0.056)	0.031(0.046)
피해경험	1.465(0.236) ***	1.455(0.230) ***	1.451(0.230) ***
피해경험 ×	0.109(0.240)	-0.116(0.357)	0.030(0.270)
무선효과(Random Effects)			
τ_{00}	5.537 (2.353)	5.549 (2.356)	5.541 (2.354)
σ^2	25.022 (5.002)	25.019 (5.002)	24.989 (4.999)
chi-square	3262.954***	3268.134 ***	3270.553 ***
Deviance	81708.03	81702.62	81689.40

<표 4>는 지역 수준의 경찰만족도, 생활만족도, 방법수준과 개인수준 요인의 상호작용 결과를 보여준다. 우선, 지역 수준의 경찰만족도는 지역수준의 변인으로서는 대부분의 분석에서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난다. 즉, 지역사회의 경찰만족의 수준에 따라 구체적 두려움의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지역변인으로서의 경찰만족도는 개인들과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삶의 수준과 만족도를 표현하는 생활만족도와 지역의 방범수준은 몇몇의 개인수준의 요인들과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림 3] 지역의 생활만족도 수준과 위험인지의 상호작용

예를 들어,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들의 생활만족도의 수준은 개인들이 느끼는 위험인지와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한다([그림 3]). 즉, 지역의 생활만족도의 수준이 증가할수록 위험을 높거나 낮게 느끼는 집단들에게 그 영향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지역변인으로서 생활만족도의 영향은 부적이지만, 피해가능성이 낮다고 느끼는 집단들에게 지역의 생활만족도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 논의

본 연구는 개인적 특성(피해경험과 취약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역적 특성들과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다층모형을 통해서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과 지역적 요인, 그리고 두 수준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개인적 요인과 지역적 요인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살펴본 결과, 피해경험과 취약성으로 대변되는 개인적 요인들인 성별, 연령(대), 위험인지(피해가능성), 취약성(피해심각성), 교육수준, 그리고 범죄피해경험은 독자적으로 개인들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적 요인들 중 지역사회의 사회적 무질서, 비공식적 통제, 경찰만족도, 그리고 생활만족도 등 또한 개인들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설명하는데 있어, 개인적 차원의 설명과 지역적 차원의 설명이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살펴본 결과 역시 몇몇 지역적 요인은 맥락적 조절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개인적 요인들의 차별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가장 흥미로운 지역적 요인은 지역사회의 물리적 무질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수준의 물리적 무질서는 독자적으로 개인들이 느끼는 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진 않으나 몇몇 개인적 특성들과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만들어냈다. 즉, 이러한 결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 개인 간의 차이의 크기가 지역적 수준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는 맥락효과를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McGarrell et al., 1997; Rountree and Land, 1996).

요약하면, 지역변인들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이르는 개인적 특성의 영향력을 조절하기도 한다. 첫째로, 지역변인 중 사회적 무질서나 지역사회의 생활만족도와 같은 변인들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개인요인의 영향력을 조절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무질서가 높은 지역은 개인들이 가지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전반적으로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특정한 개인적 특성을 가진 개인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더 증폭시키거나 완충한다.

두 번째는 물리적 무질서와 같은 지역 수준의 변인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개인적 특성의 효과와 상호작용하는 맥락적인 조절효과만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의 무질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환경적 요인인 물리적 무질서는 연령(대)와 개인의 교육수준의 차별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의 방범수준은 그 자체로나 혹은 개인적 특성에 대한 조절효과로서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함을 보여줬다. 즉, 최근 각광받고 있는 CCTV와 같은 가시성이 높은 방범용 전략들이 적어도 개인들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에는 그다지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지역적 요인들은 개인들이 경험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두려움의 개인적 발현에 차별적인 맥락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한 지역사회적 전략들이 가지는 가시적인 효과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조에 배태되어 있는 광범위한 맥락적 효과까지 살펴봐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참고문헌

〈국내자료〉

- 김은경·황지태·황의갑·노성훈. 2013.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3-B-12.
- 김준호·심영희·조정희. 1991. 『범죄피해조사란 무엇인가』. 형사정책연구원.
- 박정선·이성식. 2010. “범죄두려움에 대한 다수준적 접근: 주요모델들의 검증”. 『형사정책연구』 21(3):173-203.
- 박철현. 2012. “사회적 무질서, 범죄피해경험, 학교에서의 폭력범죄피해의 두려움: 학교와 이웃의 두려움에 대한 사회적 무질서의 차별적 효과”. 『피해자학연구』 20(2):143-166.
- 이성식. 2000.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범죄두려움.” 『한국공안학회회보』 10:133-159.
- 이성식. 2000. “거주지역의 특성과 범죄두려움.” 『형사정책연구』 11(1):117-139.
- 장안식·정혜원·박철현. 2011. “범죄두려움에 있어서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효과: 범죄피해-두려움에 대한 새로운 접근”. 『형사정책연구』 22(3):291-326.

〈국외자료〉

- Alvi, S., Schwartz, M. D., Dekeserdy, W. S. & Maume, M. O. (2001). Women's fear of crime in Canadian public housing. *Violence Against Women*, 7, 638-661.
- Balkin, S. (1979). Victimization Rates, Safety and Fear of Crime in a Local Context. *Crime, Media, Culture*, 1(2), 169-187.
- Bauman, Z. (2006). *Liquid Fear*. Cambridge: Polity Press.
- Baumer, T. L. (1985). Testing a General Model of Fear of Crime: Data From a National Sampl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2(3), 239-255.
- Brown, L. P. & Wycoff, M. A. (1986). Policing Houston: Reducing Fear and Improving Service. *Crime and Delinquency*, 33, 71-89.
- Bursik, R. J. (1988). Social Disorganization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cy: Problems and Prospects. *Criminology*, 26, 519-551.
- Bursik, R. J. & Grasmick, H. (1993). *Neighborhoods and Crime: The Dimensions of Effective Community Control*. New York: Lexington Books.
- Cancino, J. M. (2005). The Utility of Social Capital and Collective Efficacy: Social Control Policy in Nonmetropolitan Settings.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16: 287-318.
- Carcach, C., Frampton, P., Thomas, K. & Cranich, M. (1995). Explaining fear of crime in Queensland.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1(3), 271-287.

- Conklin, J. E. (1975). *The Impact of Crime*. New York: Macmillan.
- Covington, J. & Taylor, R. B. (1991). Fear of Crime in Urban Residential Neighborhoods: Implications of Between- and Within-neighborhood Sources for Current Models. *The Sociological Quarterly*, 32(2), 231-249.
- Dubow, F., McCabe, E. & Kaplan, G. (1979). *Reactions to Crime: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Law Enforcement and Criminal Justice,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Ferguson, K. M. & Mindel, C. H. (2007). Modeling fear of crime in Dallas neighborhoods: a test of social capital theory. *Crime and Delinquency*, 53(2), 329-349.
- Ferraro, K. F. (1995). *Fear of Crime: Interpreting Victimization Risk*. New York: SUNY Press.
- Franklin, T. W., Franklin, C. A. & Fearn, N. E. (2008). A Multi-level analysis of the vulnerability, disorder, and social integration models of fear of crime. *Social Justice Research*, 21, 204-227.
- Furstenberg, F. (1971). Public Reaction to Crime in the Streets. *American Scholar*, 40, 601-610.
- Garofalo, J. (1981). The Fear of Crime: Causes and Consequences. *The Journal of Criminal Law & Criminology*, 72(2), 839-857.
- Gibson, C. L., Zhao, J., Lovrich, N. P., & Gaffney, M. J. (2002). Social Integration, individual perceptions of collective efficacy, and fear of crime in three cities. *Justice Quarterly*, 19(3), 536-563.
- Girling, E., Loader, I. & Sparks, R. (2000). *Crime and Social Change in Middle England*. London: Routledge.
- Gray, E., Jackson, J. & Farrall, S. (2008). Reassessing Fear of Crime in England and Wales. *European Journal of Criminology*, 5(3), 309-336.
- Hale, C. (1996). Fear of Crime: A Review of Literature. *International Review of Victimology*, 4, 79-150.
- Harcourt, B. E. (1998). Reflecting on the subject: A Critique of the social influence conception of deterrence, the broken windows theory and order-maintenance policing New York style. *Michigan Law Review*, 97, 291-372.
- Harcourt, B. E. (2001). *Illusions of Order: The False Promise of Broken Windows Policing*.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enig, J. & Maxfield, M. (1978). Reducing Fear of Crime: Strategies for Intervention. *Victimology*, 3, 297-313.
- Holloway, W. & Jefferson, T. (1997). The Risk Society in an Age of Anxiety: Situating Fear of Crim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8(2), 255-266.
- Hough, M. (1995). The Impact of Victimization: Findings from the British Crime Survey. *Victimology*, 10, 1-4.
- Innes, M. (2004). Signal Crimes and Signal Disorder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5, 335-355.

- Jackson, J. (2006). Introducing Fear of Crime to Risk Research. *Risk Analysis*, 26(1), 253-264.
- Jackson, J. & Sunshine, J. (2007). Public Confidence in Policing: A Neo-Durkheimian Perspectiv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7, 214-233.
- Kanan, J. W. & Pruitt, M. V. (2002). Modeling Fear of Crime and Perceived Victimization Risk: The (in)significance of Neighborhood integration. *Sociological Inquiry*, 72(4), 527-548.
- Keane, C. (1995). Victimization and Fear: Assessing the Role of Offender and Offense.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37(3), 431-455.
- Killias, M. (1990). Vulnerability: Towards a better understanding of a key variable in the genesis of fear of crime. *Violence and Victims*, 5(2), 97-108.
- Killias, M. & Clerici, C. (2000). Different Measures of Vulnerability in Their Relation to Different Dimensions of Fear of Crim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0(3), 437-450.
- Kury, H. & Ferdinand, T. (1998). The Victim's Exposure and Fear of Crime. *International Review of Victimology*, 5, 93-140.
- Lewis, D. A. & Salem, G. (1981). Community Crime Prevention: An Analysis of a developing strategy. *Crime and Delinquency*, 27, 405-421.
- Liska, A. E., Sanchirico, A. & Reed, M. A. (1988). Fear of Crime and Constrained Behavior: Specifying and estimating a reciprocal effects model. *Social Forces*, 66, 760-770.
- McCoy, H. V., Wooldredge, J. D., Cullen, F. T., Dubeck, P. J. & Browning, S. L. (1996). Lifestyles of the Old and Not So Fearful: Life situation and older persons' fear of crim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4(3), 191-205.
- McCrea, R. P., Shyy, T., Western, J. & Stimson, R. J. (2005). Fear of crime in Brisbane: individual, social and neighborhood factors in perspective. *Journal of Sociology*, 41(1), 7-27.
- McGarrell, E. F., Giacomazzi, A. L. & Thurman, Q. C. (1997). Neighborhood disorder, integration and the fear of crime. *Justice Quarterly*, 14, 479-499.
- Miethe, T. D. & McDowall, D. (1993). Contextual Effects in Models of Criminal Victimization. *Social Forces*, 71, 741-759.
- Morenoff, J. D., Sampson, R. J. & Raudenbush, S. W. (2001). Neighborhood inequality collective efficacy, and the spatial dynamics of urban violence. *Criminology*, 39, 517-560.
- Perloff, R. M. (1983). Perception of Vulnerability to Victimization. *Journal of Social Issue*, 39(2), 41-61.
- Raudenbush, S. W. & Bryk, A. S.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Rader, N. E. (2004). The Threat of Victimization: A Theoretical Reconceptualization of Fear of Crime. *Sociological Spectrum*, 24, 689-704.

- Reber, A. S. (1985). *The penguin dictionary of psychology*. New York: Penguin.
- Renauer, B. C. (2007). Reducing Fear of Crime: Citizen, Police, or Government Responsibility? *Police Quarterly*, 10(1): 41-62.
- Roh, S. & Oliver, W.M. (2005). Effects of community policing upon fear of crime. *Policing*, 28(4), 670-683.
- Ross, C. E. & Jang, S. (2000). Neighborhood Disorder, Fear and Mistrusts: The buffering role of social ties with neighbor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8, 401-420.
- Rountree, P. & Land, K. (1996). Perceived risk versus fear of crime: Empirical evidence of conceptually distinct reactions in survey data. *Social Forces*, 74(4), 1353-1376.
- Rountree, P. W. (1998). A Reexamination of the Crime-Fear Linkag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5(3), 341-372.
- Sampson, R. J. & Wilson, W. J. (1995). "Toward a Theory of Race, Crime, and Urban Inequality." In John Hagan and Ruth D. Peterson (eds.), *Crime and Delinquency* p.36-54.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Sampson, R. J. & Earls, F. (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 918-924.
- Sampson, R. J. & Raudenbush, S. W. (1999). Systematic Social Observation of Public Spaces: A New Look at Disorder in Urban Neighborhood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 603-651.
- Silver, E. & Miller, L. L. (2004). Sources of informal social control in Chicago neighborhoods. *Criminology*, 42, 551-583.
- Skogan, W. (1986). Fear of Crime and Neighborhood Change. *Crime and Justice*, 8, 203-229.
- Skogan, W. (1990). *Disorder and Decline: Crime and the Spiral of Decay in American Neighborhoods*. New York: Free Press.
- Skogan, W. (1995). Crime and the Racial Fears of White Americans.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39, 59-71.
- Skogan, W. & Maxfield, M. (1981). *Coping with Crime*. Beverly Hills, CA: Sage.
- Stafford, M. C. & Galle, O. R. (1984). Victimization Rates, Exposure to Risk, and Fear of Crime. *Criminology*, 22, 173-185.
- Taylor, R. B. (2001). *Breaking Away from Broken Windows*. Boulder, CO: Westview Press.
- Taylor, R. B & Hale, M. (1986). Testing Alternative Models of Fear of Crim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7, 151-189.
- Twisk, J. W. (2005). *Applied Multilevel Analysi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illarreal, A. B. & Silva, S. F. A. (2006). Social Cohesion, Criminal Victimization and Perceived Risk

- of Crime in Brazilian Neighborhoods. *Social Forces*, 84(3), 1725-1753.
- Warr, M. (1984). Fear of Victimization: Why are women and the elderly more afraid. *Social Science Quarterly*, 3(1), 29-46.
- Warr, M. & Stafford, M. C. (1983). Fear of Victimization: A look at the proximate causes. *Social Forces*, 61, 1033-1043.
- Williams, P. & Pate, A. M. (1986). Returning to First Principles: Reducing the Fear of Crime in Newark. *Crime and Delinquency*, 33: 53-70.
- Wyant, B. R. (2008). Multilevel Impacts of Perceived Incivilities and Perceptions of Crime Risk on Fear of Crime: Isolating Endogenous Impact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5(1), 39-64.
- Zhao, J., Schneider, M. & Thurman, Q.C. (2002). The effect of police presence on public fear reduction and satisfaction: a review of literature. *The Justice Professional*, 15, 273-299.

제3회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발 행 2015년 4월

발 행 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화 : (02) 575-5282

등 록 1990. 3. 20 제21-143호

인 쇄 처 세일포커스(주) ☎ 02) 2275-6894~6

* 자료집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비매품]